

FTA 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FTA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연구(미국, ASEAN 4개국)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1. 11. 30.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FTA 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 FTA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차)로
제출합니다.

2011. 11.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두 기

연 구 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최 지 수 (선임연구원)

<연구진>

김 수 정 (연구원, 연구진행자)

임 병 호 (연구원)

김 덕 연 (연구원)

박 경 진 (연구원)

요 약 문

본 보고서는 FTA 협정이 발효예정인 미국, 2007년 6월 기 발효된 ASEAN 4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FTA 이행 체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FTA 추진에 집중하였으나, FTA의 활용에 중점을 더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FTA 대상국의 FTA 이행 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당국의 관세 행정을 파악함으로써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와 FTA 발효예정국인 미국과 기 발효된 ASEAN 4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우선 대상국에서 FTA 이행을 위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법체계를 고찰하였다. 각국의 FTA 이행체계와 관련 선구적인 연구인만큼 현재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을 바탕으로 FTA 이행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범위는 FTA 이행관련제도의 원산지증명제도, 사전심사제도, 원산지조사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구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미국과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를 수록하였다.

우선 미국의 관세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이행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FTA의 시행을 위해서 FTA별 이행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

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 통관절차, 원산지 증명제도 등 FTA 이행이 제도화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ASEAN FTA 추진정책 및 현황과 각국의 관세제도를 간략히 개괄하였다. ASEAN에서의 FTA와 관련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FTA 이행법령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조사대상국의 통관제도,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 원산지 조사를 통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FTA 이행체계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ASEAN 4개국의 이행과 심사제도에 관해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의 FTA 관세 특례법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국의 원산지 증명서(이행제도)와 원산지 조사(심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4
제1절 미국의 FTA 추진현황과 통상정책	4
1. 미국의 FTA 체결현황	4
제2절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4
1. 미국의 FTA 이행체제	14
2. 미국의 관세제도 및 심사제도-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21
3. 원산지 증명	35
4. 통관제도	39
5. 원산지조사	56
6. 기타사항	64
제3장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68
제1절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68
1. ASEAN FTA 추진현황과 통상 정책	68

제2절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 제도	73
1. 베트남	74
2. 태국	104
3. 인도네시아	127
4. 말레이시아	151
5. 한-ASEAN 협정문상 이행에 관한 사항	166
 제4장 한국, 미국, ASEAN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분석	182
제1절 FTA 이행 관련 법 제도 비교	182
1. FTA 이행법	182
제2절 원산지 증명제도 비교	185
1. 원산지증명 관련 이행 체계	185
2.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189
제3절 심사제도 비교	196
1. 한국	196
2. 미국	199
3. ASEAN 4개국	202
4. 한국, 미국, ASEAN 4개국의 심사제도 비교	204
제4절 기타제도-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205
1. 한국	205
2. ASEAN 4개국-베트남	206

제5장 결 론	207
[부 록]	212
[참고문헌]	266
[법 령]	268
[별 첨]	295

표 목 차

<표 2-1> 미국이 체결한 FTA별 주요 추진 배경, 비경제적 요인>	7
<표 2-2> 미국의 FTA 상대국 선정시 고려요소	9
<표 2-3> 4개 상설 관계부처	10
<표 2-4> 주요 국가별 FTA 추진 현황	13
<표 2-5> NAFTA 이행법 구성	15
<표 2-6>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절차 및 발효	16
<표 2-7> 한-미 FTA 이행법	19
<표 2-8> 관세 및 수수료 종류	24
<표 2-9> 한-미 FTA 이행법 원산지규정	28
<표 2-10>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원산지증명에 관한 규정	37
<표 2-11> 세관이 부과하는 벌칙사항	45
<표 2-12> 수출통관시스템에 의해 제출되는 화물정보	50
<표 2-13>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개요	57
<표 3-1> ASEAN FTA추진 현황	73
<표 3-2> 베트남 관세법	75
<표 3-3>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79
<표 3-4> 베트남 법령 제194호 시행규칙 (194/2010/TT-BTC, 2010. 12. 6)	93
<표 3-5> 베트남 법령 제194호 시행규칙 2부	95
<표 3-6>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103
<표 3-7> 태국 관세법	106
<표 3-8> 관세, IEAT 및 BOI 를 통해 활용 가능한 특권의 비교	113
<표 3-9> 인도네시아 관세법	128
<표 3-10> 인도네시아 FTA 별 원산지 발급 현황	132
<표 3-11> 신규별금 규정 주요 내용	139
<표 3-12> 수입통관 수입업체 등급 분류 및 적용	140
<표 3-13> 말레이시아 관세법	152

<표 3-14> 각 단계별 소요기간	157
<표 3-15> 각 단계별 필요서류	157
<표 3-16>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통관 양식	164
<표 4-1> 한-미 FTA 이행법	183
<표 4-2> 한국과 미국·ASEAN 4개국의 FTA 이행법 비교	184
<표 4-3> 원산지 증명서의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190
<표 4-4> 한국과 미국·ASEAN 4개국 원산지증명 관련 이행법규 비교	193
<표 4-5> 우리나라 원산지 조사제도	196
<표 4-6> 협정과 관련한 국내이행법령	197
<표 4-7> 협정별 원산지 검증제도 차이점	198
<표 4-8>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개요	200
<표 4-9> 우리나라와 미국, ASEAN 심사제도 비교	204
<표 4-10>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205

그림 목차

<그림 2-1> 미, FTA 상대국 선정 절차	11
<그림 2-2> 미국 원산지규정 체제	36
<그림 2-3> 미국 수입 통관절차	46
<그림 2-4> AES Process Flow	54
<그림 2-5> AES Direct/AES PcLink Process Flow	55
<그림 2-6> NAFTA 원산지 검증절차	60
<그림 3-1> 수입업무 처리 절차	121
<그림 3-2> CUSDEC을 통한 제출	162
<그림 4-1> 원산지 증명제도의 입법체계	185

부록 목차

<부표 1>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AK-FTA 원산지 증명서 영문 및 국문서식 ·	212
<부표 2 > AFTA(ASEAN)/AC-FTA(중-ASEAN) 원산지 증명서	218
<부표 3>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신청서 및 첨부서류	221
<부표 4> 말레이시아 원산지 증명 관련 질의 응답 및 원산지증명서	226
<부표 5> 인도네시아 이행법 및 원산지 증명서 관련 사항	232
<부표 6> 베트남 이행관련 개정법	252
<부표 7>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	255
<부표 8> NA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CBP Form 446)	257
<부표 9> 태국 수입 통관에 관한 원문	259
<부표 10> 품목분류 사전신사 신청서	262
<부표 11> 원산지 소명서	26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한-칠레 FTA협상이 타결된 뒤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¹⁾, ASEAN²⁾, 인도, EU³⁾, 페루 등 총 7개 FTA 그룹, 44개 국가와 FTA 협정이 발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는 2007년 협상을 타결 후, 2011년 11월 양측 입법부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한-싱가포르 FTA 협정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FTA 이행에 관한 법적 체계를 갖춘 바 있다. 동법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국은 국내법에서 수용하는 방식을 달리해 왔다. 첫째 FTA에 대한 규정만을 규율하는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 둘째 현행의 법체계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셋째 FTA와 관련된 일부 규정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 등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고, EU와 인도의 경우는 두 번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일본의 경우 세 번째에 속한다.⁴⁾

1)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개국)

2)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4개국)

3) EU : 유럽연합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등 유럽국가 27개국)

4) 일본의 경우 관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의 관세감정조치법에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FTA 이행법령, 이행체계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FTA를 성사시키는데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FTA 체결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통관절차, 사후심사와 관련된 정보)와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앞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과 기대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FTA 관련 정보제공 못지않게 체약 상대국의 관세제도 및 FTA 이행관련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FTA 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FTA 이행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에서는 정책수립 및 실행에 참조자료로써 활용하고, 기업측면에서는 FTA 활용상의 문제 및 사후 추정 등의 위험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체약상대국의 FTA 이행제도에 관한 한국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주요 사항과 FTA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국가는 ASEAN 4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FTA 발효 예정국가인 미국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선행연구와 각국의 법령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및 대상국의 법제도, 법령,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앞서 각국의 FTA 이행체계에 대해 국내의 전문기관 및 코트라에 자문을 구하였다.

사항은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8 참조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구성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를 수록한다.

우선 미국의 관세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이행법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세부적으로 통관절차, 원산지 증명제도 등 FTA 이행이 제도화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다.

3장에서는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에 대해 다룬다. 우선 ASEAN FTA추진정책 및 현황과 각국의 관세제도를 간략히 개괄한다. 그리고 조사대상국의 통관제도,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 원산지 조사를 통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ASEAN 4개국의 이행과 심사제도에 관해 비교·분석한다. 국내의 FTA 관세 특례법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국의 원산지 증명서(이행제도)와 사전심사 및 검증(심사제도)에 관해 비교·분석한다.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논한다.

제2장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제 1 절 미국의 FTA 추진현황과 통상정책

1. 미국의 FTA 체결현황

가. 미국의 FTA 추진 방향과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해 왔다. 실제 미국은 GATT/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WTO를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을 중심 기조로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이 다시 대두되었고, 이는 다자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에서는 1980년에 접어들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다자간 협상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간 협상의 유용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처음 체결한 FTA는 1985년 미-이스라엘 FTA로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본격적 FTA 추진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1989년에 캐나다에 이어 1994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그것이다.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를 포용하기로 정책을 선회한 이유는 첫째, 일괄 타결방식에 의한 합의 지연 등 다자간 무역체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주의를 활용한 것이고, 둘째는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강화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⁵⁾

최근 미국의 FTA 추진 정책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미국은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호주, 오만,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과 FTA를 타결한 상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 취임직후인 2009년은 경제침체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건강보험개혁, 금융규제개혁 등 주요 국내 현안에 밀려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은 무역대표부의 『2010년 통상정책 어젠다』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동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5년 내 수출 2배,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대표부가 새로운 시장의 개방과 교역의 시행을 통해 국가 수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더해서 전 세계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교역체계 강화라는 미국의 무역정책이념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중순 첫 아시아 순방 중 APEC에서 미국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로 구성된 기존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호주, 베트남과 함께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무역대표부는 TPP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검토, 2차 협상이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이 TPP 협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시장 의존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동아시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⁶⁾

5) 권오복 외 7명 (200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03, pp. 15-24.

6) 김한성 외 4인(2010),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현재 미국은 14개의 FTA 협상을 통해 20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의 첫 번째 FTA는 1985년 미-이스라엘 FTA이다. 동 FTA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외교·안보 등 전략적 요소가 더욱 고려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FTA 협정을 추진한 것은 NAFTA로 미-이스라엘 FTA 이후 약 10년이 지난 1994년이였다. 동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부진에 대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 내 경제 통합을 실현한 결과물이다. NAFTA는 유럽연합과 대비되는 미국형 경제통합으로서 FTA의 이행에 관한 여러 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1년 추진된 미-요르단 FTA의 경우 미-이스라엘 FTA와 마찬가지로 정치·외교·안보 등 전략적 요소가 더욱 고려된 FTA였다. 동 FTA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 공존을 위한 오스로 평화 프로세스(Oslo peace process)에서 결정적 중재 역할을 수행한 후세인 국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어 추진된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된다. 칠레의 경우 칠레의 FTA 체결 급증에 따라 칠레 시장에서 미국 수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FTA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켜 자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였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교역확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아시아지역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추진되였다.

다시 말해 미국의 FTA 추진이 전적으로 경제적인 부문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음 <표 2-1>과 같이 아시아 방위 역할 유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보상 차원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판단되는 부문도 FTA 추진의 요소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미국의 통상 정책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양자가 동시에 맞물려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의 경우도 외교·안보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 무역대표부의 『2010년 통상정책 어젠다』 등에서 언급한 바대로 경제 무역자유화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확대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미국이 체결한 FTA별 주요 추진 배경, 비경제적 요인>

체결상대국	주요 추진 배경
이스라엘(1985.8 발효)	- 1975년 체결된 EC-이스라엘 FTA에 따른 차별 방지, 신시장 개척 및 정치적 결속 강화 위해 추진 - 협상개시 당시 이스라엘은 만성적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제품 보이콧으로 안정적인 대체 시장(미국)확보가 필요 * 양국의 우호적 정치·경제 관계와 초기에 추진된 자유무역협정임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점진적인 개방 방식 채택
NAFTA(1994.1 발효)	- UR 협상 부진(1995.1 WTO 출범)
요르단(2001.12 발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 공존을 위한 오스로 평화 프로세스(Oslo peace process)에서 결정적 중재 역할을 수행한 후세인 국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
칠레(2004.01 발효)	- 칠레의 FTA 체결 급증에 따라 칠레시장에서 피해를 방지하고 FTAA협상시 노동, 환경 등 이슈 관련 칠레지 지 유도 목적
싱가포르(2004.1 발효)	-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교역확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아시아지역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해 추진 * 정치적 배경 - 1992년 이후 미군에게 싱가포르내 시설접근권이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ASEAN방위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미국의 역할 지지
호주(2005.1 발효)	- 경제적 목적에 앞서, 호주의 이라크전쟁 적극적 지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추진
CAFTA-DR(회원국별로 2006.3~2007.3중 순차 발효)	- 미국은 오래전부터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접 카리브 해 연안국들에게 무역특혜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미국산 원사 사용기업의 해외 현지진출이 활발했음.

체결상대국	주요 추진 배경
	- 2005 쿼터 폐지후 이들 지역 생산제품이 중국산 등에 밀리게 되자 FTA 추진, 아울러 FTAA에서도 추진력을 얻고자 함. * 섬유류에 대해서는 기존 CBI 통한 혜택을 강화, 영구화하여 쿼터철폐에 따른 피해 최소화 추구 - 정치적으로도 이들 지역을 경유한 마약거래 근절, 안정 지원을 통한 이민자 유입 통제 목적도 작용

나. FTA 추진상대국 선정 절차

미국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감사원)는 의회 요청에 따라 USTR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02년 이후부터 상대국 선정시 고려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의 FTA 대상국의 선정방법은 ① 상대국 준비정도, ② 경제적/상업적 실익, ③ 개방정책에 대한 의지, ④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적 실익과의 합치성, ⑤ 미국과 FTA체결에 대한 의회 및 민간지지 정도 ⑥ 미국 정부의 자원 제약 등이다.

상대국의 준비정도는 상대국의 정책적 의지, 협정이행능력 및 법률체계 등 상대국의 정치적, 정책적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 정책에 대한 의지는 동사안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이다. 실제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부문과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경제적 요소 이외의 미국 국익 전반과의 조화 정도를 살펴본다. 이어 미국의회 및 비즈니스 그룹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지정도를 통해 국내 여론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직접 추진하는 미국 USTR내의 인적자원 등 정부 자체적인 추진 요소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자국이 추진 중인 각종 지역경제통합 및 무역특혜제도(FTAA, EAI⁷⁾, AGOA⁸⁾, CBI⁹⁾, ATPA¹⁰⁾ 등)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통합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FTA 추진 상대국을 선정한다.

<표 2-2> 미국의 FTA 상대국 선정시 고려요소

고려요소	내용
상대국 준비정도	- 상대국의 정치적 의지, 협정이행능력 및 법률 체계 등
경제적/상업적 실익	- 무역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무역자유화 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	- 미국 양자/다자 무역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지지 수준
미국 국익과의 합치성	-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미국 국익 전반과의 조화 정도 - 외국 대표의 방미나 USTR 대표의 외국 방문을 통해서도 상대국 후보 선정 가능
의회/민간 부문지지	- 미 의회, 비즈니스 그룹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지정도
미 정부계약 사항	- USTR 내 인적자원 제약 등

자료: Intensifying Free Trade Negotiating Agenda Calls for Better Allocation of Staff and Resources, GAO(2004.1)

미국의 FTA 추진 대상국의 실제 행정적 검토 절차는 미국 국가안보위원회/국가경제위원회(NSC/NEC)가 발표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7)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8) African Growth Opportunity Act
9) Caribbean Basin Initiative
10) Andean Trade Preference Act

2003년 5월 미국 국가안보위원회/국가경제위원회(NSC/NEC)는 FTA 상대국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대국 선정시 고려요소와 심도 있는 선정 작업을 위한 TPSC(Trade Policy Staff Committee), TPRG(Trade Policy Review Group), Deputies Committee, Principals Committee 등 4개 상설 관계부처 그룹 활용을 제시하였다.

4개 상설 관계부처 그룹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TPSC(Trade Policy Staff Committee)는 교역 이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19개 이상의 연방정부기관 국장급(senior officials)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USTR에서 운영한다. TPRG(Trade Policy Review Group)는 연방정부기관별 교역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차관/차관보 및 기타 고위간부로 구성된 협의체로 TPSC와 마찬가지로 USTR에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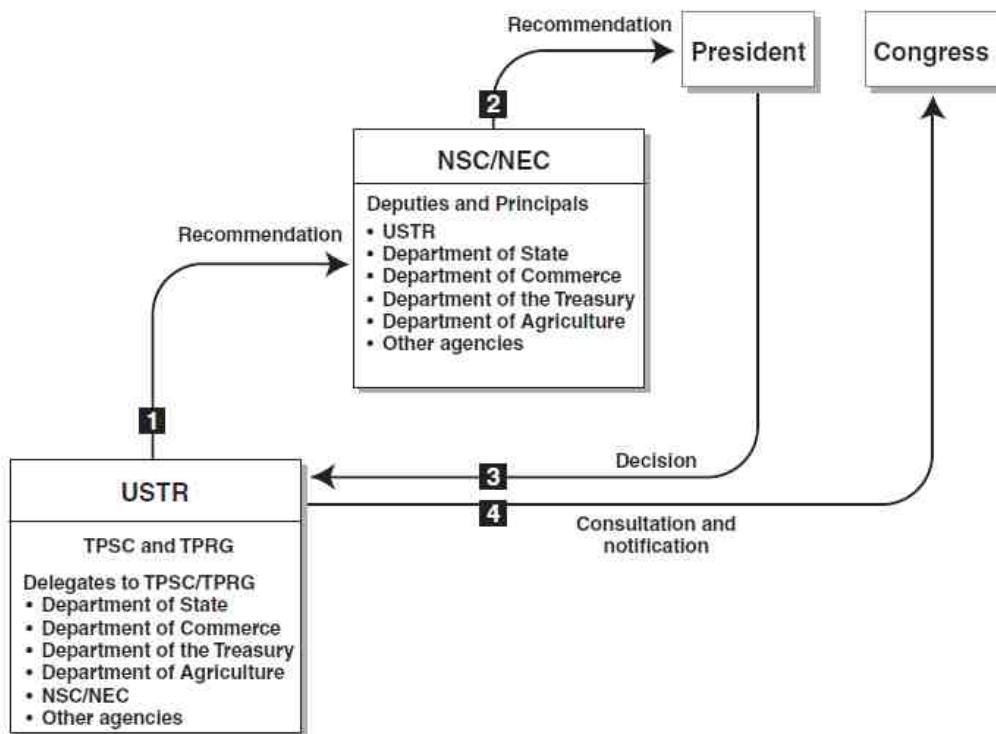
Deputies Committee는 교역과 관계된 모든 연방정부기관(cabinet agencies)부 장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NSC/NEC에서 운영한다. Principals Committee는 이들 기관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NSC/NEC가 운영하고 있다.

<표 2-3> 4개 상설 관계부처

구분	TPSC	TPRG	Deputies Committee	Principals Committee
구성원	19개이상의 연방정부기관 국장급(senior officials)들	차관/차관보 및 기타 고위간부	교역과 관계된 모든 연방정부기관(cabinet agencies)부장관	교역과 관계된 모든 연방정부기관(cabinet agencies)기관장
운영주체	USTR	USTR	NSC/NEC	NSC/NEC
활용방법	교역 이슈 관련 전문 지식 활용	연방정부기관별 교역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제공	교역 관련 협의	교역 관련 협의

다음 <그림 2-1>은 미국이 FTA상대국을 선정하는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FTA 상대국 선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USTR의 협상 상대국 추천에 의해 게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TPSC와 TPRG에 의한 해당국가의 평가단계이다.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국가안보위원회/국가경제위원회, 기타 정부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해 평가가 시행된다. 세 번째 단계는 TPSC와 TPRG의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Deputy Committee와 Principals Committee에 협정대결 대상국을 추천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이들 협의체 검토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절차이다. 대통령이 해당국과 FTA 협상 개시를 희망할 경우 USTR을 통해 협상개시 90일전까지 의회에 통보한다.

<그림 2-1> 미, FTA 상대국 선정 절차



자료 : GAO, Intensifying Free Trade Negotiating Agenda Calls for Better Allocation of Staff and Resources, (2004.1)¹¹⁾

11) NSC/NEC National Security Council/National Economic Council 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은 FTA 상대국 선정시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으나,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의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USTR은 의회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 상대국을 선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업종별 단체 역시 업계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의 FTA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미제조업협회(NAM)는 2005년 5월 5개 FTA 협상후보국(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뉴질랜드) 리스트를 USTR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¹²⁾

다. 미국의 기체결 FTA 현황

<표 2-4>는 미국의 국가별 FTA 추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NAFTA,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 14개 협정, 20개국에 대하여 FTA를 체결하였다.

협상중인 협정은 6건, 30개국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UAE, SACU, FTAA, 에콰도르 등이다. 태국과, 에콰도르는 국내 정치 사정에 의하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UAE, SACU 등은 경제 협력 형태를 하향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외 대만, 파키스탄, MEFTA 등과의 FTA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 코트라(2007),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표 2-4> 주요 국가별 FTA 추진 현황

기체결(14건, 20개국)	협상중(6건, 30개국)	검토중(2건 2개국)
이스라엘(1985.8 발효) NAFTA ¹³⁾ (1994.1 발효) 요르단(2001.12 발효) 칠레(2004.1 발효) 싱가포르(2004.1 발효) 호주(2005.1 발효) 모로코(2006.1 발효) CAFTA-DR(2006.3~2007.3 순차발효) 바레인(2006.8 발효) 오만(2006.9 미측 비준 및 공식서명 완료: 오만 의회 비준 대기중) 페루(2005.12 협상 타결 및 2006.4 정식서명 완료) 콜롬비아(2006.2 협상타결 2006.11 정식서명 완료) 파나마(2006.12 협상 타결, 2007.6 정 식서명 완료) 한국(2007.4 협상타결, 2007.6 정식서명 완료)	태국(태국 정국 불안으로 2006.2 이후 협상 중단 상태) 말레이시아(2007.4까지 6차 협상) UAE(2007.2월 경제협력형태를 TIFA로 하향조정 추진) SACU ¹⁴⁾ (2006.11 경제협력형태 를 TICA로 하향 조정 추진) FTAA ¹⁵⁾ (2005.12월까지 협상타 결 목표로 했으나, 현재 중단 상태) 에콰도르(에콰도르 정치적 이유로 2006.5 잠정 중단 상태)	대만 파키스탄 MEFTA ¹⁶⁾

자료 :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13) 캐나다, 멕시코

14)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남아프리카 관세동맹),보츠나와,레소토,나미비아,남아공,스와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15)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16) 미국은 2003 이후 반테러 추진방안의 하나로 2013년까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 MEFTA(Middle East FTA)추진, 2007.8 모로코, 바레인, 오만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UAE와는 TIFA(Trade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무역투자기본협정“) 추진중

제2절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 미국의 FTA 이행체제

한국은 2005년 12월 3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을 제정, 공포하고 이 법에 의하여 FTA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동 법을 기본으로 하여 FTA 특혜 관세,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원산지조사 등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TA의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FTA 이행절차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최초 FTA인 미-이스라엘 FTA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준 FTA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체결한 최초의 FTA는 지역적으로 근접한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이다. NAFTA는 유럽 연합에 대응되는 미국형 경제 통합으로 미국형 FTA의 여러 표준을 제공한 협정이었다. 특히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 심사 및 조사 등 FTA 특혜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을 재규정하였으며, 미국과의 FTA 협정에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NA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동 협정 제4장에서 공통기준을 두고 협정부속서 제401호, 이행법 제 3332조, 이행규칙(19CFR 제 181.131조 및 부속서)에서 품목별 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 원산지 확인, 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 원산지 사전심사 및 불복청구절차 등으로, 동협정 및 이행규칙(19CFR PART)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2-5> NAFTA 이행법 구성

구분	국내이행법(특례법)		이행협정(통일규칙)	
	유무	명칭 및 규정내용	유무	규정내용
미국	유	- 이행법 제3332조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별기준)	유	- 이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 CFR181.131 · 원산지 증명 : CFR181.11-181.23 · 원산지확인 : CFR181.71-181.76 · 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 : CFR181.81-181.82 · 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 CFR181.91-181.102

가. 미국의 이행법

미국의 경우 각각의 FTA 체결시마다 이에 대응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왔다. 일례로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미국-칠레, 미국-호주 FTA 등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각국 FTA에 대해 이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행법을 제정하였으며, 본 법령은 2011년 10월 12일 미국의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순간부터 회기일 기준 90일 이내 표결을 종료하게 되어 있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미 행정부(USTR)가 FTA 이행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제출해 상·하원 동시 심의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하원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보내면 상원에서 이를 심의 표결하는 것으로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하원 세입위에서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데 최장 45일이 주어지며, 이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다시 최장 15일이 주어져 하원에서의 표결까지는 최장 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그 결과 회기일 기준 6일 만인 10월 12일 상·하원 동시 표결이 이루어져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에서는 찬성 83, 반대 15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 처리되었다.¹⁷⁾

<표 2-6>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절차 및 발효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정부안 의회제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의 상·하원에 동시에 FTA 이행법안 제출	
의회처리	하원	세입위 심의 (정부안 제출 이후 최장 14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최장 45일
		본회의 표결 (본회의 보고 후 최장 15일 이내 표결)	최장 15일(누적 60일)
	상원	재무위 심의 (하원 표결 후 최장 15일 또는 정부안 제출 이후 최장 45일 가운데 긴 기간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하원 표결 후 최장 15일(누적 75일)
		본회의 표결 (본회의 보고 후 최장 15일 이내 표결)	
정부의 표결 결과 처리		표결 이후 즉시 대통령에게 표결 결과 전달 대통령이 거부 없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입법 처리	
FTA 발효		한-미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일로부터 60일 경과후 발효(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 발효)	

자료 : 서진교 외(2011.10),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9 재인용

한국의 경우, 한-미 FTA는 2007년 6월 정식 서명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10월 3일,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 6일 만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미 의회 절차는 완료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6일 한-미

17) 서진교 외(2011),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와 정책 시사점

FTA 비준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11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FTA 협정의 미국 국내적 효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발견된다. 한-미 FTA 반대 측에서는 한-미 FTA 협정은 한국에는 ‘조약’이지만 미국에는 ‘행정협정’으로, 미헌법에 규정된 대로 조약의 지위에 있는 한-미 FTA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이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지만, 미국의 행정협정은 미연방법과 비교해 법적지위가 애매하거나 그 하위에 놓인다고 주장한다.¹⁸⁾

그러나 김호철(2008)의 경우 한-미 FTA는 의회가 정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른 국제협정인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¹⁹⁾으로 다수설 및 판례에 따르면 조약과 대체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적으로 조약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의회의 간섭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거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인 순수행정협정(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과 차별성을 띤다고 반론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연방헌법에 따른 조약은 아니지만, 미국 다수설과 판례에 따를 경우 조약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²⁰⁾ 단, 조약과 의회협정간의 대체성에 대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는 필요해 보인다.

한-미 FTA협정은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해 미국 국내 규범간 우열관계를 규정받게 된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규범간 우열관계, 즉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정 부문이다.

18) 이해영(2007),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 FTA”, 한미 FTA 국민보고서 2, 도서출판 강

19)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제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그 권한에 따라 체결한 내용을 의회가 시후에 승인한 국제협정을 의미

American Law Institute(1987),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303, 김호철(2008), 재인용

20) 김호철(200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국내적 효력 및 이행절차 검토, 통상법률 제82호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의하면 미국은 조약 당사자국으로 동 합의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또한 한-미 FTA 1.3조는 협정규정이 주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102(a)조에 따르면 협정이 미국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행법률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미국 기존 연방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더해서 주법의 경우에도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화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약으로서 그리고 한-미 FTA 1.3조의 규정과 한-미 FTA 이행법 제102(a)와 (b)조가 상호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미 FTA와 미국 국내법 간 우열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호철(2008)은 이행법률상 규범과의 관계 규정은 이행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회의 견제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쪽 의견은 미국 연방헌법 6조2항과 한-미 FTA 이행법 제102(a)와 (b)에 의해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의 순으로 법률간 우열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FTA의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각 FTA별로 이행절차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국 간 법률제도의 차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동 사안은 협상과정에서 양국 협상단이 한-미 FTA 1.3조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더불어 FTA 이행법률 및 행정조치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한-미 FTA 이행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한-미 FTA 이행법²¹⁾

장	절
1장 협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 및 승인	
	101절 협정의 시행에 관한 승인 102절 주법과 미국협정과의 관련성 103절 규정 예측에 관한 이행법 104절 경유조항 및 협의, 시행일 105절 분쟁해결의 행정처리 106절 청구사항의 중재 107절 시행일, 종료일
2장 관세 조항	
	201절 관세 수정 202절 원산지 규정 203절 관세 비용 204절 특혜관세대우의 부정, 잘못된 원산지증명서, 허위 정보에 관한 공개 205절 수입의 재청산 206절 요구사항의 기록 207절 직물 또는 의류에 관한 무역에 관련한 시행 208절 요구사항
3장 수입의 경감(RELIEF FROM IMPORTS)	
	301절 정의
Subtitle A 협정에서 관세의 면제	311절 관세경감의 시행 312절 위원회 조치에 관한 신청 313절 관세경감 조항 314절 관세당국의 권한의 종료 315절 당국의 보상 316절 비공개 사업정보
Subtitle B 자동차의 셰이프가드 조치	321절 자동차 셰이프 가드 조치

21)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장	절
Subtitle C 직물 및 의류의 세이프가드 조치	331절 관세경감 시작일 332절 관세경감에 관한 조항 및 결정 333절 관세경감의 기간 334절 관세경감으로부터 제외되는 조항 335절 수입물품의 관세경감의 종료일 이후의 관세액 336절 관세당국의 권한의 종료 337절 당국의 보상 338절 비공개 사업정보
Subtitle D 1974 무역법의 2장 하에서의 사례	341절 한국의 법령에 관한 조치와 조사결과
4장 조달	
	401절 적용가능한 물품
5장 상쇄	
	501절 최소한의 성실한 요구사항에 필요한 근로소득세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관한 범칙금액의 상승 502절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에 위치한 감호소의 요구사항 503절 제경비의 금액 504절 관세지급액의 연기 505절 기업추정 세금의 지불에 관한 기간

제1장에서는 협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시행에 관한 승인, 주범과 미국협정과의 관련성, 규정의 예측에 관한 이행법, 경유조항 및 협의, 시행일, 분쟁해결의 행정처리, 청구사항, 시행과 종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관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 수정, 원산지 규정, 관세비용, 특혜관세의 부정 및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 등 허위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수입의 재청산, 요구사항의 기록, 직물 또는 의류에 관한 규정,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장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 부문으로 협정으로 인한 관세 면제 사항, 자동차 및 식물·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조달 부문으로 적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제5장에서는 상채부문이다.

원산지에 관한 규정은 한-미 FTA 이행법 제2장의 202절에서 원산지 규정과 204절에서 특혜관세대우의 부정,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 허위 정보에 관한 공개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미국의 관세제도 및 심사제도-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가. 관세제도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이다. 동 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시 가격은 얼마이고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수출입과 관련한 다량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세관은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 적절성과 아울러 원산지 관련 사항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다. 단,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를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 불법, 유해 동식물로 규정된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의 불법적인 수입에 대해 차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쿼터”(TRQ :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²²⁾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성상을 파악하여 수출입시 필요한 세번 분류 작업을 통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반덤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외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미국의 관세율 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동 사이트에서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2007년 이후 가장 최근에 발표한 관세율 및 수입 등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동 사이트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6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 후, 정확한 품목을 선택하여 다시 검색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다.²³⁾

미국의 관세율 표에는 각기 다른 관세율이 명기된 2가지 칼럼이 있다. ① Column 1 (NTR 및 특혜관세율)과 ② Column 2 (Non-NTR)이다. Column 2는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로 테러 국가 등 적성국가에 적용되며 현재는 쿠바, 북한, 라오스 등이 동 분류에 해당된다.

이외 미국의 관세 및 수수료는 상계관세, 덤핑관세, 부두사용료, 화물하역료 등이 있다. 이 중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로써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가 있다.

22) http://www.cbp.gov/xp/cgov/trade/basic_trade(기본적인 수입관련 규정 사이트)

23)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는 무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자국의 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때에, 동 보조금 때문에 대 미수출 가격이 싸지는 경우 이 가격차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수출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는 미국 상무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관세율 표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자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이와 같은 관세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수입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서(Petition)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무역위원회가 적정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난 이후 청문회(Hearing)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과하게 된다.

미국 세관은 관세 이외에도 부두사용료(HMF), 화물 하역료(MPF)등을 부과하고 있다. 부두사용 요금은 F.O.B가격에 0.125%를 부과한다. 이때 부두사용료 부과 대상은 해상 운송시에만 해당하며, 항공 운송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동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화물 하역료는 세관에서 처리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모두 해당되며, F.O.B 가격의 0.21% 최소비용이 25달러이고 최대비용은 485달러이다. 단 화물 하역료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면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2-8>와 같다.

<표 2-8> 관세 및 수수료 종류

관세	내용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 Countervailing Duty(C.V.D)는 수출국에서 자국의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보조금 때문에 대 미수출 가격이 싸지는 경우가 가격차를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임. -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는 미국 상무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관세율 표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ies)	- Antidumping Duty(AD)는 수출자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임.
H.M.F (Harbor Maintenance Fee)	- 부두사용 요금으로 F. O. B 가격에 0.125를 부과함. - Ocean Shipment 에 해당하며, Air Shipment 에는 해당하지 않음. - 동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음.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 세관에서 Processing Fee 로 부과하는 것으로 Ocean 과 Air Shipment 모두 해당되며, F.O.B 가격의 0.21% Minimum Charge 가 25달러이고 Maximum 은 485달러임. - 동 수수료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면제되고 있음.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 분류(CLASSIFICATION)시에는 수입상품의 관세액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별 관세율은 해당상품의 관세율 분류번호 표에 나타나 있는 세율에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정확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12개의 Section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개의 Chapters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체제로 개편되었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 분류이며, 8단위부터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므로 세부품목을 분류하는 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상품의 세번(HS 번호)은 New York의 Area Director of Customs에 정해진 정보와 샘플을 제출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번 부여 받은 HS 번호는 미 전국 어느 세관에서 통관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관의 법률규정 부서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²⁴⁾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을 위해서는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DEDUCTIVE VALUE, 구성가격(COMPUTED VALUE)이 필요하다. 각각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수입상품의 거래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할 가격으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①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 ②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
- ③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 된 경비
- ④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비용
- ⑤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

24) BINDING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다만,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 ② 해상화재 보험료
- ③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 ④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종/유사상품의 거래가격과 비교를 통해서 수입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거래가격을 이용한 관세 부과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용한다. 수입하는 상품과 같은 모델 또는 유사한 상품이 수입될 때의 가격을 원용하여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가격으로 이용한다. 이때의 조건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수출한 날짜, 판매수량과 판매방법 등 거래 조건이 유사한지도 고려한다.

다음으로 DEDUCTIVE VALUE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수수료,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가격을 계산한다.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에 필요한 마지막 요소는 구성가격(COMPUTED VALUE)으로 위의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관세청산, 통관거절 및 반환요구 등과 같이 세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있다. 단, 청산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세관의 법률 또는 사실판단에 대한 착오는 모두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통관시 자신이 예치한 금액대로 세관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단, 관세청 본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통관 거절에 대한 불복의 경우, 세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복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이나 기타 세관 결정과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불복서의 신속한 처리(Accelerated Disposition)을 원하는 경우, 불복한 지 90일 이후에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지 30일이 지나도록 세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 불복서는 30일째 시점에서 부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반제품을 B국가에서 완성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제품의 관세분류가 완제품의 관세분류로 이동하기 위한 규정에 부합된다면 B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제도이다. 즉, 원산지는 수입품을 제조(Production of Manufacture)한 국가를 의미한다. 제조과정이 복수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는 문제의 수입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국가이다.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성격 또는 용도 변화 여부이다. 즉, 실질적 변형 원칙은 공정의 형태 즉 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서 적용을 약간 달리한다. 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미리 세관의 결정을 얻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용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의 예를 보면 A국에서 일반유리판을 B국의 안전유리판으로 바꾸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유리판을 안전유리판인 자동차용 유리판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는 실질적 변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안전유리판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B국이 원산지가 된다. 아울러 A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중간재(부품)을 B국에서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 경우 이 경우에도 원산지는 B국이 된다.

나. 이행법의 원산지 부문

한-미 FTA 이행법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하여 2장 관세 조항의 202절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a)해석과 적용, (b)원산지 제품, (c)RVC 규정, (d)재료 가격, (e)누적 조항, (f)비원산지 재료물품의 최소허용기준, (g)대체가능 물품에 관한 조항, (h)부속품, 여분의 것 또는 도구, (i)포장 재료 및 소매용의 상자, (j)배송용의 상자 및 포장재료, (k)비간접적 재료, (l)수송 및 환적, (m)세트물품의 품목분류, (n)정의, (o)대통령 선언에 대한 권한 등으로 구성된다.

<표 2-9> 한-미 FTA 이행법 원산지규정

해당조항	세부사항
2장 관세조항-202절	(a) 해석과 적용 (b) 원산지 상품 (c) 역내가치 포함비율 (d) 재료의 가치 (e) 누적조항 (f) 비원산지 재료물품의 최소허용기준 (g) 대체가능 물품에 관한 조항 (h)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i)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 (j) 수송용의 용기 및 포장재료 (k) 간접 재료 (l) 통과 및 환적 (m)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n) 정의 (o) 대통령 선언에 대한 권한

우선 (a)항의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세 체계 즉, 관세분류, HTS,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문을 정의하고 있다.

(b)항 원산지 제품 부문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원산지 제품이란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되, 한-미 FTA 협정문의 부속서 4-A, 6-A를 따를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4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이 장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소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소호의 상위 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에 우선한다.

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라. 상품이 어느 한 재료로 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상품은 “완전히”그 재료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마.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 1)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 2)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 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 인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부속서 6 -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 1 부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단일 원산지 기준이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그 기준이 호 변경이나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지정된 군내의 다른 호 또는 소호를 포함하여, 각 경우에 맞게, 다른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준이 “그 군외의” 호 또는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기준에 규정된 호 또는 소호 군 외의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기준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부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c)항에서는 Regional-Value-Content, 역내가치 포함비율 즉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부문이다. 우선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부문에 대해 협정 부속서에 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가가치 계산 방법으로 공제법(Build-down), 직접법(Build-up)을 명시하고, 생산자인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제품에 대한 특례로서 이를 테면 순원가법(Net Cost), 공제법, 직접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d)항에서는 재료의 가치, 즉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하고, 미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재료가격을 정의하고 있다. 역시 협정문을 따르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재료가격에 대해 수입재료의 경우 재료의 조정가치로 재료가격을 합의하였다. 이때 조정가치는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말하며, 제품가치에서 필요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및 경비를 제외하도록 조정된 가치를 의미한다. 국내 구입재료 역시 관세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와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e)항에서는 누적조항에 대한 부분이다. 누적기준은 역내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항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물품의 최소허용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 미소조항은 양국이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있으며, 각 장별로 해당물품과 그 세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g)항은 대체가능 물품에 관한 조항인데, 한-미 FTA에서 합의한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나 물품은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물품으로 정의되는데,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로 꼽힌다. 동 품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사항이다.

(h)항은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관한 조항인데,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i)와 (j)항은 각각 포장재에 대한 부문을 명시하고 있다.

(i)항에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6-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j)항에서는 배송용의 상자 및 포장재료가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k)항은 간접적 재료에 대한 부문으로 제품의 검사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장비의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 장구, 부품 등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부문이다.

(l)통과 및 환적부문에서는 직접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m)항은 세트물품의 품목분류의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 가격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문은 한-미 FTA에서 규정된 사항을 재규정하는 부문으로 협상 결과와 동일하다. 즉 한-미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에만 특화된 사안인 만큼 관세법의 불필요한 개정보다는 이행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 증명

미국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의 특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에 반영하여 법체계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제130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 19) Part 134에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NAFTA 및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덤핑방지법, 1994 GATT 실시법, BUY American법, 연방거래위원회규칙, 자동차라벨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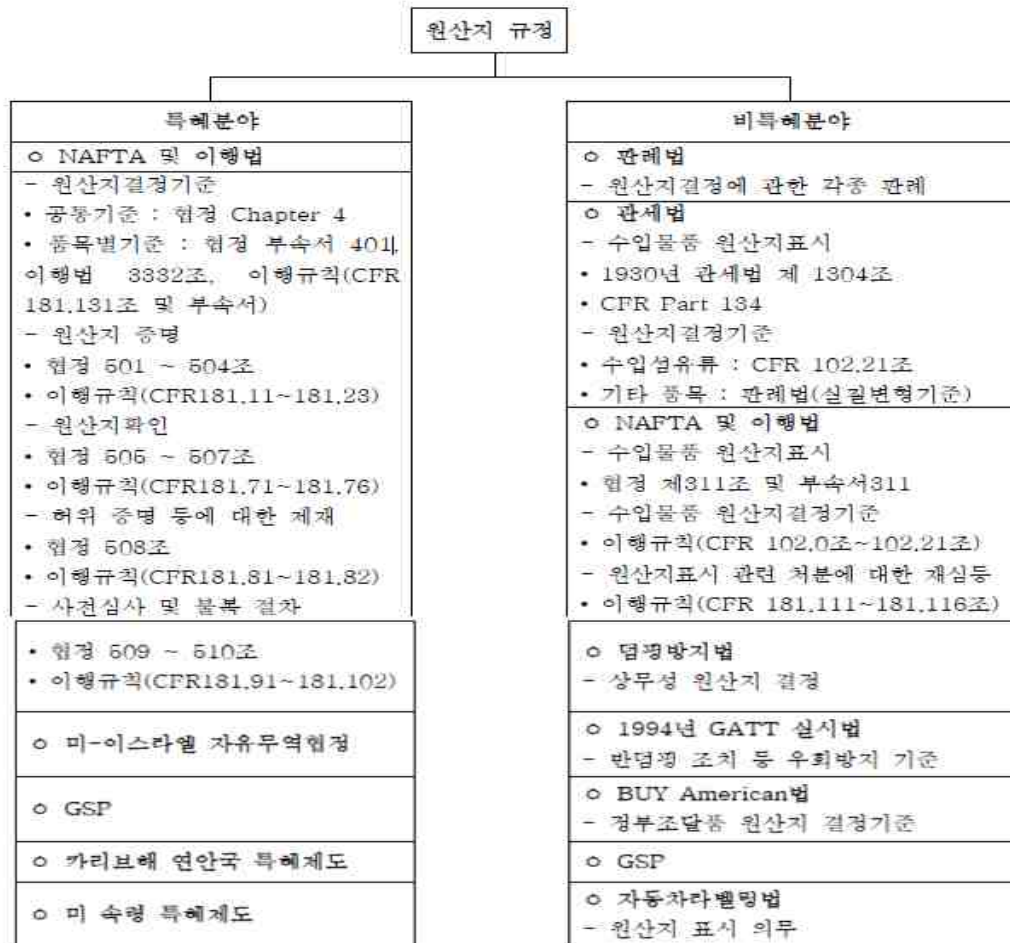
특혜원산지규정도 미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원산지확인에 관한 절차도 관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협정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협정별로 의회에서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FTA의 시행을 위해서는 FTA별 이행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쌍방적 특혜규정으로서 NAFTA 및 그 이행법,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이 있고, 일방적 특혜규정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카브리해 연안국에 대한 특혜제도, 미국 속령 특혜 제도상의 규정 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지역무역협정으로 거론되는 NAFTA 역시 출범시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1993)을 제정하여 특별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존의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은 국내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협정 제4장에 원산지결정의 공통기준을 두고 있다.

<그림 2-2> 미국 원산지규정 체제



이행규칙(19CFR 제181.111조 내지 제181.116조)에는 원산지증명, 원산지확인, 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 원산지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행규칙(19CFR 제102.0 내지 제102.21조)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²⁵⁾

25) 이계현(2010),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204절, 206절에서는 다음<표 2-10>와 같이 원산지 증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2-10>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원산지증명에 관한 규정

장	절
2장 관세조항	204절 허위 정보의 공개, 허위 원산지 증명서, 특혜관세의 미허용
	206절 요구사항의 서류보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4절에서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서에 관해 허위, 중과실, 과실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6절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수출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기록 및 보충서류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관련서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①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에 관한 지불서류
- ②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간접 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격에 관한 지불 서류
- ③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서류는 수출된 것을 의미함

여기서 KFTA(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란 한-미 FTA 협정문 제 6.15조 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로 해당 제품은 이 협정하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및 완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복사본을 포함하여 제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보충서류 및 모든 기록에 관해 검사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무장관이 규정한 법과 규정사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후 적어도 5년 동안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서류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²⁶⁾

또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자율증명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 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다만, 증명은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음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함을 규정한다.

-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④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
-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 ⑧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FTA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 권고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²⁷⁾

원산지 증명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의 경우 수출자(생산자)만 발급할 수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도 발행 가능하다. 다만, 수입자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근거법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26) 원문 부표 참조

27) 부표 7 참조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또한,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동일한 물건이 반복하여 수입될 경우 1년간 포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²⁸⁾

4. 통관제도

가. 한-미 FTA 협정문에서의 통관에 관한 규정

한-미 FTA 협정문상에서 통관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제7.2조(상품의 반출), 제7.7조(특송화물)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7.2 조 상품의 반출

1.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28) 한-미 FTA의 경우 다른 협정보다 발급권자, 유효기간, 포괄증명이 가능하여 간편한 절차로 운영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 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²⁹⁾

제 7.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
-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³⁰⁾

29)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나. 수입통관제도

미국의 일반 통관절차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Entry)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반출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한다.

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해당지역의 FDA 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서(Agency)는 60여곳이 있으며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약식통관, 정식통관, 우편통관이다.

우선 약식통관의 대상은 1,250달러 미만 가격의 제품(예외: HTSUS 에서 Section VII, VIII, XI and XII Chapter 94 and Chapter 99, Sub Chapter III & IV)이 통관대상으로 간주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30) 사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다음으로 정식통관의 경우 Invoice 금액이 1,25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 통관 대상으로는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쿼터통관(Quota Entry), 창고통관(Warehouse Entry),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보세운송(In Bond Transit)이 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제3국에서 수입하여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② 쿼터통관(Quota Entry)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③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되었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④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

⑤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 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3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 는 특별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⑥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⑦ 보세운송(In Bond Transit)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3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
-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
- 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
-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

우편통관은 다음과 같다. 일부 품목에 한하여 가격이 1,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다. 무관세 품목의 경우, 우체부가 배달해 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하여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 (Formal Entry)을 하여 관할 세관의 통관절차가 완료 되어야만 우체부가 배달해 준다.

그리고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흔한 유형이 CF-3461 및 CF-7501를 제출함으로써 즉시방출 또는 “Consumption Entry, (type 01)”의 자격이 부여된다.

상품이 도착한 후 5일내에 수입신고서는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CF-3461양식은 상품의 방출시 획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업송장, 포장 명단 및 기타 서류는 수입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산제도로 수입청산이 있다. 수입 청산은 모든 유형의 01 consumption entries의 수입 후 314일에 청산이 가능하다. 수입에 관련한 반덤핑은 10년까지 가능하다.

회계·검사제도로는 세관 검사시 집중 측정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는 30일에서 2년 이상까지 지속할 수 있다. 세관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특수무역 프로그램, 문서보존, 원산지·원산지 표시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사한다. 주로 수입량에 기준을 두고 수입 견본품을 선택한다. 세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추정하여 관세·별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부정확한 품목분류를 발견하였더라도 별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통용되는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관세부정 및 벌금 사항에 대해 세관이 부과하는 벌칙사항으로는 3단계(부주의, 중과실, 사기)가 있다. 벌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표 2-11>와 같다. 벌금 부과 대상은 문서보존 위반, 원산지 표시위반, 부주의 중과실, 사기, 범죄행위, 기타사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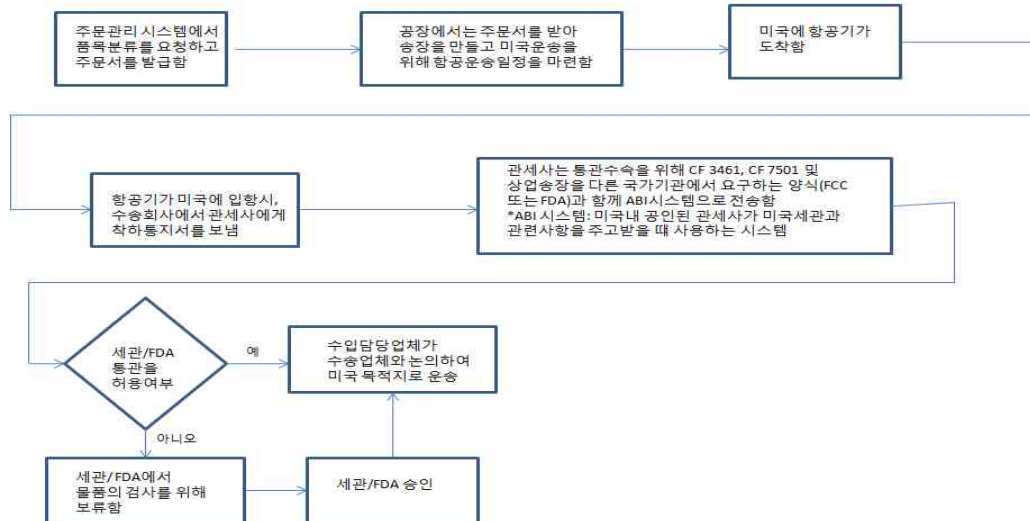
다음 <그림 2-3>은 미국 수입통관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절차이다. 항공운송의 경우 주문관리시스템에서 품목분류를 요청하고 주문서를 발급한다. 이에 공장에서는 주문서를 받아 송장을 만들고 미국운송을 위해 항공운송일정을 마련한다. 미국에 항공기가 도착하고 미국에 입항하면 수송회사에서 관세사에게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낸다. 관세사는 통관수속을 위해 CF 3461, CF 7501 및 상업송장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FCC 또는 FDA)과 함께 ABI시스템(automated broker interface)으로 전송한다. 전송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FDA는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데 통과가 되면 미국내 목적지로 운송된다. 만일 통과받지 못하면, 세관/FDA에서 물품의 검사를 위해 보류된다. 해상운송은 항공운송과 달리 몇 가지 통관과정들이 더 필요하다.

<표 2-11> 세관이 부과하는 벌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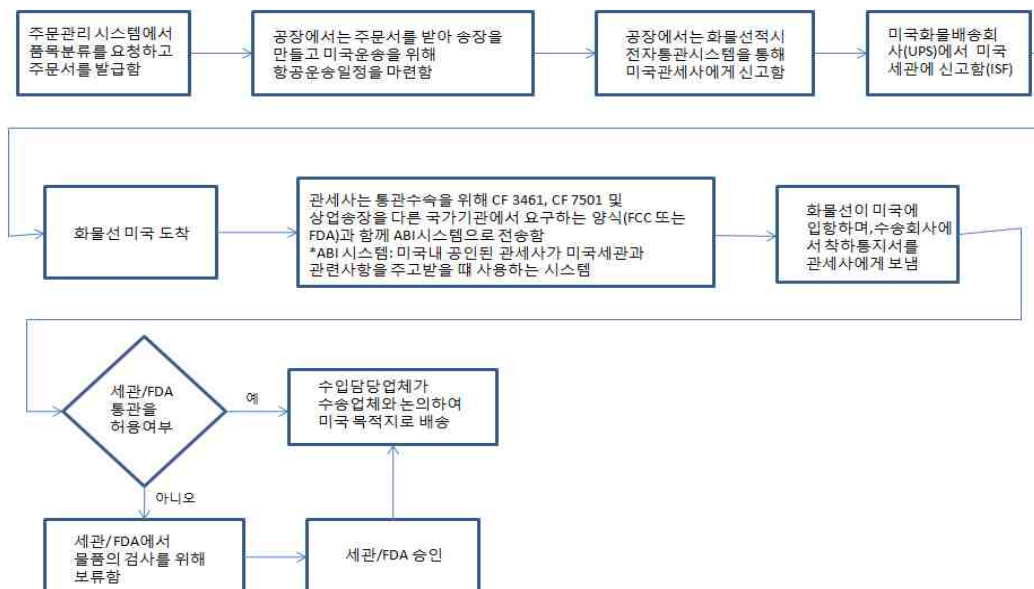
구분	수입의 감소	수입의 비감소
문서보존 위반		부주의 국내가격의 40% 또는 수입시 \$10,000적은금액
원산지 표시위반		부적정 원산지 표시 국내가격의 100%적은금액
부주의	국내가격의 100% 적은 금액 또는 관세의 2X손실	국내가격의 20%
중과실	국내가격의 100% 적은 금액 또는 관세의 4X손실	국내가격의 40%
사기	상품가격의 100%	상품가격의 100%
범죄행위	상품의 몰수 \$500K 벌금 및 5년의 구금	상품의 몰수 \$500K 벌금 및 5년의 구금
기타 벌금	가능한 경우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기소	가능한 경우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기소

<그림 2-3> 미국 수입 통관절차

□ 항공운송



□ 해상 운송



다. 수출통관제도

다음으로 미국의 수출통관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수출화물과 관련하여 2가지의 중요한 업무가 있다.

먼저 통계청(Bureau of the Census)을 위해 수출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화물이 수출에 대한 허가 및 제재에 대하여 규정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여부를 확인 및 감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수출통관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 AES)이다.

수출통관시스템은 여러 정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선적자료가 관세청에 전자적으로 신고되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방 정부의 중앙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관세청, 통계청 산하 국제무역부문(Foreign Trade Division),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국무부 산하 군수거래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 및 기타 연방기관들과 수출무역단체에서 합작투자하여 개발하였다. 이는 1995년 7월에 Baltimore, Norfolk, Charleston, Houston, Los Angeles/Long Beach의 5개 항구를 이용한 수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1996년 10월에는 전 항구, 1997년 7월부터는 전 공항 및 국경으로 확대하였다. 도입초기에는 선박수출신고(Shipper's Export Declarations; SED)의 서면양식과 자양식을 모두 신고하도록 이중신고가 강제되었으나, 1996년 10월부터 이중신고의무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항만, 공항, 국경을 경유하는 모든 수출에 대해 적용되는 전국가적인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수출통관시스템은 대외무역법시행규칙(Foreign Trade Regulations; FTR)과 수출 관련법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편집이 가능하고, 수출신고 즉시 오류가 감지되어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관련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전자적으로 집계된 수출선적자료를 통해 무역 통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수출통관시스템의 장점은 수출관련법령 이행 보장, 발견 즉시 오류수정, 비용 감소, 선적허가에 대한 서면평가의 생략을 들 수 있다.

첫째, 편집기능에 의한 오류 수정을 통해 수출신고 관련 요건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수출서류를 성공적으로 신고했다는 확인으로서 이 시스템은 내부업무처리번호(Internal Transaction Number; ITN)를 발송한다.

둘째, 수출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생략 또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적이 지연되거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미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셋째, 중요한 자료편집을 할 수 있어서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며, 무료 보안인터넷프로그램인 AES Direct를 통해 수출정보 신고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산업보안국(BIS)과 군수거래통제국(DDTC)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사전에 허가를 받은 수출선적에 대한 자료는 허가에 대한 서면평가 없이 적절한 Partnership Agency에 거래를 전송한다.

수출화물정보의 전산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수출통관시스템(AES)을 통한 수출정보 전자신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물품분류코드별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유체물의 수출시 전자수출정보(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³¹⁾허가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있다.

31) 대외무역시행규칙(15 CFR) §30.2(a)

대외무역법시행규칙(FTR)에 의하면 전자수출정보에 대한 수출 전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후 신고가 가능하다.³²⁾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허가면제의 대상이 되는 선적은 관련 허가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수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 후 신고도 수출일로부터 10일 안에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³³⁾

대외무역법시행규칙 이외에도 관세청, 산업보안국, 국무부 등이 규정하는 수출 관련법령에서 수출규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화물정보를 관세청에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³⁴⁾ 제출기한은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출발 24시간 전, 항공기에 선적하는 경우 최종 미국공항의 예상 출발시각 2시간 전, 트럭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철도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국경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운송수단별 화물정보 제출기한은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화물은 화물정보의 사전제출요건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출발 전에 화물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기관에서 통제하는 수출화물에 대한 요건은 변경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대해 72시간 전 사전통지요건을 계속 시행한다.

제출정보의 내용은 <표 2-12>과 같다.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화물정보(Commodity Data)와 운송정보(Transportation Data)로 구분된다.³⁵⁾ 화물정보는 필수 정보(Mandatory Data)와 조건부 정보(Conditional Data), 선택적 정보(Optional Data)로 구성된다. 운송정보는 운송방법(배, 항공기, 철도 또는 트럭), 운송인 식별코드, 운송인명, 최종 목적국, 수출예정일, 수출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32)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2(b)

33)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2(c)

34) 관세법시행규칙(19 CFR) §192.14

35) 관세법시행규칙 192.14(c)(1),(2)

<표 2-12> 수출통관시스템에 의해 제출되는 화물정보

구분	종류	상세
필수 정보	수출자 및 수출자 확인 (USPPI and USPPI Identification)	수출자의 이름, 주소, 인적사항, 연락처를 수출통관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수출일(Date of Export)	수출일은 수출항을 떠나기로 예정된 날임
	최종양수인(Ultimate Consignee)	최종양수인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로서 실제 수출화물을 받는 자를 의미
	U.S. State of Origin	물품이 수출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주정부의 2-Character 우편번호임
	최종목적국(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물품이 소비되거나 추가적으로 가공되는 국가를 의미
	운송방법(Method of Transportation)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방식임 - 캐나다, 멕시코, 다른 외국을 통한 환송에 대해 운송방식은 운송인이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방식임
	운송인명(Conveyance Name/Carrier Name)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자로서 수출시점에 알려진 운송인명
	운송인 식별 (Carrier Identification)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운송인을 특정하는 운송인 식별번호임
	수출항 (Port of Export)	수출항은 물품이 수출운송인에 선적되는 항구·공항이거나 미국국경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육상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항구임
	특수관계자 표시 (Related Party Indicator)	수출자와 최종 양수인 중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들 간의 거래임을 나타내는 표시
	내국 또는 외국 표시 (Domestic or Foreign Indicator)	수출품이 내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표시 -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국내 생산 물품에서 외국산을 분리해 신고
	물 품 분 류 번 호 (Commodity Classification Number)	10자리 물품분류번호를 신고
	물품명세 (Commodity Description)	Schedule B나 HS코드(HTS)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선적된 물품내역을 신고

구분	종류	상세
	측정기본단위(Primary Unit of Measure)	측정단위는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기본량과 일치해야 함
	기본량 (Primary quantity)	량은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최초 단위와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적하물 무게 (Shipping Weight)	상품의 무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무게를 포함 - 적하물 무게는 항공기, 배, 철도, 트럭에 의한 수출과 가정용품의 수출에서 필요 - 우편,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출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 컨테이너 화물에서 컨테이너 무게는 적하물 무게에 포함되지 않음
	가격(Value)	전자수출정보(EEI)에 신고된 가격은 미국 수출항에서 물품 가격이어야 함 - 내륙 운송, 보험, 미국 항구·공항·국경에서의 비용 등을 포함
	수출정보코드 (Export Information Code)	수출적하물의 유형이나 수출된 물품의 조건을 확인하는 코드 (예를 들어, 구호나 자선목적의 기증품,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에 의한 적하물, 가정용품 등)
	적하물 참조번호 (Shipment Reference Number)	신청자에 의해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서 신청자의 시스템에서 적하물의 확인을 가능하게 함
	라인번호 (Line Number)	적하물에서 특정한 물품라인의 물건을 확인하는 번호
	위험물 표시(Hazardous Material Indicator)	적하물이 교통부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시
	담보번호(Inbond Code)	적하물이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운송되는지를 알려주는 번호
	허가번호/허가면제번호 (License Code/License Exemption Code)	연방정부기관이 요구하는 허가, 승인,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를 받은 물품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번호
	Routed Export Transaction Indicator	적하물이 Routed Export Transaction인지를 확인하는 표시
	Shipment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청자에게 수출적하물거래를 추가, 변경, 대체,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
	Line Item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청자에게 수출적하물거래 안에서 물품라인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
	신고옵션 표시 (Filing Option Indicator)	신청자가 수출정보를 사전신고하는지 또는 사후신고하는지에 대한 표시

구분	종류	상세
조건부 정보	대리인 및 대리인 확인 (Authorized Agent and Authorized Agent Identification)	대리인이 전자수출정보를 준비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식별 번호, 대리인 이름, 대리인의 주소, 연락 정보를 제출해야 함
	중간 양수(Intermediate Consignee)	중간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 - 중간양수인은 수출화물을 최종양수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주로 판매자나 구입자) 또는 최종양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임
	FTZ Identifier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품이 반출되고 소비용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FTZ Identifier를 신고
	하역될 외국항(Foreign Port of Unlading)	수출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이 제거되는 나라의 외국항으로서 목적지국에 소재할 필요는 없음
	수출허가번호, CFR Citation, KPC번호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법무부 DEA, 핵규제 위원회 등이 부여하는 허가번호, 승인번호, 주석
	수출규제분류번호 (ECCN)	상업규제리스트(CCL)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
	측정보조단위 (Secondary Unit of Measure)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Secondary Quantity와 일치하는 측정단위
	보조양 (Secondary Quantity)	측정보조단위와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자동차확인번호/제품번호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Product ID)	신고된 중고차에서 발견되는 확인번호
	Vehicle ID Qualifier	신고된 중고차번호의 유형을 구분하는 Qualifier
	자동차 등록번호 (Vehicle Title Number)	자동차등록청이 발급한 번호
	자동차등록증 주정부 코드 (Vehicle Title State Code)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는 주정부나 지역의 2-Character 우편번호
	수입번호(Entry Number)	
	운송참조번호(Transportation Reference Number)	해상운송을 위한 예약번호, 항공운송장 번호, 철도운송에 대한 BL 번호, 트럭운송을 위한 Freight or Pro Bill Number를 신고
	국무부 요건	DDTC 등록번호, DDTC 중요군수설비표시, DDTC 적격당사자

구분	종류	상세
	(Department of State Requirements)	증명표시, DDTC USML 유형코드, DDTC 측정단위, DDTC did, DDTC 면제번호, DDTC 수출허가라인번호
	캠벨리 프로세스 증명(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KPC) ³⁶⁾ 번호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KPC 협회에서 발행한 고유의 KPC 번호
선택적 정보	봉인번호(Seal Number)	설비나 컨테이너에 표시된 보안봉인번호
	설비번호(Equipment Number)	컨테이너 또는 이글루 번호와 같이 운송설비별 확인번호를 신고

자료 : 15 CFR 30.6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Data Elements

수출통관에 있어 수출자 및 운송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수출자는 수출신고 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³⁷⁾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주석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³⁸⁾ 수출자는 위의 증명자료를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항공운송장(Air Waybill), 수출선적지시서(Export Shipping Instruction) 또는 기타 상업적재서류(Commercial Loading Document)의 첫 페이지에 주석처리하고 수출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석 처리해야 한다.

이에 운송인도 운송인의 출항적하목록(Outbound Manifest)에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주석 처리해야 하며, 수출항에서 관세청 담당자에게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운송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제공받지 않으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운송인은 관세청이 위험도가 높은 물품으로 선별하여 통보한 화물의 검사를 위해 동 화물을 관세청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화물이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에는 관세청은 수출운송인에게 국제운송인담보(International Carrier Bond)조건에 따라 화물을 회송시켜 관세청에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6) 무기조달 자금원인 다이아몬드원석 거래차단을 위해 국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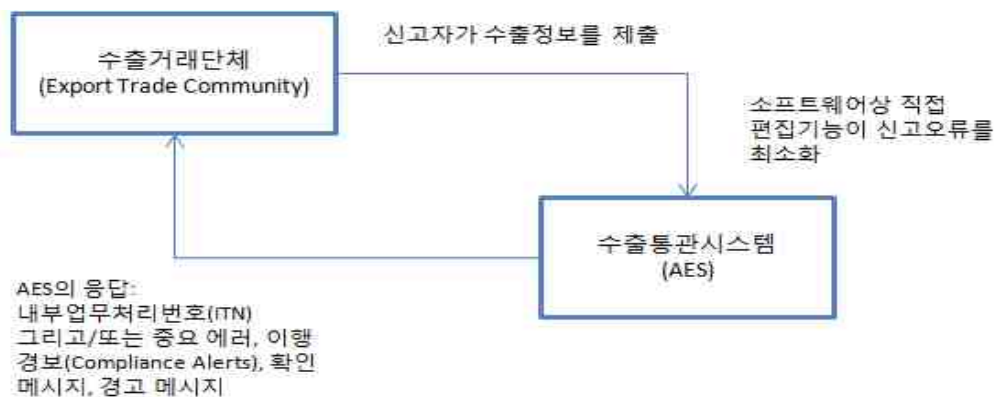
37)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35~30.40은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의 무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8)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7(b)

수출통관시스템의 이용방식은 AES Participation과 AES Direct로 구분된다.

AES Participation은 관세청 컴퓨터시스템과 접속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이나 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문제되었다.³⁹⁾ 이에 따라 통계청이 개발한 것이 무료 인터넷접속프로그램인 AES Direc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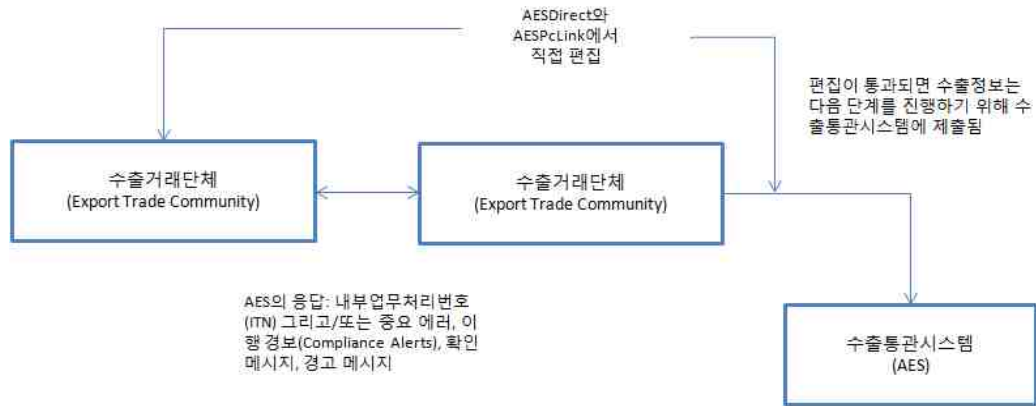
<그림 2-4> AES Process Flow



자료: U.S. Census of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p.21

39) <http://www.fcsn.gov/01papers/Woods.pdf>

<그림 2-5> AES Direct/AES Pclink Process Flow



자료: U.S. Census of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p. 21

수출통관시스템 이용방법은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제출, 접속방법 선택, 인증(Certification)의 3가지 절차를 거친다.⁴⁰⁾

첫번째 단계로서 의향서(LOI)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세청 및 통계청 성과요건과 운영기준에 대한 개발, 유지 및 준수하기로 하는 약속을 제시한다. 이때, 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AES Direct 사용자는 이미 등록과정에서 의향서 제출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두번째 단계로서 AES 접속방법에는 고유의 AES 프로그램 개발, AES 인증 소프트웨어 구입, 유료 AES service center 이용, 무료 AES Direct 이용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자료를 전송하고 AES에서 전송받는지 확인하는 접속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40) www.cbp.gov/xp/cgov/trade/automated/aes/easy_steps.xml

이처럼 미국의 수출통관절차는 선진화된 수출통관시스템(AES)을 통해 수출통관의 간소화와 수출물품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편집이 가능하고, 수출신고 즉시 오류가 감지되어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관련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전자적으로 집계된 수출선적자료를 통해 무역 통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¹⁾

5. 원산지조사

원산지 조사는 FTA 관세특례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다.⁴²⁾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의 목적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로 세수 확보, 부정경쟁 방지, 국내산업 보호 등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조사는 주로 서면조사가 많으며, 수입국에서 수출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하는 간접조사도 일부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검증대상은 미 세관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경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이다.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로 검증하는 사항은 불충분 공정, 직접운송의 원칙, 세번변경, 부가가치 산출, 수입관세 적용 등이 원산지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41) 정재호 외(2010),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42) 성운갑(2007), FTA 관세특례 해설

특히 NAFTA 발효 초기 미 관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는 FTA 발효에 따른 혜택이 큰 자동차 산업과 섬유 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CBP가 징수한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 조사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번째 단계는 선별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후 원산지 검증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자재명세서, 원산지 결정방법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세관 수입담당자가 직접 수출입자를 방문한다. 네번째 단계는 세관 수입담당자의 현지방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증팀이 구성되어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1~3단계는 일선 세관(port of entry)에서, 4단계는 9개의 본부 세관에서 담당하며, 검증팀은 검증대상 회사 규모에 따라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심사, 수입, 전산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다음 <표 2-13>에서 나타나듯이 서면검증은 60일, 현장실사는 2~3주 동안 이루어지며,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통보절차를 포함하여 미 세관의 검증절차는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3>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개요

단계	세부사항
목적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로 세수 확보, 부정경쟁 방지, 국내산업 보호 등
대상	위험분야로 집중 관리 중인 PTI 관련 산업 위주로 선정되며,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등이 해당함
방법	- 1단계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 2단계 자재명세서(BOM),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결정방법 제출 요구 - 3단계 수입담당자의 수출입자 현장방문

단계	세부사항
	- 4단계 검증팀에 의한 수출입 현장실사 ※ 1~3단계는 일선 세관(port of entry)에서, 4단계는 9개의 본부 세관에서 담당하며, 검증팀은 검증대상 회사 규모에 따라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심사, 수입, 전산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됨
목표	검증과정에서 불충분 공정, 직접운송의 원칙, 세번변경, 부가가치 산출, 수입관세 적용 등이 원산지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함
기간	서면 60일, 현장실사 2~3주, 종합심사 7개월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 세관이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에 답변해야 한다.

생산자나 수출자가 송부된 서면질의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 세관은 증빙서류 요청과 함께 서면질의서를 재송부하고 30일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일례로 NAFTA의 원산지 검증 서면질의서(CBP Form 446)는 생산과정,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추가적 질문, 보증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 재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가가치 산출방법, 공급자 리스트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다음은 NA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CBP Form 446)⁴³⁾의 내용이다.

- ① 생산과정 : 검증받을 제품 또는 재료의 생산과정에 대해 기재
- ②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 비원산지 재료 또는 부품 및 HS 코드 기재(HS 6단위 혹은 필요한 경우 HS 8단위)
- ③ 원산지 재료 및 부품 :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증명서, 진술서 등 증빙자료의 유형, 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 ④ 추가 질문 : 부품 및 재료의 세번분류, 미소기준 적용여부, 원산지 대체가능재료의 사용 여부 및 판정방법, 부가가치(RVC) 기준 및 산출방법, RVC 누적기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공급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 ⑤ 보증 :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보증하고 허위나 관련정보 누락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명하고 직위, 회사 이름, 연락처, 날짜 등을 기재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현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미 세관은 사전에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 세관 등에 현지방문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고 해당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을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수출자와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지방문조사에서는 회사관계자 인터뷰, 회계·구매·재고관리시스템 심사, 역내 부가가치(RVC) 등에 대한 질의서와 서류의 일치 여부, 공급자 확인서 등의 자료 보관 장소 확인, 재료 공급자에 대한 심사 수행 등 원산지 결정취약분야를 중심

43) 부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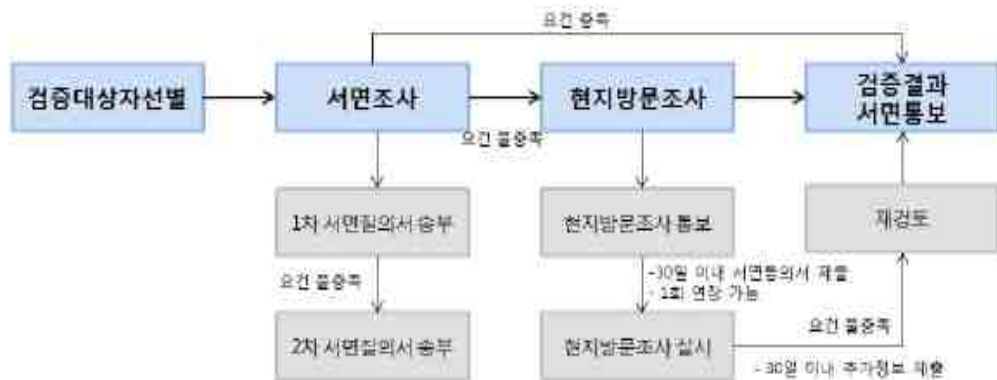
으로 집중검증을 실시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FTA인 NAFTA 체제하에서는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통일되고 일관된 원산지 검증절차의 적용을 위해 NAFTA 검증 매뉴얼(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을 작성하고 유사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NAFTA 검증 매뉴얼은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FTA의 표준으로 작용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 시 유사한 검증 매뉴얼로서 유용한 자료이다.

NAFTA 검증 매뉴얼은 각국의 검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지 방문조사에 중점을 두어 검증단계별 목표 및 절차, 권고하는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동 매뉴얼에 의하면, 미 세관은 검증 종료 후 60일 안에 검증대상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보하기 전에 검증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는 30일 안에 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새롭게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세관은 재검토 작업을 거쳐 검증결과에 대해 최종 서면통보를 한다.

다음 <그림 2-6>은 NAFTA 원산지 검증절차이다.⁴⁴⁾

<그림 2-6> NAFTA 원산지 검증절차



44) 조미진 외(2011),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한편, 검증에 관하여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의 관련 조항은 한-미 FTA 207 절(식물과 의류제품의 무역에 관한 시행)에서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협정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검증을 요구한다면 재무장관은 다음사항에 따른 식물 및 의류제품의 생산에 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의류 및 식물에 관한 협정하에서 원산지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미국에 위치한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기타 기업은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식물 또는 의류제품에 관한 무역에 관한 관세법, 규정, 절차를 따를 것임.

또한 한-미 FTA 협정문의 6.18조(검증)에서 원산지 조사에 관해 다루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FTA에서는 한-칠레, 한-EFTA, 한-EU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원산지 증명서식은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그 포맷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였으며, 대규모 분할 선적 물품에 대해서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1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미화 1000불 상당이하의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있다. 동사항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원산지검증제도는 직접검증제도를 채택한다.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원산지 현장방문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협정 서명 후 90일 이내에, 한-미 양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여타국과의 FTA에서 예외없이 동 방식을 도입하였으므로 앞의 NAFTA의 검증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원산지 조사결과 및 특혜관세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서류에 대한 기밀 제출 등 무역업자의 권익보호장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 협정문의 6.18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언급된 기록(제6.17조 제1항)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⁴⁵⁾*(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1항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신고나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유형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신고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사전결정(Advance Ruling)

미국은 수입자, 수출자, 제조업자 등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관세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 평가 등 세관의 관할업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입 전에 세관으로부터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정은 결정서신(Ruling Letter)으로 통보된다.

-
- 45)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함. 수출 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검증을 수행함. 수출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음.

동 결정은 세관의 법 해석 및 적용의견으로 모든 세관원을 구속한다. 따라서 동 결정은 수입 항구에서도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수입자에게 일정한 안전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사전결정은 일반적으로 결정 당일부터 유효하다. 이전에 수입 통관하였더라도 아직 청산을 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세관은 언제든지 법 해석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존의 사전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요청자의 재고(Reconsideration) 요청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다. 사전결정의 취소나 변경은 요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⁴⁶⁾

한편,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한-미 FTA 협정문 제7.10조 사전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인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이며 신청시기는 수입전에 이루어진다.

심사대상 항목은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쿼터나 관세율할당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납기연장, 관세감면 등에 관에 심사한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 회신 후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처리기한이다.

발급당사국은 사전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이 정보에 기초하였을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절차는 신청, 보정, 반려, 심사결과 통지, 심사결과 이의제기,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46) 코트라 무역관, 관세제도

① 신청 :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i) 신청인, 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함)
 - ii)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품목번호 및 가격
 - iii)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 품목번호, 가격 및 원산지
 - iv) 당해 물품의 제조과정(필요한 경우에 한함)
 - v)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vi)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
에 필요한 서류

② 보정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
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반려 :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심사결과 통지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심사의 신
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다만, 보정기간 산입하지 않음) 이
내에 이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⑤ 심사결과 이의제기 :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 가능하다.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사항에 관해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제3장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제1절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 ASEAN⁴⁷⁾의 FTA 추진현황과 통상 정책

가. ASEAN 개요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다.

ASEAN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여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1999년 10개 회원국을 이루었다. ASEAN은 총인구 약 5억 명, 총면적 약 450만킬로미터에 걸친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1980~90년대 연간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Emerging economies)로,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0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⁴⁸⁾

47)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으로 한정하여 조사함.

48) 외교통상부 외(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ASEAN의 연혁은 196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세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초기단계는 ASEAN이 설립된 1960년대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국제협력을 위한 첫 국제기구는 ASEAN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이 1961년에 설립한 ASA(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 필리핀-말레이시아 영유권 분쟁으로 ASA는 얼마가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1967년 5개국 외무장관 회동을 통해 ASEAN이 설립된 이후에야 동남아에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는 필리핀-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과 강대국들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회원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가로막는 이념적 갈등을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통한 지역안보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ASEAN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7년 태국 방콕에서의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비공식 외무장관 회동에서였다. 상기 5개국 장관들은 ‘Sport-Shirt Diplomacy’라고 불린 4일 동안의 동 비공식 회동을 통해서 역내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에 합의하였고, 동년 8월에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이라고 알려진 ASEAN 선언을 통해 ASEAN이 설립되었다. 이후 ASEAN은 나머지 5개국 국가의 순차적인 가입으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하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자리잡았다.

ASEAN은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및 정치적 중립을 통한 지역안보 획득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1967년 발표된 ASEAN선언(ASEAN Declaration)에도 “ASEAN은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사회발전(Social progress)·문화발전(Cultural development)과 UN헌장과 회원국

의 법질서 상호존중을 통한 역내 평화·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두번째로 1990년대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CLMV) 국가들의 ASEAN 가입, 즉 도약기로 요약된다.

1990년대 탈냉전 시대와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ASEAN도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1992년 싱가포르 선언으로 역내 경제협력 증진과 역내特惠관세 추진으로 지역 협력체로의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CLMV(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국가들의 ASEAN 가입과 ASEAN 설립 30주년인 1997년에 제정된 ASEAN Vision 2020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을 통한 인구 5억 명, GDP 6천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역을 바탕으로 향후 2020년까지 ASEAN 회원국들의 무역·투자·인력·과학·교통 등에 걸친 대통합을 통해 거대 경제권역을 이룩한다는 ASEAN의 향후 경제발전 전략이다.

세번째로 2000년대에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였다. 1976년 발리에서의 제1차 ASEAN 협력선언(Bali Concordi I)에 이어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제2차 ASEAN 협력선언(Bali Concordi II)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ASEAN 안보공동체 (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의 3개 ASEAN 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하는 향후 ASEAN 발전방향이다.

또한 2003년 AFTA(ASEAN Free Trade Area) 체제의 본격적인 발효를 시작으로 ASEAN 역내 경제통합과 AFTA+, ASEAN+1, ASEAN+3 등의 형태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협력구도에서 점차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나. ASEAN의 공동 관세 제도

ASEAN은 경제통합의 정도는 역내 간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EU와 같이 관세장벽의 철폐나 화폐 통합 등의 경제 공동체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FTA에 대해서도 공동통상정책, 공동관세법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여타의 FTA와 마찬가지로 공동특혜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초는 1991년 개최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로 회원국들이 자유무역 지대 촉진 수단으로서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공동유효 특혜관세제도)를 제시되었다.

CEPT는 1993년 AFTA의 정식발효와 함께 시행된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로 ASEAN 역내 국가 간 적용되는 특혜관세제도이다.

모든 회원국들은 2002년까지 관세를 0%~5%까지 인하(베트남은 2006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캄보디아는 2010년)하고 2008년에는 실질적으로 역내국가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CEPT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예정된 품목은 신속관세인하품목(Fast Track)과 정상관세인하품목(Normal Track)으로 분류된다.

신속관세인하품목에는 전자전기, 섬유, 시멘트, 보석, 목재 가구, 천연고무, 가죽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등 15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가 20%이상 품목은 2000년까지, 20% 이하는 1998년 1월까지 5%이하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CEPT에 따른 관세인하적용품목(Inclusion List : IL)은 공산품과 가공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조품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잠정적 제외 품목, 민감농산품목, 일반제외대상 등 예외 사항이 있다.

다. ASEAN의 FTA 추진 전략

ASEAN의 FTA 추진 전략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ASEAN은 1992년 1월 역내 FTA 발효를 시작으로 주변국과의 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ASEAN은 교역비중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의 FTA를 발효하면서 역내 FTA에서 역외 FTA로의 확대를 시작하고 있다.

ASEAN은 중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FTA를 완료하면서 FTA 해당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SEAN은 ASEAN-인도 FTA와 중-ASEAN FTA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ASEAN과 중국은 상품무역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서비스무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협정을 발효하였고, FTA를 완료하기 위해서 투자협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2009년 8월 13일 ASEAN 경제장관과 인도의 상공부 장관은 ASEAN-인도 상품무역협정과 FTA 관련 기타 협정에 서명하였다.

ASEAN은 ASEAN과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공동 연구 및 추진 고려 대상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ASEAN과의 교역량을 볼 때, ASEAN은 미국과의 FTA 추진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NAFTA의 영향으로 ASEAN과의 FTA에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ASEAN 회원국이 개별국 자격으로 역외국가와의 FTA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ASEAN 10개 회원국 중, 7개국이 일본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협상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미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FTA 협상도 추진된 예가 있다.⁴⁹⁾

49) 김한성 외 4인(2010),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표 3-1> ASEAN FTA추진 현황

서명완료 및 발효	
ASEAN 역내(AFTA) (발효 1992년 1월)	한 국
일 본(발효 2008년 12월)	상품발효 2007년 6월, 서비스발효(2009년 5월)
호 주(발효 2010년 1월)	투자발효(2009년 9월)
뉴질랜드(발효 2010년 1월)	중 국(상품발효 2005년 1월)
	서비스발효(2007년 7월)
	투자서명(2009년 10월)
	인 도(상품서명 2009년 8월)

제2절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 체계

ASEAN 4개국의 FTA이행과 관련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해 유관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ASEAN 각국에서는 특례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ASEAN 4개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법, FTA 이행 관련 제도,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조사(검증) 및 통관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1. 베트남

가. 관세제도

1) 관세법 개요

베트남 관세법은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국제 협력 및 교류의 발전 및 국가의 주권, 국가안보 및 개인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1992)에 의거하여 규정되었다.

다음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관세법⁵⁰⁾은 총 8장, 8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세관의 임무 및 조직을 제3장에서는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의 예방 방지에 관한 세관의 책임 등, 제5장에서는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는 관세 행정 관련 국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에서는 상훈 및 위반처리 등을 다루고 있다.

동 관세법에서는 관세 행정의 범위와 업무에 대한 부문을 담고 있다. 베트남의 적용 관세율 등 구체적인 관세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된다.

50) 제42/2005/QH11호, 2005. 6. 14

<표 3-2> 베트남 관세법

장	조
1장 총칙	1~10
2장 세관의 임무 및 조직	11~14
3장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	1목 총칙: 15~27 2목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및 세관 감시: 28~45 3목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내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46~49 4목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및 세관 감시 :50~56 5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일시중단 :57~59 6목 우대,면제 제도 :60~62
4장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의 예방방지에 관한 세관의 책임	63~67
5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68~72
6장 관세관련 국가관리	73~77
7장 상훈 및 위반처리	78~79
8장 시행조항	80~82

2) 관세제도의 시행 현황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동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다.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등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를 개편하였다.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ASEAN 자유무역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관세율 종류에는 Ordinary Import Tax Rate(일반 관세율),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혜 관세율),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별 특혜 관세율) 등 세 가지가 있다. 각각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Ordinary Import Tax Rate(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②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 국가 포함)

③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별 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로 현재 ASEAN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 실효 특혜 관세(CEPT), 한-ASEAN 자유무역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 및 중-ASEAN 자유무역 (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가 이에 해당

다음으로 특혜(MFN)관세율 적용대상 국가(163개국⁵¹⁾)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그 해당 국가이다.

한편,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의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87년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개방 정책을 단행하였다. 경제 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되었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에 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수입 관세를 0~5%까지 인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5년간 관세를 인하한 실적은 미미하였으나, 2003년도에 그 동안 고율(30~100%)의 관세를 부과하였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매년 발간되는 OFFICIAL GAZETTE과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⁵²⁾

51)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불가리아, 칠레, 쿠바, 체코, 에콰도리알,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말타,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페루, 북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아,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국, 일본 등 163개국

52)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베트남어로 운영됨.

나. FTA 관련 이행관련 제도

베트남은 한-ASEAN FTA와 관련하여 베트남 재정부에서 관세율을 변경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ASEAN FTA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특혜 수입 관세율을 규정한 것이다.⁵³⁾ 베트남은 기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특혜 관세율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한-ASEAN FTA를 이행하고 있다. 그 밖의 한-ASEAN FTA 이행과 관련된 부문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등을 관련 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

다. 원산지 증명

1)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⁵⁴⁾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은 각각의 FTA에 대하여 베트남 상공부가 발표하는 절차를 취한다. 한-ASEAN FTA의 경우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협의 하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특혜원산지 대우를 위한 AK양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발급규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일반조항, 2장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절차, 3장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장은 원산지 증명서 관련 위반시 분쟁해결 처리방안, 5장은 이행에 관한 부분이다.

53) 부표 6 참조

54) 원문 부표 참조

<표 3-3>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장	조	
1장 일반조항	1조 정의	1~5
	2조 인정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3조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의 책임	1~7
	4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책임	1~9
2장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절차 (Form AK)	5조 기업 파일의 등록	1~3
	6조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	1~4
	7조 원산지 증명서 AK 신청서의 서류를 적용하는 것	
	8조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생 기간	1~3
	9조 원산지 증명서의 늦은 발행	
	10조 원산지 증명서의 재발행	
	11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의 부인	1~2
	12조 기타 문제	
3장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행의 관리	13조 보관	
	14조 원산지 증명서 AK에 서명하는 당국	1~3
	15조 연락처	1~3
	16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보고에 대한 갱신	1~2
	17조 원산지 증명서의 편집	1~2
	18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	
4장 위반시 분쟁해결 처리방안	19조 분쟁 해결 위원회	
	20조 위반시 처리방안	
	21조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발행의 폐기	1~2
5장 이행	22조 이행	

제1장에서는 정의, 원산지 증명서의 요건,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ASEAN FTA 협정에 대한 사항, 이에 따른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제도가 실시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원산지 발행당국은 베트남 무역부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당국이 eCOsyst network이라는 베트남의 원산지 증명서 관리 및

발행에 관한 시스템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베트남은 동 전산 시스템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가 일괄 관리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에 ①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서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명견본 등록양식 및 사업자용 직인, ②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③ 세금코드 등록신청서, ④ 업자의 생산공장 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에는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Form AK 신청서), 원본과 두 개의 카본 복사본을 포함한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세트,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상업 송장, 선하증권 등 이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수입재료의 수출신고서, 수출 허가증, 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국내재료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 수출품 및 재료의 샘플 및 기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⁵⁵⁾의 발행의 경우, 신청서,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및 공증본,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전환 선불된 세관 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원산지 증명서 관련 부대서류인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상업 송장, 선하증권, 전환 선불된 세관 신고서와 복사본에는 “certified true copy”와 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 또는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원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동봉되어야 한다.

55)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함.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생 기간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내로 제한된다. 만일 서류검사로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전에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생산 공장에 관한 무작위 소급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비자발적 실수, 누락이 발생하여 수출시 발행되지 못한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는 “ISSUED RETROACTIVELY”의 문구를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파괴, 분실 등의 경우에 생산자/수출자는 발행 재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원본과 부분을 발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공란 12에는 “CERTIFIED TRUE COPY”로 배서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연락 사항,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보고에 대한 갱신, 원산지 증명서의 편집에 관한 사항, 발행비용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4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은 원산지 증명발행기관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고발 및 고소법에 따라 행정적인 소송 또는 무역부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밖에 원산지 증명서 관련 허위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위반시 처리방안과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의 폐기에 대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 동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문을 담고 있다.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1장 일반 조항

1조 정의

1.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의(여기서는 “AKFTA 협정” 으로 명시함)에 관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프에서 2006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2.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Form AK(여기서는 원산지 증명서 Form AK로 명시함)는 원산지 증명서 Form AK를 발행하는 당국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이다.
3. 원산지 증명서 AK 발행 당국(여기서는 “C/O IAs” 로 명시함)은 AKFTA협약하에서 특혜 무역 대우를 위한 베트남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Form AK를 발행하기 위해 무역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4.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신청자(여기서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로 명시함)은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을 포함한다.
5. eCOsyst network은 베트남의 전자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관리 및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⁵⁶⁾

2조 인정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재무부에 의해 규정된 AKFTA 협약의 특혜 관세 대우 하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조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의 책임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는 다음의 책임이 따른다.

1. 원산지 증명 신청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원산지 증명 신청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합당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련서류,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류,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서류의 진위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eCOsys network으로 파일을 제출할 경우 전자 원산지 증명서 파일의 모든 서류의 정확성 및 진위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6.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AKFTA하에서 수입국가로부터 특혜 원산지 대우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한 원산지 증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보관해야 한다.

4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의 책임을 따른다.

1.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한다.
2.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검토한다.
3. 필요한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4. 2조의 규정사항을 따른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5. 원산지 증명서 서류를 보관한다.
6. 무역부(수입-수출부)로 AKFTA 양식에 공인된 서명을 한 견본 서명을 보내고 무역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발급기관에서 공인된 봉인을 한다.
7. 사법권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8. 원산지 검사와 원산지 결정에 관한 서류와 기밀문서를 보관한다.
9. 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사항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한다.

2장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절차(Form AK)

5조 기업 파일의 등록

1. 신청인이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서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명견본 등록양식 및 사업자용 직인⁵⁷⁾
 - 사업 등록증 신청서(인증된 원본 서류로 “certified true copy”문구를 포함하는 것)
 - 세금 코드 등록 신청서(인증된 원본 서류로 “certified true copy”문구를 포함하는 것)
 - 사업자의 생산공장 명단⁵⁸⁾
2. 원산지 증명서 발행시 필수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관련 서류(entrepreneur file)의 모든 변화를 알려야 함. 변경이 없을 시에도 격년마다 해당서류를 갱신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은 관련서류의 등록을 위해 해당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6조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

1.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신청서⁵⁹⁾
- 원본과 두 개의 카본 복사본을 포함한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세트
-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Pre-paid Customs declaration)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2.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수입재료의 수출신고서, 수출 허가증, 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국내재료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 수출품 및 재료의 샘플 및 기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의 경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다.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및 공증본
-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 전환 선불된 세관 신고서(Transition pre-paid Customs declaration)
- 상업송장
- 선하증권

4. 1항의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Pre-paid Customs declaration), 상업 송장, 선하증권과 2항의 서류, 3항의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전환 선불된 세관 신고서(Transition pre-paid Customs declaration), 상업송장, 선하증권의 복사본에는 “certified true copy”와 기관의 권한있는 책임자 또는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원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동봉되어야 한다.

7조 원산지 증명서 AK 신청서의 서류를 적용하는 것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 수령인은 관련서류를 수락하는 책임을 가짐. 원산지 증명서 수령인은 모든 요구사항을 서면, 수령증을 만들어 보고해야 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6조 2항에 나타난 추가적인 서류에 관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에서 요구한다면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 마감기간은 9조에 나타난 대로 수행해야 한다.

8조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생 기간

1.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날로부터 3일내
2. 만일 서류검사로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전에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생산 공장에 관한 무작위 소급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원산지 조사의 결과는 기록될 것이며 신청자와 조사자는 기록에 서명해야 함. 신청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 검사자는 명백한 이유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후에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신청서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령한 날로부터 적어도 5일 이내에 승인될 것이다.

3. 모든 경우에, 수출자의 지불 또는 상품의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과정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9조 원산지 증명서의 늦은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비자발적 실수, 누락이 발생하여 수출시 발행되지 못한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는 “ISSUED RETROACTIVELY”의 문구를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10조 원산지 증명서의 재발행

원산지증명서의 파괴, 분실 등의 경우에 생산자/수출자는 발행 재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원본과 부본을 발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공란 12에는 “CERTIFIED TRUE COPY”로 배서되어야 한다.

11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의 부인

1.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5조에 관한 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증명서 서류가 6조에 따라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경우
 - 서류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 관련 서류가 등록된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서류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 원산지 증명서가 수기로 작성되었거나 지워졌거나, 읽을 수 없거나 다른 잉크 색으로 프린트 된 경우
 -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경우

- 상품이 한-ASEAN FTA하에서 비원산지 물품이 법적으로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무효화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명확하게 근거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무효화된 날로부터 3일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2조 기타 문제

5조에서 11조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 사항들은 부속서에서 명시될 것이다.

3장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행의 관리

13조 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수출자, 신청인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한날로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특수한 경우에 수출자와 신청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복사본은 참조로만 사용한다.

14조 원산지 증명서 AK에 서명하는 당국

1. 무역부가 지정한 개인만이 서명건본과 직인을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하여 권한을 부여한 무역부에 의해 ASEAN Secretariat에 제출한다.

2. 개개인에 의해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가 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세당국의 수출부의 특혜관세 대우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무역부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해 유예할 수 있다.

15조 연락처

수입-수출부는 아래에 이행을 위해 연락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법적으로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검사 및 설명이 필요하다.
2. 베트남의 서명 견본 및 원산지 증명서의 봉인에 관한 등록절차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한 후, ASEAN Secretariat에 제출할 수 있다.
3. 무역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이행규정에 관한 문제 사항을 다룰 수 있다.

16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보고에 대한 갱신

1.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무역부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해 무역부에 매일 보고하며 보고는 무역부에 의해 규정된다.
2. 무역부는 보고서의 수령이 없는 경우, 첫 번째는 보고를 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5일후에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다음날로부터 5일안에 보고해야 한다. 수령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5일후에 더 이상 보고가 없을 시에는 무역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해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본 사항은 무역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다.

17조 원산지 증명서의 편집

1. 장관은 수입 및 수출부와 협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인쇄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 주어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팔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18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원산지 증명 발행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이다. 재무부는 이행 기간과 비용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4장 위반 시 분쟁해결 처리방안

19조 분쟁 해결 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인 원산지 증명발행기관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고발 및 고소법에 따라 행정적인 소송 또는 무역부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20조 위반 시 처리방안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모든 허위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21조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발행의 폐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어떤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를 폐기할 수 있다.

1.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발행된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 전에 이러한 사항을 검사하여 블랙리스트란에 신청인을 기재할 것이다.)
2. 원산지 증명서가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장 이행

22조 이행

이행과정에서 만약 문제 사항이 발생한다면 해결을 위해 무역부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는 총 1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http://ecosys.mot.gov.vn>

57) 부표 3 참조

58) 부표 3 참조

59) 부표 1 참조

① 사업 세금 번호

②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의 주소

③ 발행 유형

- 첫 번째 발행, 두 번째 발행, 3자 발행, 수출용 제품, Back to Back 원산지 증명서, 재송부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여부 등

④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완성된 원산지 증명서, 수출품 세관 신고서, 수입 원재료 세관 신고서, 수출 허가증, 무역 계약서, 국내재료의 가격을 보여주는 송장, 선하증권, 부가가치 계산 명세서, 미소기준 계산 명세서, 기타 서류

⑤ 수출자명(베트남어)

- 영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⑥ 수입자/구매자명(베트남어)

- 영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⑦ 상품명

- 베트남어 및 영어

⑧ HS 코드(8자리)

⑨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⑩ 수량

⑪ 가격

⑫ 송장번호, 날짜

⑬ 수입국

⑭ 선하증권 번호, 날짜

⑮ 기타 정보

⑯ 원산지 증명서 발행 당국 주석

- 발행일, 감독관, Data entry agent, 권한 있는 서명인, 지급인, 직인 필요사항

⑰ 날짜 및 장소

라. 통관제도

1) 통관절차에 관한 법령

베트남 법령 제194호 시행규칙 (194/2010/TT-BTC, 2010. 12. 6) 통관절차, 세관 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225)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은 다음 <표 3-4>와 같이 베트남 법령 제 194호 시행규칙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66개의 조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부에서는 총칙을, 2부에서는 상업적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3부에서는 비상업적 수출, 수입 물품에 관한 통관절차, 5부에서는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기타 세금관리에 관한 규정, 6부에서는 통관 후 검사, 세무감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3-4> 베트남 법령 제194호 시행규칙 (194/2010/TT-BTC, 2010. 12. 6)

부	장	목	조
제1부 총칙			1~5
제2부 상업적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 검사, 세관감시 및 세금 관리	1장 통관절차, 세금관리에 관한 총칙		6~29
	2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관한 기타 안내	1~3	30~57
	3장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및 국내 수출, 수입 물품 검사장소 설치 절차; 보세창고 설치, 이전, 확장, 축소 절차	1~3	58~68
제3부 비상업적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69~73

부	장	목	조
	4장 출경, 입경, 국경통과, 항구변경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1~6	74~91
제5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기타 세금관리에 관한 규정		1~8	92~138
제6부 통관 후 검사, 세무감사	1장 통관 후 검사, 세무감사에 관한 일반안내		139~148
	2장 상세 안내	1~3	149~164
제7부 시행조직			165~166

본 시행규칙 중 2부 상업적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통관을 규정하는 사항이다. 2부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조에서 68조에서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

<표 3-5> 베트남 법령 제194호 시행규칙 2부

부	장	목	조
제2부 상업적 수출, 수입물품 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 검사, 세관감시 및 세금관리	1장 통관절차, 세금관리에 관한 총칙		6~29
	2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 차에 관한 기타 안내	1목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료, 물자 수입유형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에 대한 통관절차	30~36
		2목 일시수입-재수 출, 국경관문 변경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37~38
		3목 기타 경우에 대 한 통관절차	39~57
	3장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및 국내 수출, 수입 물품 검사장소 설치절차; 보세창고 설치, 이전, 확장, 축소 절차	1목 국내항 통관절차 장소,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 소 설치 절차	58~61
		2목 국내 수출, 수입 물품 실물검사장 소 설치절차	62~64
		3목 보세창고 설치, 이전, 확장 및 축소 절차	65~68

제2부의 6조에서는 상업적 수출물품,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12가지 항목의 물품이 해당된다.

- ① 물품 매매계약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 ② 일시수입-재수출 방식에 따른 물품
- ③ 국경관문 변경 물품
- ④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료수입 유형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 ⑤ 외국상인과의 임가공계약 이행을 위한 수출, 수입 물품
- ⑥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수출, 수입 물품
- ⑦ 인접국가와 국경무역활동관리에 관한 정부수상 규정에 따른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 ⑧ 상인이 아닌 법인, 개인의 상업목적 수출, 수입 물품
- ⑨ 수출가공업체의 수출, 수입 물품
- ⑩ 세금징수유예 창고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
- ⑪ 전시회, 박람회 참여를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물품
- ⑫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되어 건설공정,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기
계설비, 운송수단, 임대, 임차되는 재산

7조에서는 수출, 수입 물품의 사전분류틀, 8조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⁶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사전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산지 사전확인서는 발급된 후 1년간 유효하며, 원산지 사전확인서 신청본인이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제조업자, 수출업자의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다음으로 관세기관은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서가 유효한 기간동안 증명서를 재검토 또는 무효화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⁶¹⁾ 원산지 사전

60) 제19/2006/ND-CP 호 정부시행령(2006. 2. 20) 제14조 근거

61) a) 관련 법률규범 문건이 수정, 보완된 경우

b) 물품원산지증명 평가요소가 변경된 경우

c)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와 실제 물품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d)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자가 왜곡, 위조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확인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물품원산지 평가요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원산지 사전확인을 실시한 관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류는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며,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별우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은 해당 협정이행을 위한 원산지증명 규칙에 따른다.

또한 수수료의 징수와 납부는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자가 원산지 사전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세기관은 원산지 사전확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당 정보는 기밀로 세관에 보관되며,⁶²⁾물품의 원산지 사전확인서는 통관절차에 유효하며, 특별우대세율 수혜에는 효력이 없다.

9조는 세관 신고전 육안 확인에 관한 조항⁶³⁾이며, 10조는 세관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관신고 (통관절차 시 납세신고를 포함)는 세관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행되며, 상이한 유형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또는 동일한 유형이나 세금 납부 기한이 상이한 경우, 동일한 유형별 또는 동일한 납부시점별 각각 다른 세관신고서로 신고한다. 다만, 한 수입물품의 수출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득세의 납부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한 세관신고서에 신고한다.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한날 이전 또는 30일 이내에 세관신고되어야 한다. 국경관문에 물품이 도착한 일자⁶⁴⁾는 입경운송수단⁶⁴⁾ 서류에 포함된 적하목록⁶⁵⁾에 날인된 관세기관의 관인에 기재된 일자 또는 국경관문을 통과한 운송수단 신고서 또는 운송수단 감시일지에 기재된 일자이다.

e) 동일한 품목, 동일한 제조자의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62) 제19/2006/ND-CP호 정부시행령 제16조에 근거

63) 관세청법 제23조 제1항 제b호에 규정

64) 선박, 항공기, 열차

65) 개략적하목록

11조에서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에 관한 통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수출물품의 통관절차시,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증명서류를 포함한 통관서류를 관세기관에 제출, 제시한다.

- ① 세관신고서(원본 2 부 제출)
- ② 수출세가 있는 수출물품, 정산이 필요한 수출물품, 수출계약과 관련된 시점이 규정된 물품의 물품 매매계약서 (서면 작성된 또는 서면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전보, 팩스문서, 텔렉스, 데이터 메시지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 제출

다만, 물품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베트남어 또는 영어 문서이어야 한다. 기타 언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신고인은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번역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세관신고인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시,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증명서류를 포함한 통관서류를 관세기관에 제출, 제시한다.

- ① 세관신고서(원본 2부 제출)
- ② 물품 매매계약서 (서면 또는 서면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전보, 팩스문서, 텔렉스, 데이터 메시지방식으로 작성된): 사본 1부 제출 (이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11항에 명시된 물품 제외); 위탁수입계약서 (위탁수입의 경우): 사본 1부 제출

다만, 물품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타 언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신고인은 베트남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번역내용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있다.

③ 상업송품장: 원본 1부 제출

④ 운송장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동등한 가치가 있는 기타 운송증명서 (이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서 명시된 물품 및 보세구역과 국내간 매매되는 물품 제외): 사본 1부 제출

운송장이 없는 국제우편을 통한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에 우편물, 우편소포 코드를 기재하거나 우체국이 작성한 우편물, 우편소포 목록을 제출한다.

석유가스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수입물품이 용역선박(상업선박이 아닌)을 통해 운반되는 경우, 운송장은 적하목록(cargo manifest)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경우에 따라 세관신고인은 아래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제출, 제시해야 한다.

12조에서 13조까지는 세관신고서의 수정 및 교체에 관해, 14조는 통관절차 과정에서의 세관검사, 15조는 수입물품 견본추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16조는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에 관한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납세에 관한 조항이다. 또한 29조에서는 통관후 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2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관한 기타 안내는 총 3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목의 30조에서 36조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7조에서는 일시수입-재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시수입-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상업적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다만 이 형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시수입-재수출 물품은 국경관문에서만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통관절차가 완료된 재수출 물품은 물품이 수출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에 국경관문을 통해 수출되어야 한다.

전량을 수출하지 못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고 국제 물품매매활동 및 외국과 물품매매, 임가공, 국경통과 대리 활동에 관한 무역법을 상세히 규정한 제 12/2006/NĐ-CP호 정부시행령(2006.1.23) 제12조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보관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국경관문 세관지국 관리자는 이 후 전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기한연장을 검토한다.

2부의 마지막 장인 3장에서는 국경관문 외 통관절차 장소 및 국내 수출, 수입 물품 검사장소 설치절차; 보세창고 설치, 이전, 확장, 축소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목 국내 수출, 수입 물품 실물검사장소 설치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통관 절차 흐름도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수입 신고/심사 물품 검사 관세 납부 물품 반입) 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물품검사와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한편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된다.

또한,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 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베트남 관세법 30조)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사항이 있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의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주요 무역항으로는 ⁶⁶⁾ Saigon New Port, Saigon Port, Ben Nghe Port, Tan Thuan Dong Port, Vegetable Port, Haiphong Port, Cai Lan Port 등이 있다.

마. 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

베트남에는 품목분류 사전확인 절차가 있다. 세관신고인은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세기관으로부터 세관신고, 품목분류, 세율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감시 하에 물품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거나 견본을 추출할 수 있으며, 관세기관에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에 대한 안내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견본,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부가 시장안정 및 생산 활동을 보호하는 세율적용 안내문건을 발행한다.

품목분류 사전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조건으로는 수출입물품 목록·세율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 기술 장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설명서, 재료, 사진, 제품형태, 기타 자료에 근거해서 분류가 가능한 물품, 관세총국에 의

66) Vietnam Seaports Association (VPA) - www.vpa.org.vn

해 기 결정된 적이 없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상세설명 첨부), 기술자료, 사진, 카탈로그, 물품견본(있는 경우에 한함)이 필요하다. 이 때 사용언어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한다.

심사절차는 분류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서류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이때는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이내이다. 마지막 단계로 결정서가 송부되며, 서류보완일로부터 30근무일이내 해당된다. 결정서 사용기한은 만 365일이며, 관련법령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또한, 물품에 대한 분석·분류는 필요할 경우 통관중, 통관 후에도 실시가 가능하다.⁶⁷⁾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있다. 본 제도는 관세법 제 86조에 의한 제도로써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HS번호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확정받는 제도이다. 신청인은 수출입 신고인 및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법인이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단, 자료보완기간은 제외됨)이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⁶⁸⁾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에 서류 및 견본을 첨부한다. 해당 서류는 <표 3-6>과 같다.

다음 단계는 신청대상 물품이 분석을 요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한다.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는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한다.⁶⁹⁾

67)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2011), 베트남 수출입통관 및 FTA활용 가이드

68) 부표 10 참조

69) 인터넷 접수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검색명: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또는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표 3-6>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구분	내역
공통	① 신청대상물품 견본 - 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시 소매포장 상태의 것 2점 - 벌크상 농산물 등 : 분말은 약 300g, 액상은 약 300ml - 기계류 : 수출입시 소매포장 상태의 것 1점. 다만, 가격·부파·중량이 커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2부와 사진2매 및 카탈로그 제출 ②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2부 ③ 제조회사의 성분 함량표 및 제조 공정도 각 2부 -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요소(기기)의 명칭과 기능 및 작동원리 설명서 2부, Block-diagram 2부. ④ 해당 물품의 구체적 용도설명서 2부.
개별	분석을 요하는 물품: 1품목당 3만원 수수료

2. 태국

태국은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진출을 하는데 있어 전략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등 6개국은 2003년부터 ASEAN 자유무역 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구축, 인구 5억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국가 간에는 역내 무역의 경우에는 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태국은 ASEAN 10개국의 중심국으로서 ASEAN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인접국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교역이 원활치 않아 이들 국가로의 우회수출 기지로서도 태국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교역에 있어서 태국은 한국과 보완적 교역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태국은 조립 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공산품을 인근 ASEAN 국가, 미국, 일본,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 원부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국의 주요 공산품 수출품은 컴퓨터, 가전제품, 섬유류, 신발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 원료 및 반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국에 전자 부품, 화학 원료, 철강, 직물 등 공산품 원료 및 반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천연고무, 타피오카, 목제품 등 1차 생산품과 전자 및 기계 부품 등 노동 집약적 제품 등이 주종을 점유하고 있다.

태국이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여 1996년 최고액을 기록하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39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태국이 1997년, 우리나라가 1998년에 각각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교역량은 1996년의 58% 수준인 21억달러로 격감하였다. 이 후 교역량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6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국의 대 태국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에는 45.2억 달러를 수출하여 2008년 대비 21.6%의 감소를 보였다.

2010년은 전 세계 경기회복에 힘입은 태국의 수입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 태국 수출은 64억달러로서 전년 동기대비 42.7%가 증가했다. 한국의 대 태국 수입은 2010년 기준 41억달러로서 2009년 대비 28.7%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0년 무역수지는 22.9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2011년 1-7월 기간 중 한국의 대 태국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3%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은 33억 달러로 37.2% 증가했다.

한국의 대 태국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철강제품의 수출이 2010년 12.7억 달러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45.6% 증가했다. 철강제품에 이어서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기계류, 비료가 대 태국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 관세 제도

1) 관세법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CUSTOMS LAW B.E.2469”가 있으며, 동법은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어 왔다.

태국은 CUSTOMS LAW B.E.2469이외 관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으로 Royal Decrees, Ministerial Regulations, Notification 등을 두고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으로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현재 적용되는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는데, 이는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조화된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CUSTOMS LAW B.E.2469"가 있으며, 동법이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었다. 본 법은 관세법(No. 20), B. E. 2548(2005)에 의해 개정되었다.

다음 <표 3-7>에서처럼 태국 관세법⁷⁰⁾은 총 15장, 12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5장에서는 수입을 6장에서는 수출을 15장에서는 총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태국의 관세법 내에서는 FTA 이행 등 원산지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3-7> 태국 관세법

장	절
1장	1~2
1장 BIS 관세 법규 결정 위원회	2 bis~2 octo
2장 항구의 지정과 관리	3~9
3장 세금의 납부	10~13
4장 밀수의 방지와 상품의 조사	14~37
5장 BIS 관세가 미치는 범위 및 권한	37bis~37quinque
4장 TER 합작개발지역에서의 관세의 권한	37six~37quindecim
5장 수입	38~44
6장 수출	45~60
7장 Overtime Goods	61~63bis

70) CUSTOMS ACT, B.E. 2469 (1926)

장	절
8장 연안무역	64~71
9장 외부의 정박지	72~86
10장 보세창고	87~97bis
10장 BIS 관세자유지역	97ter~97 decem
11장 연대와 보안	98
12장 허위 신고	99
13장 법적인 절차	100~105
14장 대리기관	106~109
15장 총칙	110~122

2) 관세 제도 시행 현황

태국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사업체에 의해 수입된 상품의 대부분은 0퍼센트에서 80퍼센트 비율의 관세 대상이 된다.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치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P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치,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입 관세를 결정하는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분류한 품목 분류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의 곱으로 결정된다.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적용 되는 품목일 경우 고세율을 우선 적용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관세 평가 방법의 평가 기준에는 신고가격, 평균시장 가격, 최저수입 가격, 추정과세 가격이 등이 이용된다.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 가격

- 관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CIF 수입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의 방법에 의해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

② 평균 시장 가격

- 관세청이 초안하여 ROYAL ORDINANCE OF THE DEPARTMENT 형태로 고시되며, 주로 원목, 가공 목재와 같은 일부 수입 품목 그리고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 평균 시장 가격을 산출하는 담당 부서는 관세청 VALUATION DIV. 이며, 매 3개월마다 평균 시장 가격을 고시한다. 평균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은 3개월간 총 수입된 양을 총 수입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최저 수입 가격

- 관세청은 철판, 화학제품 등 몇몇 품목에 대하여 최저 수입 가격을 NOTIFICATIONS OF THE VALUATION DIVISION 형태로 매월 말에 고시되며, 한 달간 유효하다.
- 관세청의 고시에는 품목, 최저 가격, 원산지 등이 표기되며, 한 달 동안의 평균 수입 가격 및 최고 수입 가격을 기초로 산출된다.

④ 추정 과세 가격

-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 중 상기 평균 시장 가격이나 최저 수입 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ROYAL ORDINANCE나 NOTIFICATION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국의 추정 가격으로 관세를 평가한다.
- 또한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을 최근 3개월 내에 태국에 수입된 동일 브랜드, 동일 모델, 동일 규격, 같은 원산지의 최고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수입 물품 중 원자재인 경우, 최근 한달 내에 최고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관세확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과세 기준을 3개월마다 공고하며, 이에 따라 관세를 확정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세청내 FORMALITIES AND ASSESSMENT DIVISION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입 물품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오류의 책임, 일례로 HS CODE, 관세율, 수입가액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세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관세평가 시기는 수입업자가 물품세, 부가세 등을 포함, 일반 선적 서류와 함께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특히, HS CODE, 수입 관세(환율 및 시장가액에 따른 물품 가액 등)를 검토한 후 관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수입 관세 납부를 위해 서류를 경리부로 이송하고 부적절한 경우 기탁금 납부를 명령한다.

이 때 수입자는 관세청으로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탁금을 납부하고, 수입 물품을 세관 창고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탁금은 수입 관세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그리고 수입자가 관세청에서 결정한 과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세청 내 VALUATION DIV에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신청된 이의 신청은 특별전문가로 구성되는 관세 위원회에 이송되며, 관세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관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에서 수입 관세가 공제된 잔여액을 반환 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자의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세국의 기준에 따른 관세 평가가 실시된다.

과세 환율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관세청 “VALUATION DIV“은 매월 수입 물품 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을 고시한다. 기준 환율은 매월 28~29일경 발표되어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유효하다. 기타 기준 환율 및 관세율은 선박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박이 도착한 이후의 여 하한 개정 또는 수정은 기 도착한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특혜관세율, WTO 협정세율로 구성된다. 기본 관세율은 태국과의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다음으로 태국의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은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 협정 등에 의해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태국은 ASEAN 10개국 및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과는 2009년 2월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 되었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는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율 적용 순서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와 태국 간에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회원국 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태국에서는 수출관세, 수출장려 제도 등 수출과 관련된 여러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관세는 쌀을 포함한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주요 대상은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 태국의 주요 원자재 생산 물품이다.

태국의 관세와 관련한 수출 장려제도로 관세 환급제도, 수출특권제도, 관세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조항은 관세법 제19조이다. 이에 따르면, 수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 관세, 소비세, 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음으로 수출 특권(Export privileges)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금 특권제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출특권제도로는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다음의 5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 ① 관세법 19 조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 ② 보세 창고 계획(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 ③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④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⑤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 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상기 5 가지 절차는 담당 기관 및 세금 특권이 매우 다양하다. 처음의 세 가지 방법은 세금 반환, 및 세금 면제를 수여하는 태국 세무국(Thai Customs Department) 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4번째 및 5번째의 방법은, 각각 BOI 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의 통제 아래 있다. 세무국은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절차 엄수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관세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함된다.

<표 3-8> 관세, IEAT 및 BOI 를 통해 활용 가능한 특권의 비교⁷¹⁾

방법	담당 기관	특권
관세법 19 조에 따른 관세 환급	관세국	수출 상품의 제조, 혼합, 조립, 또는 포장을 거치는 원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체에게 지불된 수입 관세 환급
관세법 18 조(2)에 따른 제조 보세 창고	관세국	수입업자가 제조 보세 창고에서 보관되고 제조, 혼합, 또는 조립 과정에 사용되는 관세 창고 절차 하에 놓인 수입 상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경우 이러한 상품 은 수입 및 수출 관세가 면제됨.
자유 지역 (Free Zone)	관세국	세관에 의해 설립된 자유 지역 내의 기업은 수입 관세 및 지역 내에서의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 및 새로운 원료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
산업단지공단 법에 따른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cessing Zone)	태국산업단지공단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내의 기업은 수입 관세 및 지역 내에서의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 및 새로운 원료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관세 면제	투자청(BOI) 사무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품목을 포함하여, 수출용 상품 및 품목의 제조, 혼합 또는 조립 에 특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료 및 필수 물질 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됨.

자료 : 태국 관세국

관세법 (No.9) B.E. 2482의 19 조에 따른 환급은 수입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 혼합, 조립, 또는 포장 과정을 거친 후 수출되는 수입 상품에 대하여 이미 지불된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업체는 수입 관세의 지불 대신 은행 보증 또는 재무부 발행 보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 환급은 수입/대체 제품으로부터 제조된 수입/대체 제품 또는 항목의 수출 또는 폐기 이후 처리된다.

71) 관세법 19 조에 따른 관세 환급

관세법에 따른 보세 창고(Bonded Warehouses)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 수입 시점에서는 수입된 상품이 결국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제 무역 관례의 특징이다. 이는 수입업체가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동안 상품을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할 필요성을 없애거나 지불을 연기하는 세관 절차에 따라 이들 상품을 놓아두는 것이 수입업체에게 유리하다.

수입업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태국 관세국은 수입업자가 상품이 실제로 내수 소비를 위해 인수될 때까지 세금 및 관세 지불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세관 창고 절차를 위한 법을 제공하고 있다.

보세창고 안에 따르면, 재수출 목적으로 보세 창고에 보관된 수입 상품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제조, 혼합, 또는 조립되는 것과 상관없이 수입/수출 세금 및 관세 지불이 면제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보세 창고에는 제조용, 선박 수리 또는 건조용, 일반, 상품 분류용 일반, 유류 저장용 일반, 면세점, 자유무역 관련한 곳이 있다.

자유지역 프로그램(Free Zone Program)은 태국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자극하기 위해 개발됐다. 세계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산업, 및 자본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자유 지역 프로그램은 태국 내에서의 기업의 운영 유지 및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됐다.

자유 지역 프로그램은 태국 내에서의 제조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태국기반 운영을 장려한다. 해외에서 제조되어 태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개별 부품, 재료, 또는 부속보다는 완성품에 대하여 산정된다. 태국 기반 제조업체가 제조에서의 사용을 위해 부품, 재료, 부속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면 수입되는 외국의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불리하다.

자유지역 프로그램은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세 목적에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것처럼 대우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 제조업체가 태국 노동력, 서비스, 전력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산업단지 수출가공지역(Industrial Estate Export Processing Zones; EPZ)은 산업단지 내에 제품 수출 목적에서 공업 활동, 무역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또는 그것에 유리한 공업 활동, 무역 또는 서비스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하여 설계된 지역이다.

산업단지 EPZ 프로그램은 태국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을 통하여 수입/국내 세금/관세 및 특별부가 세금으로부터 구제, 수출 관세, 소비세 및 VAT로부터 구제, 수출 세금 반환/면제 계획에 대한 자격 부여, 영세율 등 장점을 제공한다.

한편 태국에서는 관세감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때 관세는 내각의 비준으로 재무부의 재량에 따라 인하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2가지 면제는 유류 및 가스 면허권자, 그 하도급업체 및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 이하 BOI)에 의해 장려된 일정 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시 말해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로부터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 클럽 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방출이 3시간 또는 그 이하에 수행될 수 있다.

나. 이행 관련 제도

1) FTA 이행 제도

태국은 FTA 협정에 대하여 이행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재무장관 및 관세청자의 명의 고시를 제정하고 있다. 동 고시는 주로 자국 언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본을 기본적으로 게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FTA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유도하는 제도로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TA 관련 고시도, 우리나라의 FTA 특례법과 같이 태국이 체결한 전체 FTA에 적용되는 통합적인 고시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FTA에 대해 개별적인 고시 형태를 띠고 있다.

한-ASEAN FTA이행에 관한 절차는 재무장관 고시⁷²⁾와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정한 관세청장 고시가 있는데 재무장관 고시는 주로 기본사항 및 세율에 관한 것⁷³⁾으로 구성되고, 관세청장 고시는 세관절차⁷⁴⁾에 관한 것이다.

72)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Re: Exemption and Reduction of Customs Duty for the ASEAN- the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rea dated 30 th September B.E. 2552 (A.D. 2009)

73) The 1st Tariff Schedule annexed to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Part II dated 30th September B.E. 2552 (A.D. 2009) Import Tariff Re: Exemption and Reduction of Customs Duty for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74) Notification of the Customs Department No. 72/2552, Re: Regulations and Customs Procedures regarding Exemption and Reduction of Customs Duty for the ASEAN - the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rea dated 6th October B.E.2552(A.D.2009)

2) 원산지 증명제도

태국에서의 원산지 증명제도는 한-ASEAN 협정에 의거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제도는 각 시, 성의 수출입관리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자국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입해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발급기관 직인과 발급자 서명, 사인 등 기재사항이 모두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⁷⁵⁾

원산지 증명서 작성란은 총 13가지 항목으로 구성⁷⁶⁾되어 있고 작성기재방법도 설명되어 있으며, 한-ASEAN의 공통 서식이다.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 ②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 ③ 운송수단 및 경로(출항일, 선적/편명, 적출항)
- ④ 담당자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에 의한 특혜대우/ 특혜대우 비부여-사유 기재요/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 ⑤ 연번
- ⑥ 포장의 표시 및 번호
- ⑦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과의 HS 번호 포함)
- ⑧ 원산지 기준(뒷면 참조)
- ⑨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FOB)
- ⑩ 송장번호 및 일자
- ⑪ 수출자 신고
- ⑫ 증명
- ⑬ 제3국 송장/전시/연결 원산지 증명서

75)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2011), 베트남 수출입 통관 및 FTA 활용가이드

76) 부표 1 참고

다. 통관제도

1) 태국 고유의 통관제도⁷⁷⁾

(1) 관세납부 후 세관검사제도

태국 세관법규상 서류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를 지불하고(관세지불 또는 BOD)에 의한 면세)난 후에 실제 화물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납부 후 현품 검사과정에서 업무미숙 또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세번분류 상의 착오가 발생한다거나, 현품이 신고물품과 다르거나, 수량, 규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정정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동 물품이 세관 관할 및 통제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밀수 또는 고의적인 관세회피로 간주하여 벌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태국세관에서는 많은 물동량을 공항만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고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수입자의 성실신고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스스로 세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간 거래되는 물품들은 다기능화 등 추세에 따라 많은 기능들이 함께 내포되는 경우가 많고, 물품의 용도 자체도 사용목적 및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등, 세번분류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정확한 세번분류에는 상품분류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동일물품에 대해 국가마다 품목분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적용시점 및 보는 시각에 따라 관계자 간에도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세관 내부적으로도 서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실제 화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직원 간 품목분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동 이견이

77) 관세청 외(2009), 태국 관세제도 및 무역정책

조율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분류는 신고물품에 대한 세관의 현품검사 과정에서 동 물품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품목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이 사전 검토되고, 별도 분석 등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이 반영되며, 이에 각 당사자의 입장 및 관점이 조율·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 세번, 세율 및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통관행정의 국제적 통례로 되어 있다.

이에 태국세관의 경우, 수입자가 세번분류 상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서류심사 과정 또는 관세 등이 제세의 납부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세관에 화물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여도 세관에서 이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관세 등 제세 납부 이전에 적용 세번 및 세율 등에 대한 세관의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태국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청 본부 및 방콕 지역세관의 세번분류부서를 통해, 수입자 등의 신청에 의해 관련 세 번 및 세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본인에게 회신하여 줄 수 있는 ‘품목분류사전회신제도’를 2008년 7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

(2) 세관사후심사 결과(추징사유) 벌금 부과(범죄행위로 간주)

세관의 HS세번분류는 통관업무 중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특히, 태국 세관의 경우는 세번분류의 차이에 따라 세액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자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추정액에 의거 산정되므로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관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태국에서는 수출입통관시 자진신고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통관과정에서의 물류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세당국의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의 경우도 별로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화물(20% 수준)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관통관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나 수출입과정에서의 국경통관이 이루어진 2~3년 후에는 통상 세관의 사후심사가 이루어진다. 세관사후심사의 목적은 당해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가 각종 법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관세 등 제세액은 정확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최종,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등 국가 재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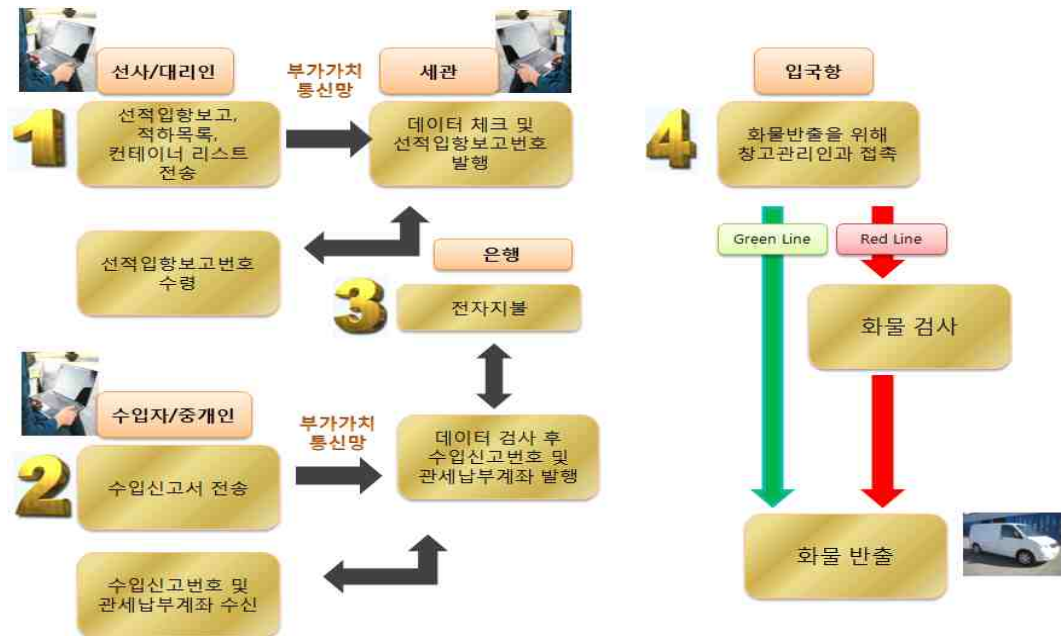
세관사후심사에서는 관세 등 제세액의 성실납부 확인을 위해 제세액 산정의 정확성, 세번분류의 적합성 여부, 수출입제한 여부 등이 주로 심사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후심사의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다국적기업, 별도의 대금결제 거래, 특수 관계의 거래, 상대적인 저가신고업체 등이 된다.

특히, 태국의 경우 세수확보의 극대화 또는 독려의 수단으로 추징 또는 벌금액의 일정분을 심사업무 수행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는 재정확보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무역관계자들로부터 국제무역관행 및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수입통관제도

다음 <그림 3-1> 은 태국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이다.⁷⁸⁾

<그림 3-1> 수입업무 처리 절차



자료: http://www.customsclinic.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5&Itemid=184&lang=en

우선,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태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세관에 상품 신고서류(Goods Declaration)와 수입물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이 입국항에 도착하면 세관으로부터 화물인도 승인허가가 이뤄지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적법하게 반입될 수 없다. 수입품의 검사 및 인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배하는 것도 수입자의

78) 부표 9 참조

책임이다. 또한 수입의 성격에 따라(과세가격에 관계없음)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수입승인을 요하는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입전에 관련 승인기관에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과 관련 서류(수입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입 신고서(전자 문서)
- ② 선화증권/항공화물운송장
- ③ 송장(전자 문서)
- ④ 포장명세서
- ⑤ 수입승인서(적용가능한 경우)
- ⑥ 원산지 증명서(적용가능한 경우)
- ⑦ 제품 성분, 카탈로그같은 기타 관련 서류 등

수입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종이문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모든 데이터가 Gateway Provider를 경유해서 수입자의 컴퓨터에서 세관의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첫째, 수입 통관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수입신고서 작성 및 세관에 전송하는 것이다. 화물의 도착시 또는 화물의 도착 이전에, 선박회사 또는 대리인은 선박입항보고서 및 적하목록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오류사항이 없다면, 선박입항보고번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이 정보는 선사에 발송될 것이다. 화물이 통관지에 도착했을 때,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수입신고서를 제시한다.

두번째 단계는 수입자가 제시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의 검사이다.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제공된 자료를 체크하고 수분내에 수입신고번호와 제세공과금 납부용 계좌번호를 발행해 준다. 또한, 선별시스템은 전송된 자료를 체크하고 수입신고서를 Green Line과 Red Line의 두 영역으로 분류한다.

세번째 단계는 수입관세의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이다. 수입관세 납부방법은 세관방문을 통한 납부와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 두 가지가 있다.

마지막 단계는 화물을 검사한 후 인출하는 것이다.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화물이 보관된 창고에 관세납부증과 신고수리된 수입신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입신고서를 Red Line(화물검사)과 Green Line(화물반출)중 어느 곳으로 분류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화물관련 정보를 사전설정된 선별기준과 대조하여 점검한다. Green Line에 분류된 수입신고서는 수분내에 수입신고 수리된다. 그 후, 화물상태는 전자적으로 세관 및 수입자/관세사에게 전달될 것이다. 다만, 사전결정된 선별기준에 따라 Red Line에 분류된 경우, 세관은 화물반출 전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게 된다.

통관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밀수시에는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밀수품 수취시에는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정당한 세관 신고 위반시에는 1만 5,000 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수입품 통관시 어려운 사항은 국내업체가 해외로부터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시 제품의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HS CODE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하여 통관을 시키려고 하지만 태국 관세청에서는 추후에 임의로 HS CODE를 판정한 후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CODE를 잘못 분류하였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태국관세청 담당자에게 HS CODE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 관세청은 통관관련 부조리 척결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의 태국세관은 그동안 각종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한태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0년 12월 작성한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 및 관세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HS CODE 세부번호 관련 문제, 휴일 세관 통관시 문제점, 그리고 컨테이너 관련 관세행정 분야 등이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제품 수입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품목분류 세부 번호가 잘못되었다고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사전에 제품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태국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99)에 의하면 통관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류와 다른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국은 특히 그 동안 밀수 등을 방지하고 세관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기와 같은 잘못된 통관사례를 적발시 물품금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세관원이 아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밀수품을 통관시키려다 적발되는 수출입 업체는 제품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보상제도는 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품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는 보상금 액수도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음. 때문에 세관원들이 큰 것 한 건을 잡기 위하여 지나치게 오랜기간 동안 통관을 미루고 제품과 서류의 불일치성을 찾기에 노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기업들은 비록 정당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세관의 부조리로 통관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 시간 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소송에 패할 경우는 더 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급적 피하고 있다.

또한 태국관세청은 세관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다. 세관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관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각 송장마다 취급수수료 200바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는 세관원의 수입을 향상시키고 뇌물수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벌금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개정예정인 법률은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물품 가치의 0.5%에서 4배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 동안 크게 비판을 받아온 세관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지난 달 내각의 승인에 의하여 밀수품 몰수 시 보상액을 물품가치의 25%에서 15%로 낮추어졌으며 최대한도도 5백만 바트로 정해졌다. 세관원이 아닌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여 밀수품 발견 시 보상액은 물품가치의 30%이며 건당 1천만 바트를 최대한도로 정하였다.

한편 각 건당 5백만 바트로 보상금 한도를 정하는 것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물품가치가 큰 선적건의 경우 세관원들이 이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5백만 바트의 한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 정보원은 실제로 내부 세관원들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들, 혹은 물품 주인의 경쟁자들인데 보상금을 받은 후 세관원과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많다.

태국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출입을 금지와 제한 두 가지 종류로 통제하고 있다. 수출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품의 수출 및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며, 수출입제한 품목은 관련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태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태국 국기가 포함된 제품, 마약류, 위조 지폐, 위조 왕실인장, 지적재산권 침해 음반, 위조상표권 등이 있다.

태국 상무부는 수입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수입제한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가 필요한 제품은 약 50여 종류이다. 또한 상무부의 다른 정부기관 에서도 일부 제품의 수입을 통제⁷⁹⁾하고 있다.

태국은 운송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등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2004년 4월 26일 아시안 고속도로 협약(Asian Highway Agreement)서명으로 태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32개국과 육로 무역 및 교통에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은 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과 교류를 용이하게 하여, 태국이 국제 무역에 있어 중요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라. Advance Tariff Ruling 제도

태국에는 Advance Tariff Ruling 제도가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입일 30일 이전에 세관당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제품 설명서 및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
- 79) ① 의약품, 식품, 보조식품 등은 태국 공중보건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전에 면허를 받아야 함.
② 골동품, 예술품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시 미술품(Fine Arts Department)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 무기, 탄약, 폭발물 등은 내무부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받아야 함.
④ 화장품법(The Cosmetic Act)은 공중보건을 위하여 수입통제 화장품의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의 회사명 및 주소, 화장품 종류, 주요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⑤ 동물, 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 분야에 따라서 야생 및 식물보호국, 농업국, 수산물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세관에서는 30일내에 결정이 나며, 제출서류 불충분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결정에 불복시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30 근무일내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대한 결정사항은 태국의 모든 세관에서 1년간 유효하다.⁸⁰⁾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들 중 인구 및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시장도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ASEAN FTA, 한-ASEAN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관세청(Director General customs and Excise)은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전체 세관직원은 약 11,000명, 본청인력은 약 1,500명, 13개 본부세관을 포함하여 전체 140개의 세관이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부패척결 등 행정개혁(Customs Reform)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관개혁의 핵심은 Main Service Office(KPU)신설과 Indonesian National Single Window(InSW)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의 주요 정책은 밀수 등 감시강화, 세수수입 증대, 서비스 혁신 등이며 특히 원산지 심사 강화를 통한 FTA 불법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보세구역 내 세관통제 강화, 관세 추징 시 수입자와 협의 및 소명 기회 제공권 부여 및 주류 관세부과방법을 종량세로 변경하였다.

80) 관세청 외(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안정보장·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과 물품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⁸¹⁾

가. 관세제도

인도네시아의 관세제도는 관세법에 의거한다. 다음 <표 3-9>에서 나타나듯이 인도네시아 관세법⁸²⁾은 총 10장, 6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 수입과 수출에 관한 사항을, 4장에서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및 지적재산권의 위반 결과로 인한 수입 또는 수출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6장에서 벌칙 규정에 관해 다루고 있다.

<표 3-9> 인도네시아 관세법

장	절	조
1장 수입과 수출	1절 도착, 하역, 저장 및 상품의 방출	7
	2절 가정용 물품의 수입	8
	3절 임시적인 수입	9
		10(수출)
		11(상품의 이동)
3장 기록		12~15
4장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및 지적재산권의 위반 결과로 인한 수입 또는 수출의 통제		16(수입과 수출의 제한) 17~27(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수입과 수출의 통제)
5장 관세당국의 권한		28~31(일반원칙) 32~35(통제)
	1절 상품의 검사	36~39
	2절 기록의 조사	40

81) 관세청 외(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82) 본 법령은 1996년 4월 1일자로 유효할 것임.

장	절	조
	3절 빌딩과 기타 장소의 조사	41~43
	4절 이동수단의 조사	44~45
	5절 몸수색	46
6장 벌칙규정		47~56
7장 조사		57~58
9장 변경 규정		59
10장 마지막 조항		60~61

19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 (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ASEAN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 이후 한, 중, 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ASEAN FTA(2006년), 한-ASEAN FTA(2007년), 일-ASEAN FTA(2008년)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번 FTA체결로 대한민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관계자들이 중국계로써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하여 ASEAN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척결과 시스템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관세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으로 결정한다.⁸³⁾

관세부과 기준가액은 FOB가격기준으로 US\$5,000 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또한, US\$5,000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환급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 유예가 가능하므로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 유예 통관이 된다.

환급대상은 물품의 수출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써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환급대상 제외 물품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등이다.

환급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결정한다.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이 3부 작성하면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관세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83) ①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② 관세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나. FTA 이행 관련 제도

1) FTA 이행 제도

인도네시아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역내 FTA는 물론 한-ASEAN, 중-ASEAN, 인도-ASEAN, ASEAN-호주·뉴질랜드 등 ASEAN의 FTA, 일본-인도네시아 EPA 협정 등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각의 FTA에 대하여 이행법 제정을 하지 않고, 관세율 조정과 원산지 규정 등 FTA 특혜 심사제도를 각각의 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 관세율의 경우 FTA 협정을 바탕으로 재무부령에 의해 관세율 조정 스케줄을 개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원산지 관련 부문은 무역부령인 “인도네시아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한 규정”⁸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합의 된 FTA 관세율 조정 스케줄에 맞추어 인도네시아 관세율을 변경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⁸⁵⁾

관련 법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ASEAN FTA와 관련한 관세율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⁸⁶⁾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Number 236/PMK.011/2008에 규정에 따라 한-ASEAN FTA의 관세에 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한-ASEAN FTA의 틀 안에서 ASEAN 국가와 한국의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를 규정함.
- 한-ASEAN FTA하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결정은 재무부 규정 하에서 결정된 것이며 본 법령이 시행할 것을 공포함.

84)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9/M-DAG/PER/12/2010, Regarding Provision in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nport Merchandise(부표 5)

85) 코트라 문의/원문 부표 5 참조

인도네시아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 고려 사항〉

15.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11 of 2007 regarding Ratification of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2) 원산지 증명제도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은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 무역부령 및 증명서발급기관 고시에서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는 FTA 특혜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표 3-10> 인도네시아 FTA 별 원산지 발급 현황

협 정	대상국	C/O	NO. of C/O
AFTA (ASEAN)	ASEAN 10개국	Form D	3 SETs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AK-FTA (한-ASEAN)	한국	Form AK	3 SETs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AC-FTA (중-ASEAN)	중국	Form E	4 SETs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quadruplicate)
IJ-EPA (일본-인니)	일본	Form JI-EPA	3 SETs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AI-FTA (인-ASEAN)	인도	Form AI	3 SETs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86) 부표 5 참조

대통령령의 위임근거에 따라 전국 85개 지방 발급소에서 발급하며, 중앙정부기관인 통상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수라비야 등 28개 발급소에서 전자발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웹베이스 방식이나 인도네시아는 신청자가 전자로 작성한 내용을 디스켓에 담아 첨부서류와 함께 발급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급수요가 발급인력보다 많다 보니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소요시간은 신청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분정도가 소요되며, 발급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는 않는다.

신청자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필수기재 사항을 직접 기재하여 5가지의 필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관련 서류이다.

- ① Cost Structure(원가분석자료)
- ② 세관수출신고필증 사본
- ③ 송장
- ④ 선하증권
- ⑤ Packing List

Cost Structure는 해당물품의 원재료내역·인건비·간접경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이며, 우리나라의 원산지 소명서⁸⁷⁾와 유사하다.

인도네시아의 발급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핵심서류인 Cost Structure의 진위성에 대해서는 더 확인하지 않으며, 수출자가 작성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약 3,000여 수출업체의 정보⁸⁸⁾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있으며, 4년마다 재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부터 ASEAN 일부 국가 간 시범적으로 자율발급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사개황, 주요 생산품목 및 연간 생산량, 장비 및 기계 리스트, 원재료 사용현황, 인력현황 등과 같은 수출자 정보등록을 마친 기업에 한하여 자율발급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선적 후 1년 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하며, 이 때 구비서류는 일반신청서류와 동일하다. 이때 사후발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고 반려만 하며, 하자를 보완해 오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담당자가 신청서의 오류사항을 직접 수정해서 발급하는 경우는 없는 등 인도네시아 측은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신청행위 등에 대해 별도의 벌칙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87) 부표 11 참조

88) 회사개황, 주요 생산품목 및 연간 생산량, 장비 및 기계 리스트, 원재료 사용현황, 인력현황 등

그리고 의심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는 있으나, 수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하므로 현장 확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도네시아 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단, 생산라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불일치할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반려하거나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생하기도 한다.⁸⁹⁾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발급규정으로 그 사항을 소개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⁹⁰⁾

-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처리하는 권한있는 자에 관한 명단을 동봉해야 함(우표를 붙인 진술서 포함)
- ② 승인받은 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인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③ 각각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Export Manifest (PEB/PE)의 복사본과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함.
- ④ 신청인이 생산자나 수출자가 아닌 경우 상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고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본 서류는 생산자에 상품이 제조되었다는 생산자의 진술서임.
- ⑤ 보세구역 및 기타 관세지역에서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충분한 가공이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⑥ 각각의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달에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를 보고해야 함.
- ⑦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행자는 원산지조사를 받을 수 있음.
- ⑧ 각 기업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한 서명권자의 서명본을 동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89) 관세청 내부자료

90) 부표 5 참조

- ⑨ 수출 및 수입부서에 매달 소프트카피본을 원산지 증명서 발행권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용에 관해 보고해야 함.
- ⑩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판매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인에게 위임될 것임.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 수출 시 GSP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통관 서류로서의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 환급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원산지 증명서(AK-FTA 양식)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FTA내 수입 원산지증명 절차 변경 법안(SE-01/BC/2010)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의 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한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AKFTA 관세율 적용을 받지 못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통관제도

1) 수입 통관제도 특성⁹¹⁾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제도는 선 통관 후 감사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말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이 출발지에서 SGS 검사, 즉 선적 전 화물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1994년 말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선적 전 검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제도는 선 통관 후 감사 제도로 전화되었다. 따라서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서 수입 화물 통관이 종료되어 수입 화물의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화물 수입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을 거칠 때 세관에서 수입 화물의 수입가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수입 통관 시점에 조정관세 혹은 벌금이 부과되고 수입 화물의 실질심사가 완전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항만 혹은 공항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된 개별 수입자의 수입신고서는 재심사 부서로 이관되어 수입 통관시 신고된 수입가액과 관세율 적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 규정에 의하면 수입 통관이 완료된 수입신고서의 검증 유효 기간은 수입 통관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따라서 이미 수입이 완료된 수입 통관에 대하여 관할 세관이 검증하는 과정 중, 수입가액의 하양 신고 혹은 관세율 적용이 부정적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조정관세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업체의 수입 실적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91) 코트라(2011), 인도네시아 투자 실무가이드

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미 수입 통관이 완료된 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 가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매 혹은 발주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한다. 그 래야만 수입 실적 감사 과정에서 추정당할 수 있는 조정 관세 및 벌금의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입 실적에 대한 법인 감사를 실시할 때 수입가액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자료로는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 등이 있으며 수입 제품 카탈로그 혹은 수입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구비하면 수입 실적에 대한 법인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수입 실적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의 핵심 포인트는 수입 화물의 수입가액 및 관세율 적용부분이다. 만약 수입가액이 하향 신고하여 수입 통관이 완료된 건이 적발되면, 조정관세 및 벌금이 부과되어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관의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되므로 향후 수입 통관 업무를 진행할 때 수입 화물의 지속적인 검사를 받게 되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상당한 애로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관세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HS 코드의 잘못된 적용), 즉 신고한 수입가액은 인정을 받았으나 수입 관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세율 차액에 대한 조정 관세만 부과된다.

<표 3-11> 신규별금 규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기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수입가와 세관자체 심사 기준이 상이할 경우 부과 별금 범위 상향 조정
별금부과 내용	기존의 최대 500%에서 1,000%로 상향
별금 기준	조정 수입 관세 금액
주요 내용	- 수입자 신고 수입가와 세관 판정가 비교 차액이 25% 이하인 경우 별금 100% 부과 - 수입자 신고 수입가와 세관 판정가 비교 차액이 25% 이상 50% 이하인 경우 별금 200% 부과 - 수입자 신고 수입가와 세관 판정가 비교 차액이 50% 이상 75% 이하인 경우 별금 400% 부과 - 수입자 신고 수입가와 세관 판정가 비교 차액이 75% 이상 100%이하인 경우 별금 700% 부과 - 수입자 신고 수입가와 세관 판정가 비교 차액이 100% 이상인 경우 별금 1,000% 부과

자료 : SPL 로지스틱스

2007년 7월 1일 자카르타 항만 세관이 기존의 1,2,3세관에서 하나의 단일 조직(KPU: Kantor Pelayaran Utama)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세관 조직과의 급여 차별화, 요원 선발 방법 차별화, 인사고과 강화, 통관 심사관 권한 강화, 부정부패 방지 교육 강화, 밀수 근절 및 적발 교육 강화, 수입자와 직접 대면 금지 및 단일 지위체계를 통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시 통관 일수가 지연되고 조정관세 및 별금이 과다 부과되는 어려움이 생겼다.

자카르타 항만 세관의 변신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가액 불성실 신고 근절 차원에서 수입가액 불성실 신고에 대한 별금 부과 규정을 개정하였다. 2008년 4월 11일부터 불성실 신고에 대한 별금을 기존의 최고 5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KPU 출범 이후, 수입 화물 전수 검사 강화는 물론 수입자가 신고한 화물의 신고가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인터넷상 동일 혹은 유사 제품 가격 조회, 시장판매가 조사)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 통관시 정상적인 수입가액 신고는 물론 동종제품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수입가액 신고는 물론 동종제품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수입가액 신고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가격 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조정관세 및 벌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통관경로를 지정함으로써 수입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⁹²⁾ 수입통관 수입업체의 등급 분류 및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적색경로(Red Channel): 고위험 업체
- ② 황색경로(Yellow Channel): 위험 업체
- ③ 녹색경로(Green Channel): 우수업체
- ④ MITA 특급경로(MITA Priority Channel) : 최우수업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 3-12>와 같다.

<표 3-12> 수입통관 수입업체 등급 분류 및 적용

통관 채널	통관절차	위험분석	지정기준
Red Channel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 수입 통관품은 모든 납세의 의무(벌금 포함)를 다한 후 반출 검사관련비용 부담 관세납부 후 통상 5~7일이내 통관	수입품 자체(수량, 종류)에 위험성 상존, 수입자의 비일관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위험 가능	신규 수입자 및 고위험 신용보유자, 고위험 품목 수입자

92) 관세청 외(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통관 채널	통관절차	위험분석	지정기준
Yellow Channel	물품검사 생략, 서류심사 수입 통관품은 모든 납세의 의무(벌금 포함)를 다한 후 반출 관세납부 후 통상 3~4일이 내 통관	서류상 위험성 상존, 재정적인 보증 미흡	통상 Red Channel 지정후 1년간 관세법규 위반사실이 없고 우수 수입실적 보유
Green Channel	서류심사, 수입 통관품은 검사 후 즉시 반출 관세납부 후 통상 12시간이 내 통관	서류상 위험성 상존, 재정적인 보증 미흡	Yellow Channel 지정후 3개월간 관세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우수 업체 통상제조업, 무역업은 고신용도 업체
MITA Channel	검사 및 서류심사 면제 관세 사후납부 및 신속 통관	Track record가 검증된 회사수입,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 지속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형태	신용도와 재정력이 매우 우수한 성실업체 지명도가 높은업체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ASEAN FTA, 중-ASEAN FTA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고 내수 산업을 보호하고자 수입자의 자격 및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비관세 장벽의 벽을 쌓아가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화물에 대한 사전 인허가 구비 요건을 반드시 숙지한 이후 수입 업무를 진행하여야 인허가 사항 미비로 인한 수입 통관 지연 및 반송 조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2) 수입자 필수 구비 인허가 사항

화물 수입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보세, 비보세 모두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전, 세 가지 필수 허가를 얻어야만 수입 통관 가능 자격이 부여된다. 해당 서류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서, 납세자 번호(세적등록), 관세청 등록 증명서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발행하며 수입허가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API-P)

유효기간이 항구적이며, 생산 설비를 보유한 제조업체에 한하여 허가된다. 외자법인(PMA)인 경우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 대행한다.

② ANGKA PENGENAL IMPOTIR-UMUM(API-U)

유효기간이 항구적이며, 생산설비가 없는 무역, 유통, 건설 업종에 발급되는 수입허가서로서 외자 법인(PMA)인 경우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 대행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납세자 번호(세적등록)이다. N.P.W.⁹³⁾의 신청 및 발급기관은 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관세청 등록 증명서이다. 이는 N.I.K.⁹⁴⁾로 등록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 양식을 다운받은 후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한다. 관세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자 소재지 실사, 이후 승인의 과정으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N.I.K 등록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치하면 등록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자료 제출이 접수되면 관세청에서는 자료 접수 확인 메일을 등록 신청을 한 수입자에게 발송하는데 이를 등록 업무 종료로 오인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93) NOMOR POKOK WAJIB PAJAK

94) NOMOR IDENTITAS KEPABEANAN

수입자 소재지 실사 결과가 수입자 등급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심사관이 소재지를 실사할 때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좋은 인상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수입자가 N.I.K 등록을 완료하기 전 화물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 조건을 N.I.K 등록 절차 진행 중인 수입자에 한하여 최초 1회에 한해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상기 명시된 세 가지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나 관리품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산업용 원부자재는 수입이 가능하다.

3)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는 선적 서류 준비 및 HS 코드 확인,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세 납부, 수입신고서 전송, 화물검사, 화물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단계 별로 알아보자.

우선 선적 서류 준비 및 HS 코드 확인이 필요한데, 수입 통관용 서류는 원본이 필요하다.

- ① Original Bill of Lading
- ② Invoice
- ③ Packing List
- ④ Insurance Policy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수입자가 수입화물 통관 진행시 세관에 제출하는 선적 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세 법인에 한해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개별 보세에서 작성한 SURAT PERYATAAN을 첨부하여 사본으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역 업무를 진행할 때 선하증권을 발급자에게 양도한 후, 선적 서류 사본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송수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이를 불인정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업무 진행 시 원본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자에게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의 특수한 사항을 통지하여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선적과 관련된 원본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날조한 것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대상이 됨은 물론 과다한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으로 기타 구비서류로는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 (물품 대금 송금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수입 화물 통관 중, 화물검사(Physical Inspection)를 실시하는 경우는 화물 검사이후 수입가 증빙 자료를 세관에서 요청하게 된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서류가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이다.

다음 단계로 수입제세 확인을 위해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의 품목을 인도네시아 관세율 목록(HS Code Book)에서 확인하여 표시된 세율대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관세율은 매년 개정되면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관세율 적용이 다소 애매한 품목은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관세율 2차 조정기간으로 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허가 사항(비관세 장벽)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선적서류 준비 및 HS 코드 확인 절차가 끝나면 수입신고서 작성⁹⁵⁾을 해야 한다. 선적 서류에 준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수입 시 납부하는 수입세는 다음과 같다.

- ① BEA MASUK: 수입 관세(Import Duty)
- ② PPN: 부가가치세(VAT)
- ③ PPH22: 선납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인도네시아는 화물 수입 시 법인세를 반드시 선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화물의 종류에 따라 PPNBM(특소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수입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 ① BEA MASUK : 수입 관세(Import Duty)
- ② PPN : 부가가치세
- ③ PPH22 : 선납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인도네시아는 화물 수입 시 법인세를 반드시 선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화물의 종류에 따라 PPNBM(특소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수입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 ① 수입 관세는 $CIF(FOB + \text{운송료}) \times \text{기준 관세율}$
- ② 부가가치세는 $CIF + \text{수입관세} \times 10\%$
- ③ 법인세는 $CIF + \text{수입관세} \times 2.5\%$

해상 화물 혹은 항공 화물 중, 무역 거래 조건이 FOB인 경우 해상 화물은 수입자가 신고한 운송료를 대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항공 화물의 경우는 IATA RATE를 수입신고서상의 운송비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특성이

95)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있다. 그러므로 항공 화물은 가급적 CFR 혹은 CIF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격산출시 항공운임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출한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수입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세 납부 기준 환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경 관세청에서 고지하며 이에 준하여 수입세를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 화로 환산한다. 수입신고서에 준하여 세금 계산이 완료되면 수입세납부서(SSPCP)를 준비한다. 수입세납부서를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입업체 거래 은행에 제출한 후 지불 요청을 하면, 수입세는 은행에서 국고로 납입된다. 수입세 납부 처리는 매일 오전 11시에 마감되므로 최소 매일 오전 10시 30분까지는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 단계는 수입신고서의 전송이다. 수입세 납부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하게 된다. 세관에서는 전송받은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 은행과 수입세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 접수 완료를 통보한다. 세관의 수입신고서 접수 완료통지가 오면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수입세납부증명서, 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의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는 원본 서류가 접수된 이후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 결과와 수입업체의 기존 수입 실적을 참고하여 화물 통관 승인 혹은 화물 검사 실시를 통지한다.

수입신고서가 전송되고 나면, 화물 검사를 하게 된다. 화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화물검사 순번 대기(보통 1~2일 대기), 대기 완료 후 검사를 실시한다. 화물 검사는 사안에 따라 내품 100%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컨테이너에 불필요한 자재, 샘플, 개인 용품, 기타 소모품 등 선적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절대 선적이 불가하다. 만일, 선적 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 적발될 시에는 조정 관세는 물론 과중한 벌금, 물품 압수 등의 결과가 초래되며, 위법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의 최종 통관 승인이 나면 세관에서 SPPB를 발급하며 Lift On& Storage 등의 비용을 납부한 이후 화물 출고가 가능하다.

4) 수출 통관 절차

수출과 관련된 선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MOU 체결, 선복 예약, 수출신고서 세관 발송 및 수출 승인, K.I.T.E FACILITY로 화물을 수입한 업체에서 수출하는 경우, 수입 화물 재반출, 기타사항이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도네시아 세관과 MOU를 체결하여야 한다. MOU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이며 세관과 수출관련 MOU 체결이 되지 않은 업체는 수출이 불가하다. MOU 체결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Suart Permohonan(요청서)
- ② Akte Perusahaan(법인 정관)
- ③ Npwp & Pkp(납세자번호 및 일반 과세자 증명서)
- ④ Siup & Tdp(사업허가서 & 법인 등록증)
- ⑤ Sk Badan Hukum(법무부승인서)
- ⑥ Suart Kuasa Penanggung Jawab Peb(수출신고서 서명권자 확인서)
- ⑦ Company Profile(회사소개서)
- ⑧ Company Organization(회사 조직도)

상기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한 이후, 세관에서 승인을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과 관련하여 세관과 체결하는 MOU의 주요 내용은 수출 시 전송하는 수출관련 제반 사항 즉, 수출 신고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출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수출자는 수출 및 수출 신고 관련 자료를 수출 이후 10년동안 법인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국행 선적 일정을 확인한 이후, 선사 혹은 프레이트포워드(freight forwarder) 업체에 선복 예약을 한다. 선복 예약을 하게 되면 선사로 가서 D/O 및 Container Seal을 수령한 이후 선사가 지정한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Lift On Charge를 지불한 후 Empty Container를 수령하여 공장으로 운송한다.

다음은 수출신고서 세관 발송 및 수출 승인 단계이다. 본 사항은 선복 예약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해당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와 수출승인서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PERMBERITAHUAN EXPOR BARANG(P.E.B : 수출신고서) : 수출 관련 기재 사항을 수출신고서에 명시한 후 세관으로 전송한다. 세관에서는 수출자가 신고한 수출신고서(PEB)를 검토한 이후 하자 사항이 없으면 수출승인을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 ② PERSETUJUAN EXPOR(P.E.: 수출승인서): 세관에서는 전송받은 수출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출 승인서(P.E.)를 수출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그 후 수출자는 정해진 선적 일정에 준하여 수출 선적 업무를 진행한다.

화물 Stuffing 이후 수출자는 수출 화물과 함께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Invoice, Packing List를 부도/공항으로 보내게 된다. 화물이 부도/공항에 입고되기 전 Lift Off 혹은 Storage의 지불을 완료하고, 수출 담당 세관원의 최종 확인 절차를 받으면 수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보세 법인도 서류 진행 절차는 동일하나, 보세 법인은 수출화물을 출고하기 전에 상주 세관원의 수출 화물확인(검사)을 받아야 한다.

K.I.T.E FACILITY를 이용하여 수입 원, 부자재를 수입한 업체에서는 수출 후, 아래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수입 시 면제, 유예 받은 수입관세와 부가세의 최종 면세가 승인되며, 수입 시 세관에 예치한 Customs Bond 혹은 Bank Guarantee를 회수할 수 있다. 수입 시 면제, 유예를 받은 수입 자재는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가공하여 수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세청에 제출한 Customs Bond 혹은 Bank Guarantee의 만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수출 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수입 자재 가공 후 수출 증빙용)는 수입 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건에 대한 증빙 자료와 수출 증빙자료가 있다.

먼저 수출 후 관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수입 자재 가공 후 수출 증빙용)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입신고서(PIB) 사본
- ② 수입 선하증권(B/L) 사본
- ③ 출고동의서(SPPB) 사본(출고 당시 세관원의 확인필이 있어야 유효함)
- ④ 지불 보증서 접수 확인증(STTJ) 사본

다음으로 수출증빙을 위해 다음의 자료들이 필요하다.

- ① LPBC: Laporan Permeriksaan Beacukai 원본(수출 검사 보고서)
- ② LHP: Laporan Hasil Permeriksaan 원본(수출 검사 결과 보고서)
- ③ 수출신고서(PEB) 사본
- ④ 수출증빙 선하증권(B/L) 혹은 항공 송장(AWB) 사본
- ⑤ Disket Hasil Transfer Data(수출 자료 보고용)

위의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수입 시 예치하였던 Custom Bond 혹은 Bank Guarantee를 회수한다. 그러면 수입 건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 사항은 면세로 완전 종결된다.

마지막으로 운송과 관련하여 항구 및 공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 rah Rai 공항 두 곳이므로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국제항구로는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등이 있다.

국제공항은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빠젠baru)을 이용할 수 있다.

4.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교역 상황은 2009년 대 말레이시아 수출 43.2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25.4% 감소하였고, 2009년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도 75.7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25.4%나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는 32.50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수출·수입 감소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여파로 보여 진다. 그러나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경기침체 이전으로 거의 회복되면서 수출은 41.4%, 수입은 25.8% 증가했다. 특히 수출부분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분야 증가가 들어났으며, 수입부분에는 원유, 석유제품, LPG가스 등 원자재 분야의 수입증가가 늘어났다.

전체 무역수지는 작년과 비슷한 34.15억불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업화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반면, 원유, 천연가스, 고무, 주석, 목재 등 세계적인 자원 보유국으로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양국 간 교역 확대의 여지는 매우 크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 전체무역량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6번째로 교역량이 큰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주 수출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판,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 등으로 이들 품목이 대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주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반도체, 석유제품, 원유, 컴퓨터, LPG, 목재류 등이 전체 수입품목의 70%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부자재의 수입이 큰 비중을 이루고 있다.

가. 관세제도

1) 관세법 개요

말레이시아 관세제도는 관세법에 의거하고 있다. 관세법은 다음과 같이 총 21편, 169절로 구성되어 있다. 5편에서는 해상운송에 관한 통관과 10편에서는 환세환급, 12법에서는 조사, 검사, 압수와 체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17편부터 19편A, 19편C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속하는 주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⁹⁶⁾

<표 3-13> 말레이시아 관세법

편	절
1편 서문	1~2
2편 관세관의 지명과 권한	3~10
3편 관세의 추가 부담금	11~22C
4편 수입 및 수출	23~35
5편 해상운송 통관	36~42
6편 영해에서 영향을 끼치는 화물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	43~51
7편 적하목록	52~62
8편 보세창고	63~77
9편 물품의 신고	A 관세를 지불해야 할 물품:78~80 B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81~92
10편 관세환급	119~137
11편 그 외의 조항	100~106
12편 조사, 검사, 압수와 체포에 관한 사항	106A~116D
13편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조항	117~122A
14편 위법행위 및 벌칙사항	133~141
15편 규정	142
16편 총칙	143~145

96) 말레이시아 관세법 원문은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참조하면 됨.

편	절
17편 PENANG에 관련된 특수조항	146~153(삭제됨)
18편 LABUAN에 관련된 특수조항	154~160
19편 SABAH과 SARAWAK에 관련된 특수조항	161~163
19편A LANGKAWI에 관련된 특수조항	163A~163G
19편B 합작 개발 지역에 관한 특수조항	163H~163I
19편C TIOMAN에 관한 특수조항	163J~163P
20편 싱가포르 예비 선박	164~168
21편 폐지조항	169

2) 관세 제도 시행 현황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SEAN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역내特惠관세가 진전되어 역내협력이 강화되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 면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장벽을 실시하고 있는데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20~30%의 고관세 부과,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개인 보세 창고(Private Bonded Warehouse)와 공공 보세 창고(Public Bonded Warehouse) 등 두 가지 유형의 인가 창고(Licensed Warehouse) 또는 보세 창고(Bonded Warehouse)가 있다. 개인 보세 창고 면허는 자사 상품을 보관하는 기업에게 부여되고, 공공 보세 창고 면허는 여러 수입업자의 관세 상품을 보관하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수입업자는 기간 제한 없이 보세 창고에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 보세 창고에서 상품을 통관시킬 때 수입 관세와 판매세를 납부한다. 세관 No. 9 양식을 통해 상품을 신고해야 하며, 이 서류를 보세 창고의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 보세 창고는 서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보관과 상품 이동에 관한 서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공공 보세 창고는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한다. 보세 창고의 기능으로는 보관, 적하, 재포장 및 재라벨 등이 있다.

나. FTA 이행 관련 제도

1) FTA 이행 제도

말레이시아는 여타의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ASEAN 회원국으로 ASEAN 역내 FTA는 물론 한-ASEAN, 중-ASEAN, 인도-ASEAN, ASEAN-호주·뉴질랜드 등 ASEAN의 FTA, 일본-말레이시아, 파키스탄-말레이시아, 칠레-말레이시아, 뉴질랜드-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각각의 FTA에 대하여 이행법 제정을 하지 않고, 관세율 조정과 원산지 규정 등 FTA 특혜 심사제도를 각각의 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 관세율의 경우 FTA 협정을 바탕으로 관세율 조정 스케줄을 개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원산지 관련 부문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통상산업부의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ASEAN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입 관세율 표는 한국 관세청과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⁹⁷⁾를 통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에서 한-ASEAN FTA적용 관세는 KOREA. MAL 란을 참조하며, 이란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이다. Nil은 0%와 같은 의미이며, ASEAN간 관세율은 두 번째 폴더 AHTN을 클릭하여 CEPT 란에서 볼 수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1967년 관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근거를 두지 않고, 국제통상산업부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2) 원산지 증명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원산지 증명제도는 국제통상산업부의 내부지침에 따른다. 동 기관 및 산하 지역사무소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7) <http://tariff.customs.gov.my/>

지역사무소의 경우 쿠알라룸푸르(중부), 페낭(북부), 켄탄(동부), 조호바루(남부)·코타키나발루 등으로 4개 지역 발급소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웹베이스 방식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수기발급도 병행하고 있다. 전자발급과 수기발급을 병행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의 중복 등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나, 2009년 5월부터 전자발급의 경우 인식번호를 부가함에 따라 중복번호 문제를 해소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⁹⁸⁾

우선 수출전 원산지검증절차의 일환으로 수출자로부터 원가분석자료(Cost Analysis Application)을 제출 받아 해당제품의 생산공정·부가가치 및 원산지기준을 확인한다.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효기간 2년의 원산지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서를 교부받은 물품에 한하여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다음 <표 3-14>에서 나타나듯이 수출전 원산지검증(1단계) 및 CO 신청 및 발급(2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자발급과 수기발급이 각각 상이하다.

98) 말레이시아의 수출전 원산지검증제도(1단계)는 우리나라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와 유사함.

<표 3-14> 각 단계별 소요기간

구분	수기신청	전자신청
1단계	7근무일	5근무일
2단계	2근무일	1근무일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필요한 서류는 단계별로 다르며, 해당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3-15> 각 단계별 필요서류

1단계 신청서류(수출전 검증)	2단계 신청서류(CO 발급신청)
① Cost Analysis Application Form ② 기업명의로 신청공문 ③ 생산자/수출자 및 해당 제품 ④ 최종제품의 원가분석자료 ⑤ 손해배상면책공문 ⑥ 원재료 인보이스 ⑦ 생산공정흐름도 ⑧ 제품의 견본/카탈로그	① 원가분석승인공문 ② Form AK(한-ASEAN CO) ③ 제품의 인보이스 ④ 세관수출신고서 ⑤ 원가분석요약서(Form BAK 1(f))

사전 원산지검증(1단계)의 경우 일단 통과하게 되면 2년간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다. 다만, 생산공정 또는 원재료 배합비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발급기관에 수정신고를 한다.

1단계 신청서류는 우리나라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유사한다. 특이사항은 신청자로부터 “손해배상면책공문”(Letter of Indemnity)을 제출받는 점인데, 이는 신청자가 작성한 원가분석상의 오류 또는 과실로 인하여 C/O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잘못 발급된 C/O로 인해 국제상사분쟁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급기관은 면책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경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말레이시아는 한-ASEAN 협정에 따라 ASEAN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수출될 경우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관련된 발급신청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출국에서 발급된 최초 원산지증명서
- ②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양식
- ③ 세관수출신고서
- ④ Monitoring Sheet(말레이시아 영내 반입 이후 처리내역)

다음으로 수출 선적 후 1년 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일반신청서류와 동일하다.

사후발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수입국 세관당국이 신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고 반려만 하며, 하자를 보완해 오면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신청행위 등에 대해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웹베이스 방식의 전자원산지발급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수출자의 원산지 정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경우에도 온라인 정보검색 기능을 통하여 신속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5월부터 수동발급 방식과 전자발급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행정혼선 방지를 위하여 발급번호 체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⁹⁹⁾

한편, 말레이시아 제조회협회¹⁰⁰⁾에서는 원산지 증명¹⁰¹⁾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제조회협회는 권위있는 경제기관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고 2,000개 이상의 제조 및 산업 서비스 관련회사를 대변하고 있다. 본 협회에서 설명한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서¹⁰²⁾

- ① 원산지증명서란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 주는 것
- ② 원산지증명서의 목적
 - 원산지를 증명하여 타국가의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
 - 신용장을 보충하는 무역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보충하는 서류로써 사용됨.

99) 관세청 내부 조사 자료

100) 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

101) 원문 부표 참조

③ 원산지 증명서 발행권자

FMM(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은 권한있는 기관으로 원산지를 발행하고 배서함. 원산지증명서의 배서는 모든 FMM 본사, 지사 및 대표기관에서 가능함.

④ FMM이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배서의 종류

- 말레이시아 제조 및 가공제품(예: 말레이시아 회사에서 태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제품)
- 재수출 물품(말레이시아 기업이 태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선적으로 말레이시아로 운송되어 타 국가로 재수출되는 것. 예:인도네시아)
- 제2의 국가에서 제3의 국가로 직접 선적되는 것(말레이시아 회사가 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상품을 운송한 것)
- 3자 배서(예: 태국 회사가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인도네시아로 판매함. 말레이시아 기업에서는 인도네시아 고객을 위해 태국회사를 대신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함.)
- 기타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의 증명(예: 원산지증명서 범위내의 배서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의 증명서(독점 대리점 계약서 또는 FMM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FMM에 의해 배서된 제조업자의 원산지 증명서)

⑤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

-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LI)을 FMM에 제출하면, LI은 회원들에게는 격년으로 1월 1일에 갱신이 가능하며 비회원들에게는 매해 갱신이 가능함. FMM은 LI에 인지를 찍는 것에 회원들에게는 15링깃, 비회원들에게는 17링깃을 받고 있음.
- 비회원들은 FMM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배서되기 전에 LI과 등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필요한 보충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함.

⑥ FMM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완성된 보충 서류와 함께 각각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는 FMM에 전달되면 20분 내에 처리가 가능함.

⑦ FMM 원산지증명서 비용

구분	회원	비회원
장외판매(sales over the counter)	묶음 당 10.00링깃(100 pcs)	묶음당 15.00 링깃(100 pcs)
우편판매	묶음 당 15.00링깃(100 pcs)	묶음당 20.00 링깃(100 pcs)

⑧ 원산지증명서 배서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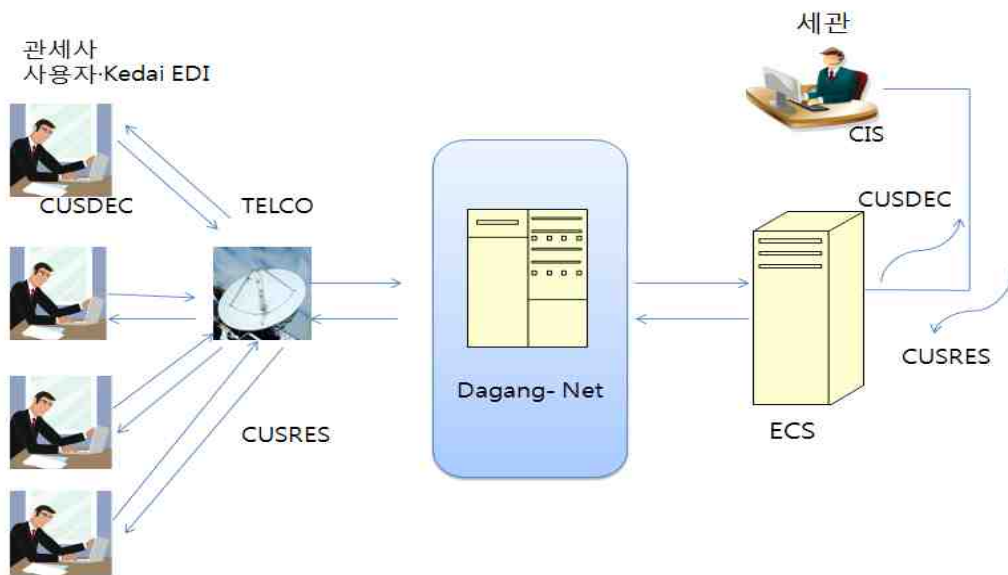
비용	회원	비회원
각 부당 서명	5링깃	10링깃
제3 송하인용 서명	10링깃	20링깃
모든 사소한 수정사항에 관한 복사본	5링깃	10링깃

다. 통관제도

수입통관시 CIS Dagang 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CUSDEC(말레이시아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한다. 수입통관과 관련된 법령은 관세법 78절, 79절, 81절, 87절이다. 우선, 78절 및 81절에 의하면 과세품의 경우 한 달 내에 통관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무세품의 경우 화물 도착 후 10내에 통관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79절 및 87절에서는 상품명세신고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CUSDEC을 통한 전자신고가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 CUSDEC을 통한 제출



102) http://www.fmm.org.my/p_ne_it.asp?NewsID=663&ThemeID=302&From=Theme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다.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 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②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③ Import (C1) Declaration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①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②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③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④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⑤ Packing List (상업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⑥ C1A Value Declaration Form

다음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통관 양식으로 <표 3-16>와 같이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는 말레이시아 내 물품 운송 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는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표 3-16>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통관 양식

구분	상세내역
Customs No. 1	수입물품의 신고
Customs No. 2	수출물품의 신고
Customs No. 3	말레이시아 내 운송 통관인도가격 물품에 관한 허가증
JKED No.4	내부, 외부 및 환적 적하목록
Customs No. 8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상품에 운송·이동·허가·신청서
Customs No. 9	보세창고에서 상품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증
FZ(I/E/T)	무역화물이동 신고

선적 물품이 도착하고 난 후나 도착 이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 검사 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공항은 1998 년 6 월 말 개장된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Senai(Johor Bahru), 동 말레이시아에 Kuching, Kota Kinabalu 등이 있다.

Kuching 공항은 동 말레이시아의 Sarawak 주에 위치해 있으며 Kuala Lumpur 를 출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新공항인 KLIA가 기존 수방 공항을 대체, 모든 항공 운행은 신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수방공항은 일부 특수 노선 공항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연 이용객 수가 2,500 만 명에 육박하여 10 억 달러를 들여 제 2청사도 완공했다. KLIA근처에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LCCT)도 건설되었다.

말레이시아에는 총 11개의 주요 Container Port 가 있으며 그 중 4개 Port는 말레이반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다. Bulk 화물의 경우 상 기 11 개 Port 외에 Terengganu에 Kemaman Port 가 있어 Liquid Bulk 화물은 경 우 Kemaman Port 이용율도 상당하다.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Port Kelang항은 제 1항구로 콰라룸푸르로부터 약 1시간 30분 거리 에 위치해 있으며 North Port와 West Port로 구성되어 있다.

KELANG 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46%를 차지하며 1999 년 10월부터 오픈한 조호주의 Tanjung Pelepas가 2대 항구로 전체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5. 한-ASEAN 협정문상 이행에 관한 사항

가. 협정문의 원산지 관련 부문

한-ASEAN FTA에서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원산지 기준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한-ASEAN FTA 부속서 3 제 2조)

첫째,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둘째,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으로서, 그 상품이 동 협정 부속서 3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

셋째,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속서 3

제 4조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¹⁰³⁾

가. 집적법

$$RVC = \frac{VOM}{FOB} \times 100\%$$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RVC = \frac{FOB - VNM}{FOB} \times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03) 당사국들에게 RVC의 계산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이 집적법이던 공제법이던지 융통성이 부

나. 통관

한-ASEAN FTA 협정문에서 이행에 관한 사항은 1조(통관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통관문제에 관한 당국 간의 협력이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들의 정책과 절차에 합치하게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였다.

우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또한,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통관절차와 관련된 최적 관행, 이행 및 위험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통관절차에 있어 정보기술의 적용과 감독 및 검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협력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관 법률과 규정을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통관 접촉선들 간에 통관절차를 교환하는 것을 보장한다.¹⁰⁴⁾

다. 원산지 증명제도

원산지증명의 경우 ASEAN의 경우 Form AK의 공통 증명서식이므로 FTA 관련하여 베트남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규정 역시 ASEAN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여됨.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함. 계산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방식의 채택하기 적어도 6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됨.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 검증은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104) 부속서 경제협력>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회원국의 정부가 발급한다.¹⁰⁵⁾ 회원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정부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모든 다른 회원국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 사용되는 견본 서명과 Official Seals의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 유포할 10세트의 정보와 견본을 ASEAN 사무국에 제출한다. ASEAN 사무국이 동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된 관계자의 견본서명과 관계자의 인증은 매년 갱신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는 수출하는 시점에 수출 회원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의해서 발행되어진다. 혹은 수출된 생산품이 원산지 규정하에서 그 회원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을 때 바로 발행되어지기도 한다.

특혜대우를 위한 조건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된 정부당국은 모든 입증서류증거를 요청하거나 모든 검사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¹⁰⁶⁾

ASEAN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상의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브루나이(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② 캄보디아(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③ 인도네시아(통상부)–Ministry of trade
- ④ 라오스(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⑤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⑥ 미얀마(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⑦ 필리핀(세관)–Bureau of customs
- ⑧ 싱가포르(세관)–Singapore of customs
- ⑨ 베트남(통상부)–Ministry of trade
- ⑩ 태 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105) AFTA, Rule 1

106) AFTA, Rule 3

한-ASEAN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의해 규정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4조~제8조에, 제출에 대해서는 제9~12조에 수록되어 있다.

4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기관의 보장사항 등에 대한 것이다.

5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형식과, 서류 양식, 규정언어 등 작성방법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6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7조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시기와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 및 소급발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8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9조~12조까지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0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11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13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록보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수출 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물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라.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4.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이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분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는 제3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5.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려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 표기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근거는 적법하게 발급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7.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하고 특혜관세대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 작성한 해명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사유에 대한 해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시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제7조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는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3. 일방 당사국의 요청시 당사국은 본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원산지 증명서를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 란에 “진정 등본”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마련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문제로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기록보관 의무

제13조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하여야 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라. 원산지 조사(검증)

1) 한-ASEAN FTA 협정문에서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규정

검증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²⁾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¹⁰⁷⁾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 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수행에 앞서,

가. 수입 당사국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
- (2)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 (3)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 (4)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이름
- (3) 현지조사 방문예정일
- (4) 현지조사 대상물품을 포함한 방문예정 현지조사의 범위
- (5)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현지조사 대상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3.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재개된다.

5.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물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물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현지조사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현지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최장 6월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 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2) AFTA에서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규정

ASEAN의 원산지 검증 방법에는 소급검사와 방문검증이 있다.¹⁰⁷⁾ 검증방법별 검증절차에는 소급검사와 방문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소급검사는 수입회원국은 무작위로 소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심되는 상품과 특정부분에 대한 서류의 신빙성과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이 될 때 소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증명서 발행당국은 수출날짜에 명시된 6개월의 기간 내에 현재 비용과 가격에 기초한 생산자의 비용계산서에 대한 소급검사를 실시한다. 무작위적 기초에 근거해 소급검사가 요청되어지지 않는다면, 소급검사에 대한 요청은 관련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07) 6월 이내의 기간과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일 전후 또는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 사이의 6월의 기간을 선정할 수 있음.

108) AFTA, Rule 17

무작위적 기초하에 요청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에 주어진 개개인의 항목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제와 추가적 자료가 명시된다.

소급검사 요청을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정부당국은 그 요청에 즉시 응답하고 소급검사 요청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수입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증명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조약에 대한 조항을 보류할 수 있다.

실질적 과정과 대상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소급검사 과정은 6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수입회원국이 소급검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수출국회원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검증시에는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방문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다음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① 방문할 예전인 사업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② 검증방문이 실시될 지역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 등
 - * 방문검정 사전통지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통지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
- ② 방문대상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 ③ 예정된 실사 일자 및 장소
- ④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포함함.

검증방문 대상인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허가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통지 회원국은 검증방문을 받았어야 하는 상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통지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통지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양 당사국들의 합의하는 기간 동안 예정된 실사를 연기할 수 있다. 검증방문과정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4장 한국, 미국, ASEAN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분석

제 1 절 FTA 이행 관련 법 제도 비교

1. FTA 이행법

가. 한국

2005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1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추후에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향후 체결된 모든 FTA에 포함하게 될 계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 절차 및 계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법령의 구성체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과 FTA의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규정하고, FTA별 특이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나누어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향후 체결될 국가들과의 FTA 주요 내용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¹⁰⁹⁾

109) 성윤갑(2007), FTA 관세특례법령

또한 국내 이행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며, 국가신뢰도 향상 및 시장개방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TA관세 특례법의 제정은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납세편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UR과 WTO 체제하에서 규율받던 기존의 무역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효율적인 법체계를 정비한 결과라 하겠다.

나. 미국· ASEAN 4개국

우선 FTA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FTA체결시마다 특례법을 제정하여 왔다.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미국-칠레, 미국-호주 FTA 등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하였다. 한-미 FTA에서도 이행법을 제정하였고, 본 법령은 2011년 10월 12일 미국의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미 FTA 이행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한-미 FTA 이행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협정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 및 사항을 2장에서는 관세조항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다. 특히, 2장의 202절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4-1> 한-미 FTA 이행법

장	절
1장 협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 및 승인	101~107
2장 관세 조항	201~208
3장 수입의 경감(RELIEF FROM IMPORTS)	301
Subtitle A 협정에서 관세의 면제	311 ~316
Subtitle B 자동차의 세이프가드 조치	321

장	절
Subtitle C 직물 및 의류의 세이프가드 조치	331 ~338
Subtitle D 1974 무역법의 2장하에서의 사례	341
4장 조달	401
5장 상채	501~505

다음으로 ASEAN 4개국의 경우 각국에서는 FTA의 이행과 관련한 특례법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한-ASEAN FTA에 대응하여 베트남 재정부에서 관세율을 변경하였다. 베트남의 관세율은 수출입관세법에 의하여 일반 관세율, 특혜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FTA 협정에 의한 세율변경은 동법에 의거하여 변경·발표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베트남과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09년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합의된 FTA 관세율 조정 스케줄에 맞추어 인도네시아 관세율을 변경한 것이다.

다음 <표 4-2>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ASEAN 4개국의 FTA 이행법에 관한 사항을 비교표로 나타내었다.

<표 4-2> 한국과 미국·ASEAN 4개국의 FTA 이행법 비교

구 분	FTA 이행관련 법 규정	기타사항
한국	FTA 관세 특례법	-
미국	한-미 FTA 이행법	-
ASEAN 4개국	관세법	* 베트남 특혜수입 관세율 규정 * 인도네시아 FTA 관세율 조정 스케줄에 맞추어 관세율 변경

제 2 절 원산지 증명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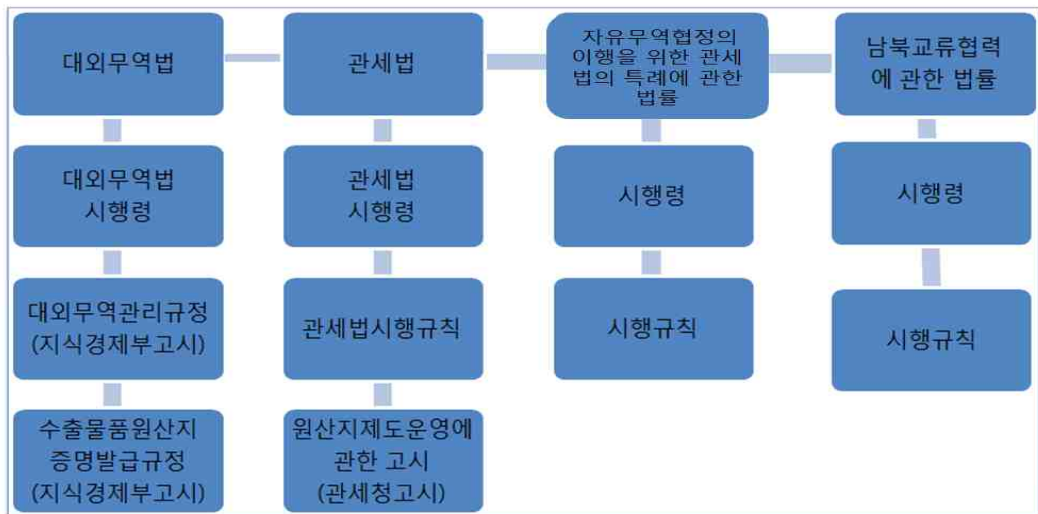
1. 원산지증명 관련 이행 체계

가. 한국

한국의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된 국내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4개 법률이다.

FTA 관세 특례법 제정 이전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수출물품원산지 증명발급규정을,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원산지 증명관련체계를 각각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FTA 관세 특례법 체제 성립 이후 원산지 부문은 동법에 의하게 되었다.

<그림 4-1> 원산지 증명제도의 입법체계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해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규정은 204절(잘못된 정보의 공개, 허위 원산지 증명서, 특혜관세의 미허용)과 206절(요구사항의 서류보존)이다.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204절에서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허위, 중과실, 과실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6절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수출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기록 및 보충서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한 KFTA(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란 한-미 FTA 협정문 제 6.15 조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로 해당 제품은 이 협정하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및 완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복사본을 포함하여 제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보충서류 및 모든 기록에 대해 검사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무장관이 규정한 법과 규정사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후 적어도 5년 동안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서류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에 반영 하여 법체계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제130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 19) Part 134에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NAFTA 및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덤핑방지법, 1994 GATT 실시법, BUY American법, 연방거래위원회규칙, 자동차라벨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도 미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원산지확인에 관한 절차도 관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협정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협정별로 의회에서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FTA의 시행을 위해서는 FTA별 이행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쌍방적 특혜규정으로서 NAFTA 및 그 이행법,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이 있고, 일방적 특혜규정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카브리해 연안국에 대한 특혜제도, 미국 속령 특혜 제도상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NAFTA 출범시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1993)을 제정하여 특별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존의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은 국내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사용하였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협정 제4장에 원산지결정의 공통기준을 두었고, 협정 부속서 4와 이행법 3332조, 이행규칙(19CFR 제181.131조 및 부속서)에서 품목별 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행규칙(19CFR 제181.111조 내지 제181.116조)에는 원산지증명, 원산지확인, 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 원산지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행규칙(19CFR 제102.0 내지 제102.21조)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다. ASEAN 4개국

우선 협정문상의 사항을 살펴보면 한-ASEAN 협정문 부속서3의 부록1에서는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1조(정의), 제2조~제3조(발급기관), 제4조~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9조~제12조(제출), 제13조(기록 보관 의무)에서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은 각각의 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을 공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규정을 대통령령, 무역부령 및 증명서 발급기관 고시에서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ASEAN간의 원산지 증명서는 Form D, 한-ASEAN FTA는 Form AK, 중-ASEAN FTA는 Form E, 인도-ASEAN FTA는 Form AI이며, 일본-인도네시아 EPA는 Form JI-EPA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1967년 관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근거를 두지 않고, 국제통상산업부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ASEAN 4개국이 FTA 협정문상에서 규정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흡수하는 방식은 FTA 이행 법령을 제정하기 보다는 각각의 FTA에 대하여 원산지규정, 고시, 내부지침을 공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ASEAN이 체결한 각각의 FTA에 대해 ASEAN의 공통적인 원산지증명 양식을 도입하고 있다.

2.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가. 한국

한국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발급 방식은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즉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물품에 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체계이다.

일찍이 원산지증명서의 기관 발급은 FTA 협정 이전의 부문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여 왔다. 이는 FTA와 관계없이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문으로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된다. 발급 사유는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표시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의 목적으로 알려졌다.

한편 FTA 협정에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발급은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협정 등이 그것이다. 협정에 의해 FTA용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발급제도 역시 FTA 협정상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등에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는 신청구분(신규, 재발급, 정정, 소급 등), 신청인(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기타, 상호 및 사업자 번호), 원산지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적용 FTA 협정, 수출자 정보(상호,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 E-mail), 생산자 정보, 수입자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 번호, 수출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기준(수출신고번호, 금액(FOB), 수출신고필증, HS, 품명·규격, 원산지기준 및 충족 여부, 부가가치 비율 및 비율계산, 특혜 기준 등), 비원산지재료 내역(수출신고필

증, HS, 품명·규격, 금액, 원산지, 비고), 운송수단/선(편)명(선박, 항공기, 기타), 적재항(출항일자), 목적국/항구, 포장기호/개수, 총중량, 송품장 번호/일자, 원산지 증명서 특례(제3국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개성공업지구생산물품) 등이다.

<표 4-3> 원산지 증명서의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특 정	· FTA와 관계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FTA용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도록 규정	· FTA에 따라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 예를 들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에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
협 정	한-싱 FTA, 한-ASEAN FTA, 한-인도 FTA	한-칠레 FTA, 한-EFTA FTA(스위스産치즈는 기관발급), 한-미FTA, 한-EU FTA

나. 미국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서는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율발급 양식을 명시하고 있다.(제 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다만, 증명은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음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FTA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 권고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④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
-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 ⑧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우리나라가 맺은 FTA의 경우 수출자(생산자)만 발급할 수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도 발행 가능하다. 다만, 수입자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확인 필요하다.(근거법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또한,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동일한 물건이 반복하여 수입될 경우 1년간 포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다. ASEAN 4개국

한-ASEAN FTA에서는 기관발급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ASEAN FTA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 상의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브루나이(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② 캄보디아(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③ 인도네시아(통상부)—Ministry of trade
- ④ 라오스(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⑤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⑥ 미얀마(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⑦ 필리핀(세관)—Bureau of customs
- ⑧ 싱가포르(세관)—Singapore of customs
- ⑨ 베트남(통상부)—Ministry of trade
- ⑩ 태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또한, 베트남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각 시, 성의 수출입관리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의 위임근거에 따라 전국 85개 지방발급소에서 발급하며, 중앙정부기관인 통상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수라비야 등 28개 발급소에서 전자발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국제통상산업부의 내부지침에 따라 동 기관 및 산하 지역사무소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의 지역사무소는 쿠알라룸푸르(중부), 페낭(북부), 키탄(동부), 조호바루(남부)·코타키나발루 등으로 4개 지역 발급소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라. 한국, 미국, ASEAN 4개국의 원산지증명 이행제도 비교

앞에서 언급한 한국과 미국, ASEAN의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이행법규를 다음과 같이 <표 4-4>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4-4> 한국과 미국·ASEAN 4개국 원산지증명 관련 이행법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¹¹⁰⁾	ASEAN 4개국
법제도	원산지증명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한-미 FTA 이행법	A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
	FTA 원산지증명 관련 이행 법령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유 (한-미 FTA 이행법)	유 (A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
	특이사항	원산지와 관련한 각지 다른 4개의 법령에서 원산지를 다루고 있음	이행규칙 (CFR 181.11~181.23)에서 원산지 증명에 관해 다루고 있음.	원산지증명(Form AK)에 관한 발급규정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협정별로 상이함)	자율발급 (NAFTA, 미-싱가포르 FTA, 미-호주 FTA)	기관발급
	발급 기관	상공회의소, 세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 회원국의 정부 * 베트남 각 시성, 인도네시아 전국 85개 지방발급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및 4개 지역사무소
	수록 내용 특징	원산지 인증 수출자 해당 여부, 비원산지 재료내역,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등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및 경로, 원산지기준, 송장번호 및 일자,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

110) 한-미 FTA 이행법 사항 및 한-미 FTA 협정문 내용에 한정함.

<표 4-4>의 정리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FTA 특례법으로 FTA 이행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 법 내에서 원산지 증명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각각의 FTA에 대하여 FTA 이행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 이행법을 적용 받게 된다.

동법에는 원산지와 관련된 한-미 FTA 협정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ASEAN의 경우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고시, 내부지침을 공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원산지증명관련 법령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서 원산지를 다루고 있는데, FTA와 관련하여 총괄하는 법은 FTA 관세 특례법이다.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규정은 204절(허위정보의 공개, 허위 원산지 증명서, 특혜관세의 미허용)과 206절(요구사항의 서류보존)이다. 참고로 미국의 관세법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해 살펴보면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ASEAN 4개국의 경우, AFTA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법규 및 베트남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Form AK)에 관한 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¹¹¹⁾

둘째, 한국의 원산지 증명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NAFTA와 칠레 FTA에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1) 본 규정은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의(여기서는 “AKFTA 협정”으로 명시함)에 관한 규정으로 통일증명서식을 사용하는 ASEAN 타국가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일 것으로 판단됨.

미-칠레 FTA의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물품의 생산자가 아닐 경우,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나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지식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수출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¹¹²⁾

한편 ASEAN의 경우 AFTA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권자는 수출 회원국의 정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ASEAN은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통상관련 기관을 발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원산지 증명관련 기타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 기관발급시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기관 발급대상 협정은 한-싱가포르 및 한-ASEAN FTA, 한-인도 CEPA에 해당된다.

베트남에도 원산지증명서를 관리 및 발급할 수 있는 eCOsys network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사항에 관한 것은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Form A C/O) 발급규정의 1장 일반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112) 이제현(2010),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3절 심사제도 비교

1. 한국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증제도는 크게는 특혜원산지인가, 비특혜원산지인가에 따라 그 심사 내용이 구분된다.

특혜원산지 검증제도는 각각의 협정에 의거하여 특혜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검증하는 반면,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검증제도는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 반덤핑, 상계관세, 수량제한, 할당관세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국가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등 그 내용이 다르다.

FTA 특혜 협정에 대한 근거법은 FTA관세특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다. 이외의 협정에 대한 검증제도는 관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남북교류협력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해서 시행된다.

<표 4-5> 우리나라 원산지 조사제도

구분		주요 내용
특혜 원산지	FTA 특혜	FTA 특혜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일반특혜	APTA 등 3개 협정 및 최빈국 특혜요건 충족 여부
	남북교역특혜	북한산 반입물품 특혜요건 충족 여부 심사
비특혜원산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심사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대상 국가산 여부 심사 수량제한(Quota) · 긴급수입제한(Safeguards) · 할당관세 부과대상 국가산 여부 심사

각 협정과 관련한 국내이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 4-6> 협정과 관련한 국내이행법령

협정	대상 협정	국내이행법령
FTA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일반특혜 협정	아-태 무역협정 APTA	관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 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 정 GSTP	
	개도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TNDC	
	최빈개도국특혜관세 공여 규정 LDC	
남북	남북원산지합의서	남북교류협력법

한편 FTA 협정과 관련된 검증제도는 기본적으로 FTA 관세 특례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검증 방식과 조사주체, 회신 기간 등 행정적인 부분은 각 협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를 따른다.

협정별 검증방식 크게는 직접 검증 방식과 간접 검증 방식으로 나뉜다. 그리고 섬유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는 사례(한-미 FTA)와 선 간접 검증 후 직접검증하는 한-인도 CEPA유형도 있다. 그리고 EU와 EFTA는 제한적인 간접검증 방식을 취한다. 페루의 경우 단계적으로 직접검증 제도를 5년간 시행한 후 간접검증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원산지 검증 조사의 주체는 대체로 수입국의 세관, 수출국 세관, 원산지 발급기관 등으로 나뉜다. 대체로 수입국 세관에 의하나, EU와 EFTA는 수입국 세관 직원 참여 하에 수출국 세관이 현지 조사 주체가 된다. ASEAN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이를 대행한다.

회신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거나, 30일에서 10개월 까지 다양하다. 각 협정에서는 원산지 검증의 결과에 대해 미회신시 협정관세를 불인정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칠레,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 협정상 향후 조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표 4-7> 협정별 원산지 검증제도 차이점

구분	검증방식	현지조사주체	회신기간	미회신시 조치
한-칠레 FTA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없음	없음
한-싱가포르 FTA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30일	없음
한-EFTA FTA	제한적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직원 참여)	10개월	협정관세 불인정
한-ASEAN FTA	간접검증	원산지 발급기관	6개월	협정관세 불인정
한-미 FTA	직접검증 단, 섬유·의류상품은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	없음	없음
한-인도 CEPA	선 간접검증후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3개월	협정관세 불인정
한-EU FTA	제한적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직원 참여)	10월	협정관세 불인정
한-페루 FTA	직접검증,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	150일	협정관세 배제

2. 미국

미국의 원산지 검증대상은 미 세관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경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NAFTA 발효 초기 미 관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는 FTA 발효에 따른 혜택이 큰 자동차 산업과 섬유 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CBP가 징수한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세관은 조사대상자를 선별한 이후 원산지 검증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자체 명세서, 원산지 결정방법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관 수입담당자가 직접 수출입자를 방문하기도 한다. 세관 수입담당자의 현지방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증팀이 구성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다음 <표 4-9>에서 나타나듯이 서면검증은 60일, 현장실사는 2~3주 동안 이루어지며,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통보절차를 포함하여 미 세관의 검증절차는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개요

단계	세부사항
목적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로 세수 확보, 부정경쟁 방지, 국내산업 보호 등
대상	위험분야로 집중 관리 중인 PTI 관련 산업 위주로 선정되며,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등이 해당함
방법	- 1단계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 2단계 자재명세서(BOM),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결정방법 제출 요구 - 3단계 수입담당자의 수출입자 현장방문 - 4단계 검증팀에 의한 수출입 현장실사 ※ 1~3단계는 일선 세관(port of entry)에서, 4단계는 9개의 본부 세관에서 담당하며, 검증팀은 검증대상 회사 규모에 따라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심사, 수입, 전산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됨
목표	검증과정에서 불충분 공정, 직접운송의 원칙, 세번변경, 부가가치 산출, 수입관세 적용 등이 원산지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함
기간	서면 60일, 현장실사 2~3주, 종합심사 7개월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 세관이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답변해야 한다.

생산자나 수출자가 송부된 서면질의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 세관은 증빙서류 요청과 함께 서면질의서를 재송부하고 30일 안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일례로 NAFTA의 원산지 검증 서면질의서(CBP Form 446)는 생산과정,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추가적 질문, 보증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 재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가가치 산출방법, 공급자 리스트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다음은 NA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CBP Form 446)¹¹³⁾의 내용이다.

- ① 생산과정: 검증받을 제품 또는 재료의 생산과정에 대해 기재
- ②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비원산지 재료 또는 부품 및 HS 코드 기재(HS 6단위 혹은 필요한 경우 HS 8단위)
- ③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증명서, 진술서 등 증빙자료의 유형, 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 ④ 추가 질문: 부품 및 재료의 세번분류, 미소기준 적용여부, 원산지 대체가능재료의 사용 여부 및 판정방법, 부가가치(RVC) 기준 및 산출방법, RVC 누적기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공급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 ⑤ 보증: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보증하고 허위나 관련정보 누락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명하고 직위, 회사 이름, 연락처, 날짜 등을 기재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현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미 세관은 사전에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 세관 등에 현지방문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고 해당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을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수출자와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지방문조사에서는 회사관계자 인터뷰, 회계·구매·재고관리시스템 심사, 역내 부가가치(RVC) 등에 대한 질의서와 서류의 일치 여부, 공급자 확인서 등의 자료 보관장소 확인, 재료 공급자에 대한 심사 수행 등 원산지 결정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검증을 실시한다. 일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는 NAFTA 체제하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원산지 검증절차의 적용을 위해 NAFTA 검증 매뉴얼(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을 작성하고 유사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13) 부표 8 참조

NAFTA 검증 매뉴얼은 각국의 검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지 방문조사에 중점을 두어 검증단계별 목표 및 절차, 권고하는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 세관은 검증 종료 후 60일 안에 검증대상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보하기 전에 검증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는 30일 안에 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세관은 재검토 작업을 거쳐 검증결과에 대해 최종 서면통보를 한다.

3. ASEAN 4개국

ASEAN의 원산지 검증 방법에는 소급검사와 방문검증이 있다.¹¹⁴⁾

소급검사는 수입회원국은 무작위로 소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심되는 상품과 특정부분에 대한 서류의 신빙성과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이 될 때 소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증명서 발행당국은 수출날짜에 명시된 6개월의 기간 내에 현재 비용과 가격에 기초한 생산자의 비용계산서에 대한 소급검사를 실시한다. 무작위적 기초에 근거해 소급검사가 요청되어지지 않는다면, 소급검사에 대한 요청은 관련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작위적 기초 하에 요청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에 주어진 개개인의 항목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전제와 추가적 자료가 명시된다.

114) AFTA, Rule 17

소급검사 요청을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정부당국은 그 요청에 즉시 응답하고 소급검사 요청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수입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증명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조약에 대한 조항을 보류할 수 있다.

실질적 과정과 대상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소급검사 과정은 6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수입회원국이 소급검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수출국회원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검증시에는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방문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① 방문할 예전인 사업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② 검증방문이 실시될 지역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 등
- *방문검정 사전통지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통지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
 - ② 방문대상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 ③ 예정된 실사 일자 및 장소
 - ④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포함한다.

검증방문 대상인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허가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통지 회원국은 검증방문을 받았어야 하는 상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통지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통지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양 당사국들의 합의하는 기간 동안 예정된 실사를 연기할 수 있다. 검증방문과정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¹¹⁵⁾

115) AFTA, Rule 17

4. 한국, 미국, ASEAN 4개국의 심사제도 비교

첫째, 한국의 원산지 검증제도 근거법은 FTA 관세 특례법, 관세법,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다. FTA 체결 이전 관세법과 각 특혜관세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나, FTA 관세 특례법 제정 이후 동 법에 의거하고 있다.

둘째, 검증제도의 시행 방식은 한국의 경우 크게 특혜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제도로 구분되는데, 미국 또한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로 구분되어 있다.

셋째, 검증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별로 상이한 반면, 미국의 경우 직접검증 방식을 ASEAN의 경우는 간접검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4-9> 우리나라와 미국, ASEAN 심사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ASEAN 4개국
근거법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 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남북교류협력법	NAFTA 심사메뉴얼	AFTA 협정문, 한-ASEAN FTA 협정문
분류방식	특혜원산지 비특혜원산지	-	-
검증 방식	협정별로 상이	협정별로 상이	간접검증 ¹¹⁶⁾

116) 한-ASEAN FTA에 한함.

제4절 기타제도-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1.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있다. 본 제도는 관세법 제 86조에 의한 제도로써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HS번호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확정받는 제도이다. 신청인은 수출입 신고인 및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법인이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단, 자료보완기간은 제외된다)이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에 서류 및 견본을 첨부한다. 해당 서류는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0>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구분	내역
공통	① 신청대상물품 견본 - 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시 소매포장 상태의 것 2점 - 벌크상 농산물 등 : 분말은 약 300g, 액상은 약 300ml - 기계류 : 수출입시 소매포장 상태의 것 1점. 다만, 가격·부파·중량이 커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2부와 사진2매 및 카탈로그 제출 ②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2부 ③ 제조회사의 성분 함량표 및 제조 공정도 각 2부 -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요소(기기)의 명칭과 기능 및 작동원리 설명서 2부, Block-diagram 2부 ④ 해당 물품의 구체적 용도설명서 2부
개별	분석을 요하는 물품: 1품목당 3만원 수수료

다음 단계는 신청대상 물품이 분석을 요하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는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한다.

2. ASEAN 4개국-베트남

베트남에는 품목분류 사전확인 절차가 있다. 세관신고인은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세기관으로부터 세관신고, 품목분류, 세율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감시하에 물품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거나 견본을 추출할 수 있으며, 관세기관에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에 대한 안내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견본,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부가 시장안정 및 생산활동을 보호하는 세율적용 안내문건을 발행한다.

품목분류 사전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조건으로는 수출입물품 목록·세율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 기술장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설명서, 재료, 사진, 제품형태, 기타 자료에 근거해서 분류가 가능한 물품, 관세총국에 의해 결정된 적이 없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상세설명 첨부), 기술자료, 사진, 카탈로그 등, 물품견본(있는 경우에 한함)이 필요하다. 이 때 사용언어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한다.

심사절차는 분류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서류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이 때는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이내이다. 마지막 단계로 결정서가 송부되며, 서류보완일로부터 30근무일이내 해당된다. 결정서 사용기한은 만 365일이며, 관련법령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또한, 물품에 대한 분석·분류는 필요할 경우 통관중, 통관후에도 실시가 가능하다.

제5장 결 론

정부는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도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에 의해 서명된 이후 2011년 양측의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발효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싱가포르 FTA협정을 비롯하여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FTA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이 후 협정에서는 별도의 입법 제·개정 없이 대부분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협정의 신속한 발효와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협정우선적용원칙”을 명시하여 FTA 협상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FTA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의 수용방식을 달리해 왔다. 우선,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FTA 이행법을 제정하였다. EU와 인도의 경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수용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FTA와 관련한 일부 규정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발효예정인 미국과 2007년 기 발효된 ASEAN 4개국의 FTA이행체계 및 심사제도에 관해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FTA 이행법과 관련하여 NAFTA를 기본 모델로 하여 개별 협정마다 이행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인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미국-칠레, 미국-호주 FTA에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한-미 FTA의 경우도 협정문을 반영한 개별 이행법이 제정·통과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FTA 관세 특례법은 FTA의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규정하고 FTA별 특이사항과 기술적

인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나누어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반면 미국은 개별 협정마다 이행법을 달리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FTA 이행법 체계와 상이한 점이다.

ASEAN의 경우 기존에 ASEAN이 체결한 FTA에 대응하여 공동적인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EU와 같이 공동체가 공동관세법을 제정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각각의 FTA 협정에 대하여 각국의 관세법, 관세율 변경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협정에 의거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수준이었다. 즉, ASEAN 4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FTA 이행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관세법 중심으로 FTA를 이행하고 있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ASEAN FTA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09년 재무부 법령(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합의된 FTA 관세율 조정 스케줄에 맞추어 자국의 관세율을 변경한 것이다.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한-ASEAN FTA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재정부에서 특혜 수입 관세율을 규정하였다. 태국의 경우 한-ASEAN FTA이행에 관한 절차는 재무장관 고시(세율에 관한 사항) 및 관세청장 고시(세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르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역시 관세율 조정과 원산지 규정 등 FTA 특혜 심사제도를 각각의 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의 통관제도, 원산지증명(이행체계)과 원산지 조사(심사제도)와 ASEAN 4개국의 통관제도,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이행 및 심사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원산지 증명 발급 방식은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을 모두 운용하고 있지만, 협정에 따라 다른 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타 국가와 체결한 NAFTA, 미-싱가포르 FTA, 미-호주 FTA에서 자율발급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도 협정문 상에서 자율발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품목분류 및 품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ASEAN의 경우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ASEAN FTA의 경우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협의 하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특혜 원산지 대우를 위한 AK양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 개별국가별로 증명서 상의 발급기관을 두고 있었는데, 베트남(통상부), 태국(상무부),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인도네시아(통상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무역부령 및 증명서발급기관 고시에서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위임근거에 따라 전국 85개 지방 발급소에서 발급하며, 중앙정부기관인 통상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수라비야 등 28개 발급소에서 전자발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초보 단계이긴 하나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출전 원산지 확인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정교한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수출전에 상세한 원가분석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서식은 우리나라가 타국가에 비해 기재사항이 많은 편이었다. 특히 미국은 자율발급양식으로 8가지의 정보에 관한 몇 가지 사항만 충족하면 되므로 작성사항이 다소 간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율발급에 따른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책임 소재의 문제 등 원산지 증명에 대한 사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기타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시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관리 및 발급할 수 있는 eCOsys network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었다.

원산지조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협정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취한다. 미국(한-미 FTA)의 경우 직접검증을 채택¹¹⁷⁾하였고 ASEAN의 경우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NAFTA 검증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고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검증 대상은 미 세관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경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물품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전적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행 및 심사와 관련한 기타제도로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에서 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가인 미국의 경우 FTA 이행법령, 이행 제도 및 심사제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사대상국인 ASEAN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은 FTA와 관련한 법체계 및 이행 및 심사제도를 구성해 나가는 단계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ASEAN 개별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세법 중심으로 FTA를 이행·시행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FTA 관세 특례법 제도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각각의 FTA에 대하여 이행법안을 제정하는 미국과는 차별적인 형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FTA 특례법제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부각 되

117) 섬유의 경우 간접검증

고, 기본법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문이 있어 실제 행정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문도 일부 존재한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을 추진전략으로 추구하였고, 기본법 형태인 FTA 관세 특례법을 제정하여 FTA 이행에 관한 법적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이로 인해 제도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ASEAN 및 인도에 비해서 FTA의 이행 및 심사 제도가 체계적인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FTA를 통해 개방을 추진해온 선진국에 비해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FTA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FTA 이행제도는 초기 도입 단계에서 중기 활용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원산지 증명,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상대국의 검증에 대응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관심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록]

<부표 1>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AK-FTA 원산지 증명서 영문 및 국문서식

1)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illegible]

2-1) AK-FTA 원산지 증명서(영문)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BRUNEI DARUSSALAM
REPUBLIC OF KOREA
MYANMAR
THAILAND

CAMBODIA
LAOS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K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and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CTC" "WO-AK"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EXPORTER: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2-2) AK-FTA 원산지 증명서(국문)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 번호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별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번호) 서신 번호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4. 담당자란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특별관세 에 의한 특별대우 ☐ 특별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 요) 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5. 연번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물명(적용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 (뒷면 참조)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액(FOB)	10. 송장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별관세 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원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_____ 장소, 일자,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13. ☐ 제 6 조 송장 ☐ 전 시 ☐ 특별 원산지 증명서					

필면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별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들

보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다.	

2. 조건 : ANFTA의 특별관세를 누락되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출품된 품종은 .

(i) 목적국의 말라벌을 자격이 있는 품종과 일치해야 한다.

(ii) ANFTA의 부속서 8(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ANFTA 부속서 8(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증명에 대해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안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 제11항의 최종 국가내 생산 또는 제조과정	제8안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품목	"WO"
(나) ANFTA 부속서 8(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품목	"OTH" or "RVC 40%"
(다) 특별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 세관번호 Tariff Classification	"OTO"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품목 Y	"WO-A"
- 역내부가가치 (RVC)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 예 "RVC 45%"
- 역내부가가치 + 세관번호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결합규정 : 예, "OTH + RVC 40%"
- 특정 증명	- 특정 증명
(라) 제6조를 충족하는 품목	"제6조"

4. 라 증명이 요건을 충족할 가 : 발송하는 모든 품종은 라 제법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품종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제도 그러하다.

5. 증명 : 증명의 명세는 그 증명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증명을 적절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제조자 이름,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6. 무역무조체제 번호 : 무역무조체제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7. 수출자 : 제11항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8. 원산지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별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항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9. 제8국 증명 : 제8국에 의해 증명이 발행되는 경우, "제8국 증명" 안에 (√) 도 표시한다. 그리고 증명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항에 기재한다.

10. 전시증명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20조에 따라, 제8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국의 말라벌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발행 당사국의 말라벌로 수입을 위해 판매 될 경우, "전시증명"안에 (√)도 표시된다.

<부표 2 > AFTA(ASEAN)/AC-FTA(중-ASEAN) 원산지 증명서

1) AFTA 원산지 증명서(Form D)

ORIGINAL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_____ Vessel's Name/Aircraft, etc.: _____ Port of Discharge: _____	Reference No. _____ ASEAN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D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r Authorised Signatory of the Exporting Country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3. Item number</th> <th style="width: 15%;">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th> <th style="width: 30%;">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th> <th style="width: 15%;">8. Origin criteria (see Notes overleaf)</th> <th style="width: 15%;">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th> <th style="width: 15%;">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th> </tr> <tr> <td style="height: 15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3.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a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JO WANG TOYUURES SUN PH (HONG KONG) No. 1, Jett Pagan HSTK, Suiyer UT HOON GEMINE Industrial Park 4710 JETT SUNG SUAYE MALAYSIA Tel: +603-20450000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_____
3.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a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3. ☐ Third-Country Involving ☐ Accumulation ☐ Back-to-back C/O ☐ Partial Cumulative ☐ Exclusion ☐ De Minimis ☐ Reconstitutivel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_____												

2) AC-FTA 원산지 증명서(Form E)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1. Product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_____ ASEAN-CHIN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2. Product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FORM E Issued in _____ (Country) See Overleaf Notes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_____ Vessel's name/Aircraft etc. _____ Port of Discharge _____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Party _____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product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Party)	8. Origin criteria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product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products in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for the product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_____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Issued Retroactively ☐ Exhibition ☐ Movement Certificate ☐ Third Party Invoicing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YANMAR
THAILAND

CAMBODIA
LAOS
PHILIPPINES
VIETNAM

CHINA
MALAYSIA
SINGAPORE

2. CONDITIONS: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CFTA Preferential Tariff are that product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that the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from any ACFTA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but transport that involves passing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non-ACFTA Parties, is also accepted provided that any intermediate transi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arises only for geographic reasons or transportation requirements; and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given in the next paragraph.

3. ORIGIN CRITERIA: For exports to the above mentioned countries to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the requirement is that either:

- (i) The products wholly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y as defined in Rule 3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 (ii) Subject to sub-paragraph (i) above,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Rule 2 (b)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products worked on and processed as a result of which the total value of the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ACFTA Parties or of undetermined origin used does not exceed 80%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 produced or obtained and the final process of the manufacture is performed within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 (iii)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Rule 2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and which are used in a Party as inputs for a finished product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in another Party/Parties shall be considered as a product originating in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product has taken place provided that the aggregate ACFTA content of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or
- (iv) Products which satisfy the Product Specific Rules provided for in Attachment B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to which sufficient transform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 Party.

If the products qualify under the above criteria,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on the basis of which he claims that his products qualify for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Products wholly produced in the country of exportation (see paragraph 3 (i) above)	"WO"
(b) Products worked upon but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Party which were produc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ii) above	Percentage of single country content, example 40%
(c) Products worked upon but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Party which were produc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iii) above	Percentage of ACFTA cumulative content, example 40%
(d) Products satisfied the Product Specific Rules (PSR)	"PSR"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product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PRODUCTS: The description of product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product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The Harmonis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In the case of MC, the term "Exporter" also includes the exporter in the intermediate Party.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reatment is accorded.
9. Movement Certificate: In cases of Movement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Rule 1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Movement Certificate" in Box 13 should be ticked (✓). The name of original Issuing Authorities of the Party, date of the issuance and the reference number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Form E) to be indicated in Box 13.
10. THIRD PART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Party Invoicing" in Box 13 shall be ticked (✓). The invoice number shall be indicated in Box 10.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1. EXHIBITIONS: In cases where products are sent from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Part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2 of Attachment A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the "Exhibitions" in Box 13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2. ISSUED RETROACTIVELY: In exceptional cases, due to involuntary errors or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E) may be issued retroactively in accordance with Rule 11 of Attachment A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The "Issued Retroactively" in Box 13 shall be ticked (✓).

<부표 3>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APPLICATION FOR C/O FORM AK)

1. Tax code of bussiness :	Reference No:
2. Respectfully addressed to: (C/O issuing authority).....	APPLICATION FOR C/O FORM AK
3. Issuance type (tick (✓) where appropriate) First issuance Third – party invoice Second issuance Back to Back C/O Goods for exhibition Original C/O sent back	
4. A document file of application for C/O Form AK includes: - Application Form for C/O Form AK - C/O Form AK which has been fulfilled - Customs Declaration for Export Goods - Customs Declaration for Import Materials - Export Lience - Trade Contract	- Invoice showing value of domestic materials - Bill of Lading - Full statement of RVC calculation - Full statement of De-minimis content - Other documents.....
5. Name of exporter (in Vietnamese):..... - Name in English:	

..... - Address: - Tel:, Fax:Email:.....				
6. Name of importer/buyer (in Vietnamese): - Name in English: - Address: - Tel:, Fax:Email:.....				
7. Goods' name (in Vietnamese and in English)	8.HS code (8 digits)	9. Origin criterion	10. Quantity	11. Value
a) WO 1. CTH or RVC 40% 2. PSR: - WO - WO-AK - CTC - RVC.....% - RVC.....% + CTC (CC; CTH; CTSH) - Specific				

		Processes - Others d) Rule 6		
12. Invoice No:..... Date:/...../.....	13. Importing country:	14. B/L No:.....,, Date:/...../.....	15. Other information:	
16. Notes of C/O issuing authority: - Date of issuance:...../...../..... - Surveyor: - Data entry agent: - Authorised signatory: - Payer: - Stamp requirement: ▪ Stamp (approved to issue) ▪ Stamp “Issued retroactively” ▪ Stamp “Certified true copy”		17. I,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of goods are correct,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ASEAN – Korea FTA I have full responsibility for our declarations before the law. Place and date..... <i>(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i>		

2)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서명 견본 및 사업자용 직인

REGISTRATION FORM FOR SPECIMEN SIGNATURES OF OFFICIALS
AUTHORISED TO SIGN APPLICATION FOR C/O FORM AK AND BUSINESS SEALS
(attached to Trade Law's regulations on the issuance of C/O Form AK)

....., date.....month.....year.....

Respectfully addressed to: ... (Name of C/O issuing authority)

Company: ... (Name of company)

Address: ... (Address of company)

1. We would like to register individuals of our company whose names and specimen signatures and seals are as follows:

Order	Full name	Job title	Specimen signature	Specimen seal

having competence or being authorised to sign application for C/O Form AK.

2. We would like to register individuals whose names are as below:

Order	Full name	Job title	Division (Company)	ID card No

being authorised to apply for C/O at ... (Name of C/O issuing authority).

I have full responsibility before the law for such registration and mandate./.

COMPANY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company)

(sign and seal)

3) 제조사 또는 사업자 생산 공장 명단

LIST OF PRODUCTION FACTORIES OF PRODUCERS/BUSINESSPEOPLE (attached to Trade Law' s regulations on the issuance of C/O FormAK)

....., date.....month.....year.....

Respectfully addressed to: ... (Name of the C/O Issuing Authority)

Company: ... (Company' s name)

Address: ... (Company' s address)

We would like to register our production factories for export goods as follows:

Order	N a m e , address, tel, fax of the factory	F a c t o r y Manager	Factory in area	Goods produced for export (line - by - line notes for each goods)			
				Name of goods	Nmber of workers	Number of machines	Monthly productivity

I have full responsibility for this registration before the law./.

Company

(Business legitimate representative)

(sign and seal)

<부표 4> 말레이시아 원산지 증명 관련 질의 응답 및 원산지증명서

1) 말레이시아 원산지 증명 관련 질의응답

Certificate of Origin¹¹⁸⁾

Q1. What is a Certificate of Origin

The Certificate of Origin (CO) certifies the country of origin of a particular product.

Q2. What is the Purpose of the CO?

- a) To enable the importer of other countries to take advantage of the preferential tariff rate of duty from the country of origin eg. Malaysia.
- b) To satisfy trade requirements such as supporting letters of credit.
- c) To be used as supporting documents for the issue of certificates by another authorised Chamber.

Q3. Who issues the Certificate of Origin

FMM¹¹⁹⁾ is one of the authorised body that issues and endorses the certificate of origin. Endorsemen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available at all FMM Head Offices,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

Q4. What are the types of CO Endorsement provided by FMM

- a) Malaysian Manufactured and Processed Products

Example: A Malaysian company exports direct to Thailand.

- b) Goods for Re-export

Example: A Malaysian company buys from Thailand and ships goods back to Malaysia. Goods are then re-exported to another country eg. Indonesia.

- c) Direct Shipment from a Second Country to a Third Country

Example: A Malaysian company buys from Thailand but requests for goods to be shipped direct from Thailand to Indonesia.

d) Third Party Endorsements

Example: A Thai company buys from a Malaysian company and sells to Indonesia. The Malaysian company applies for CO on behalf of Thai company for their client in Indonesia.

e) Certification of Commercial Invoice and other Shipping Documents

Documents to be certified may be submitted with the endorsement for any category of Certificates of Origin.

f) Certification of other Documents

Documents such as Exclusive Agent Agreement or Certificate of Manufacture may also be endorsed by FMM for FMM members only.

Q5. How to Apply for Certificate of Origin?

i) Submit Letter of Indemnity(LI) to FMM. The LI renewable on January 1 of every two years for members and every year for non-members. FMM also provide stamping of the LI facilities for a fee of RM15.00 for members and RM17.00 for non-members.

ii) For Non "C" FMM Members, a Letter of Indemnity (LI) and Registration Form must be submitted before any CO can be endorsed by FMM.

iii) Submit necessary supporting shipping documents

Q6. How long does it take to endorse the CO in FMM?

Each CO application form with completed supporting documents is processed and handed over to the customer within 20 minutes from the time it was handed to FMM.

Q7. What are the rates of the FMM CO Form

	Member	Non-member
Sales Over the counter	RM10.00 per pad (100 pcs)	RM15.00 per pad (100 pcs)
Sales by Mail	RM15.00 per pad (100 pcs)	RM20.00 per pad (100 pcs)

Q8. What are the rates of CO Endorsement

The price for FMM Certificate of Origin and fees charged for the endorsemen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re as follows:

Fees	Members	Non-Members
Per signature for all endorsements	RM5	RM10
Per signature for Third Party Consignor	RM10	RM20
Per copy all minor amendments	RM5	RM10

118) http://www.fmm.org.my/p_ne_it.asp?NewsID=663&ThemeID=302&From=Theme

119) 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

2) 인도-말레이시아 FTA 원산지 증명서(Form IMCECA)

Original /Du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in the case of third party invoicing, name and country of the business entity issuing the invoice)			Reference No. INDIA-MALAYS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IMCECA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India-Malays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_____ Vessel's name/Aircraft etc: _____ Port of Discharge: _____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India-Malays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Where appropriate please tick: ☐ Third Party Invoicing ☐ Exhibition ☐ Issued Retroactively ☐ Cumulation					

Original /Duplicate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India-Malays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MCECA):

INDIA MALAYSIA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IMCEC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Direct Consignment)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of the IMCECA; and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Chapter 3 (Rules of Origin) for the IMCEC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satisfying Article 3.3. (Wholly Obtained or Produced Good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WO"
(b) Goods satisfying paragraph 1(a) of Article 3.4 (No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Good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ppropriate qualifying criteria
(c) Goods satisfying paragraph 1(b) of Article 3.4 (No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Good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QVC []% and CTSH"
(d) Goods satisfying Article 3.6 (<i>De Minimis</i>)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ppropriate qualifying criteria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declared on single invoice and single CO.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Name of producer and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EXPORTER:**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producer.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Box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accorded.

Original /Duplicate

9. **THIRD PART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as per paragraph 21 of Annex 3-3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Third Part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 as name and country of the business entit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1.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0 of Annex 3-3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ISSUED RETROACTIVELY:** In cases of CO being issued retroactiv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0 of Annex 3-3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ISSUED RETROACTIVELY" box should be ticked (✓).

<부표 5> 인도네시아 이행법 및 원산지 증명서 관련 사항

1) 인도네시아 이행관련 개정법¹²⁰⁾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SALIN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00/PMK.11/2009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6/PMK.011/2008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MENTERI KEUANGAN,

Menimbang

:a.bahwa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6/PMK.011/2008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telah ditetapkan tarif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negara Republik Korea dan negara-negara ASEAN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untuk tahun 2009 sampai tahun 2012;

120) 코트라 질의 사항

b. bahwa dalam rangka penerapan asas timbal balik (resiprositas) atas impor barang dari negara Republik Korea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sebagaimana diatur dalam paragraf 7 annex 2 dari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of The Members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persetujuan Perdagangan Barang Dalam Persetujuan Kerangka Kerja Mengenai Kerjasama Ekonomi Menyeluruh Antar Pemerintah Negara-Negara Anggota Perhimpunan Bangsa-Bangsa Asia Tenggara dan Republik Korea) tentang Modality for Tariff Reduction/Elimination for Tariff Lines Placed in The Sensitive Track (modalitas mengenai penurunan/penghapusan tarif atas pos-pos tarif yang ditempatkan pada Sensitive Track), perlu dilakukan perubahan penetapan tarif bea masuk atas beberapa pos tarif berdasark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c.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dan huruf b diatas, dan dalam rangka melaksanakan ketentuan. Pasal 13 ayat (3)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perlu menetap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6/PMK.011/2008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Mengingat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661);

2. Keputusan Presiden Nomor 84/P Tahun 2009;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3/PMK.011/2008;

4.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6/PMK.011/2008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MEMUTUSKAN:

Menetap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6/PMK.011/2008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Pasal I

Mengubah penetapan tarif bea masuk atas pos-pos tarif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36/PMK.011/2008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menjadi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Pasal II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

Agar setiap orang mengetahuinya, memerintahkan pengunda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dengan penempatannya dalam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4 Desember 2009

MENTERI KEUANGAN,
SRI MULYANI INDRAWATI

Diundangkan di Jakarta

Pada tanggal 4 Desember 2009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PATRIALIS AKBA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467
LAMPIRAN.....

2)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CIRCULAR OF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922/DAGLU/10/2006

PROCEDURE OF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SKA)

To:

1. Heads of Provincial/Regental/Municipal Industry and Trade Agencies across Indonesia;

2. President Director of PT (Persero) Kawasan Berikat Nusantara;

3. Head of Batam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4. Head of Tobacco Agency of Surakarta and Medan branches;

5. Heads of Quality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gency (BPSMB) and Tobacco Agencies of Surabaya and Jember.

In a bid to prevent misuse of Certificate of Origin (SKA) and to increase trust of Indonesia's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1.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refers to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17/M-DAG/PER/2005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Commodities; Circular of the Minister of Trade No. 315/M-DAG/4/dated April 18, 2006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Regulat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3/DAGLU/PER/10/2005 dated October 7, 2005 on Rules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Commodities;

2.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manually shall observe the following procedure:

a. A company that arranges Certificate of Origin must deliver list of names of persons authorized to arrange Certificate of Origin (a duly-stamped statement);

b. The person authorized, as mentioned above, shall bear an identity made by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c. Every purchas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completed with photocopy of Export Manifest (PEB/PE) and Letter of Application;

d. An applicant who is non producer exporter must be able to prove that the commodities to be exported are manufactured in Indonesia by conveying a statement from the producer stating that the commodities are manufactured by the producer;

e. For export commodities from bonded zone and other customs areas, exporter must be able to prove sufficient processes or works performed in Indonesia;

f. Each company must report the number of Certificate of Origin forms used every month to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g. If there are doubts about applic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th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may perform verification;

h. Each company is obliged to deliver specimen of signature of the person authorized to sign Certificate of Origin and a power of attorney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i. Th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must report the use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export realization every month to the Directorate for Export and Import Facilities (form attached) in form of soft copy;

j. In selling Certificate of Origin form, the technical protection should be delegated to the respectiv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signature)

DIAH MAULIDA

3)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AUTHORIZED TRANSLATION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9/M-DAG/PER/12/2010

REGARDING

PROVISIONS IN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MERCHANDIZE

BY THE GRACE OF ALLAH THE ONE SUPREME GOD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Considering : a. that, in implementing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3), Article 4 paragraph (2), Article 5 paragraph (2), Article 6 paragraph (3), and Article 7 paragraph (7) and paragraph (8) of the Regulation of Minister for Trade Number: 33/M-DAG/PER/8/2010 regarding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Merchandiz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provisions in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Merchandize.
- b. that, based on consideration set forth at point a,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 of Ministry of Trade.

- In view of : 1. *Bedrijfsreglementerings Ordonnantie* of 1934 (State Gazette of 1938 Number 86);
2. Law Number 7 of 1994 regarding Ratification of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1994 Number 57,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564);

ANANG FAH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H. CEM KDN. JPA 793. 2228/2004

3. Law Number 10 of 1995 regarding Customs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1995 Number 75,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612), as amended through Law Number 17 of 2006 regarding Customs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6 Number 93,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661);
4. Law Number 32 of 2004 regarding Regional Government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4 Number 125,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37), as amended through Law of Number 8 of 2005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5 Number 108,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548);
5. Law Number 39 of 2008 regarding State Financ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8 Number 166,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916);
6.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38 of 2007 regarding Administrative Division between the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 and Regency/City Government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7 Number 82, Supplement to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737);
7.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73 of 2008 regarding Type and Rate of Non-Tax State Revenue Prevailing in Department of Trade;
8. Presidential Decree Number 260 of 1967 regarding Confirmation of the Job and Responsibility of Minister of Trade in Overseas Trade Sector;
9. Presidential Decree Number 58 of 1971 regarding

ANANG FAHRS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LUB KOKI No. 2228/2001

Determination of Officials Authorized to Issue Certificate of Origin;

10. Presidential Decree Number 34 of 1989 regarding Ratification of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11. Presidential Decree Number 85 of 1995 regarding Ratification of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12. Presidential Decree Number 48 of 2004 regarding Ratification of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3. Presidential Decree Number 69 of 2004 regarding Ratification of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14. Presidential Decree Number 84/P of 2009 regarding Establishment of II United Indonesia Cabinet;
15.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11 of 2007 regarding Ratification of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16.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12 of 2007 regarding Ratification of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17.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36 of 2008 regarding Ratification of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

18.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63 of 2008 regarding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of 2007;
19.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47 of 2009 regarding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State Ministry;
20.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2 of 2010 regarding Ratification of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21. Presidential Regulation of Number 24 of 2010 regarding Domicile, Duty and Function of State Ministr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Duty and Function of 1st Echelon in State Ministry;
22.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40 of 2010 regarding Ratification of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India;
23.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umber 225/Kp/X/1995 regarding Import of Goods Abroad Beyond General Provisions in Export Sector, as Amended Several Times and Lastly through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umber 317/MPP/Kep/9/1997;
24.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umber 17/MPP/SK/1/1996 regarding Import and Export of Goods From and To Bonded Zone, as Amended through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umber 120/MPP/Kep/5/1996;
25. Decree of Minister of Finance 488/KMK.05/1996 regarding Customs Implementation System in Export Sector;
26.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umber 558/MPP/Kep/12/1998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in Export Sector, as amended several times, lastly through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umber 01/M-DAG/PER/1/2007;

ANANG FAHK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CUBI KDPH. JAL. NO. 2228/2001

27.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umber 41/M-DAG/PER/9/2009 regarding Provisions in Coffee Export;
28.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umber 31/M-DAG/PER/7/2010 regarding Organization and Work Method of Trade Ministry;
29. Regulation of Minister of Trade Number 33/M-DAG/PER/8/2010 regarding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Merchandize;

HAS DECIDED:

To stipulate : **REGULATION OF THE MINISTER FOR TRADE REGARDING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MERCHANDIZE.**

Article 1

In this Regulation of the Minister, the meaning of:

1. Certificate of Origin, hereinafter called SKA, shall be a document accompanying Indonesia's export merchandize that has fulfilled the Rules of Origin for entering territory of certain country, evidencing that such merchandize comes from Indonesia.
2. SKA Form shall be fill-in list that has been standardized for the form, size, color, allocation type, and content according to provisions in bilateral, regional, multilateral, and unilateral agreements, as well as determination of Indonesian Government.
3. SKA Issuing Agency shall be any agency/body/institution specified and authorized by the Minister for issuing SKA.
4. SKA signing official shall be any official authorized and responsible for signing SKA at the SKA Issuing Agency the Minister stipulates.
5. Unilateral Determination shall be unilateral determination by any country requiring the use of SKA in exporting any merchandize from another country, either preferential or

non-preferential in nature.

6. Minister shall be any minister governing the trade sector.
7. Director General shall be Director General of Oversea Trade of the Department of Trade.

Article 2

- (1) SKA shall consist of 2 (two) type, that is of preferential SKA or non-preferential SKA.
- (2) Preferential SKA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is issued for obtaining facility in the form of import duty reduction or freedom from a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for merchandize export from Indonesia that fulfills international agreement or unilateral determination.
- (3) Non-preferential SKA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is issued for fulfilling provisions made by a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for merchandize export from Indonesia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 or unilateral determination.

Article 3

The type form, and provisions for issuing, as well as method for filling in preferential SKA or non-preferential SKA are written in Appendix I hereof.

Article 4

- (1) SKA issuance set forth in Article 2 hereof shall be based on request from an exporter submitted to the SKA Issuing Agency by using format given in Appendix II hereof.
- (2) Request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signed by the company's executives.
- (3) Any request for SKA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furnished with support documents as follows:
 - a. Photocopy of Merchandize Export Notification (PEB) already loaded in a harbor by staff of Customs and Excise Service Office, or PEB printout made through

ANANG FAHK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C. 02. HAKI. 01. NO. 2228/2001

Electronic Data Exchange (PDE) by enclosing Export Approval Note (NPE).

- b. Original copy of Bill of Lading (B/L) or photocopy of Airway Bill (AWB), or photocopy of Cargo receipt if the export is implemented by land;
 - c. Photocopy of Taxpayer registration Number (NPWP);
 - d. Invoice;
 - e. Packing list;
 - f. Any other documents relevant with the SKA based on its allocation.
- (4) Any other documents set forth at point f of paragraph (3) above shall be in the form of cost structure for export merchandize containing raw material and/or imported support material for requesting Preferential SKA.
- (5) In submitting request for SKA of export merchandize for certain purpos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s:
- a. Receipt of merchandize requiring SKA; and/or
 - b. Photocopy of Identity Card (ID) for Indonesian citizen or photocopy of passport for foreign citizen/tourist or Power of Attorney from the merchandize owner if the merchandize is delivered by a Delivery Service Company.
- (6) Export merchandize for certain purpose set forth in paragraph (5) above is written in Appendix III hereof.
- (7) SKA request for export merchandize using Form A shall be furnished with support documents as follows:
- a. In the event that Form A for export is requested for the first time, document set forth at point a of paragraph (1) shall be enclosed,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1. Statement from the Applicant of Form A given in Appendix IVa hereof and Cost Structure per

ANANG FAH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SUB. NIKSI 411. NO. 2228/2001

Unit in USD given in Appendix Va hereof; while if the export merchandize is using raw material from ASEAN, Cost Structure to be used is the one given in Appendix Vb hereof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nt of Form A is the exporter as well the producer; or

2. Statement from the applicant of Form A plus Statement from Producer given in Appendix IVb hereof and Cost Structure per Unit in USD given in Appendix V hereof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nt of Form A is the exporter but he/she is not a producer.
- b. In the event that Form A for export is requested for the subsequent export of similar merchandize without any change, and the request is sent to the same SKA Issuing Agency,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enclosed:
 1. Documents set forth at point a of paragraph (2); and
 2. Letter of Confirmation from the applicant of Form A given in Appendix VI hereof.
- (8) Any request for SKA using Form GSTP and Form IJEPA shall be accompanied by document of Cost Structure per Unit in USD given in Appendix Va hereof.
- (9) Any request for SKA using Form D, Form E, Form AK and Form AI shall be accompanied by document of Cost Structure per Unit in USD given in Appendix Vb hereof.

Article 5

- (1) To accelerate the SKA issuance, in addition to submitting SKA request and support documents directly to SKA Issuing Agency, the exporter is required to submit SKA request and support documents using electronic data storage such as diskette, memory stick (USB), optical

ANANG FAH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GRIK KARTI JI. NO. 22257901

disc, electronic mail or website

- (2) Further provisions on method of submitting SKA request and support documents using electronic data storage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will be specified by the relevant Director General.

Article 6

- (1) In the event that any SKA-requesting exporter will export the merchandize by air, the required documents in the form of Air Way Bill (AWB) and/or Merchandize Export Notification (PEB) set forth in paragraph (3) of Article 4 may be temporarily replaced with Exporter's Letter of Statement informing that he/she has yet to be able to submit such AWB and/or PEB.
- (2) Any exporter submitting Letter of State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is required to submit AWB and or PEB to the SKA Issuing Agency not later than ten (10) days as of the date of SKA issuance.
- (3) If any exporter fails to fulfill provisions set forth in paragraph (2) above, SKA Issuing Agency shall reject such exporter's SKA request for exporting subsequent merchandize.

Article 7

- (1) SKA Issuing Agency shall into and inspect the correctness of SKA Forms and any support documents set forth in Article 4 before such SKA is signed by SKA Signing Official.
- (2) When in doubt about th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any SKA form or support docu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prior to the signing, such SKA Signing Official may:
 - a. ask fo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 b. conduct verification by using data/information from

ANANG FAHK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GUB KUKI JAL NO. 2226/2001

survey for comparison regarding data from the exporter, type of merchandize, source of raw material, an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the cost structure per unit, made based on data from Merchandize State of Origin Tracking (PNAB) available in database of SKA issuing system.

- (3) Survey of Merchandize State of Origin Tracking (PNAB) set forth at point b of paragraph (1) above shall include general data of the exporter, type of merchandize, source of raw material, an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the cost structure per unit, and the results shall be stored in database for reference in SKA issuing system, and such survey shall be conducted by SKA Issuing Agency and/or an independent surveyor.

Article 8

Exporters may choose the venue for submitting request for SKA issuance at SKA Issuing Agency based on location or work area of the SKA Issuing Agency, as follows:

- a. SKA Issuing Agency whose work area includes the merchandise's manufacturing area;
- b. SKA Issuing Agency whose work area includes whose work area includes the loc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Bank used by the exporter;
- c. SKA Issuing Agency whose work area includes the location of Customs and Excise Service Office that issues the PEB and/or the location where the PEB is approved by official of Customs and Excise Service Office;
- d. SKA Issuing Agency whose work area includes the location where the merchandise is purchased;
- e. SKA Issuing Agency whose work area includes the location of merchandize shipment;
- f. The nearest SKA Issuing Agency.


ANANG FAHK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A GABRIK JEL. NO. 2228/2001

Article 9

- (1) Exporters of certain export merchandizes required to submit SKA may only request for SKA from certain SKA Issuing Agency specified by relevant Director General on behalf of the Minister.
- (2) Certain export merchandizes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are listed in Appendix VII hereof.
- (3) In the event that certain export merchandizes set forth in paragraph (1) are exported without using other SKA form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 it is required to use Form B.
- (4)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y doubt regarding request for SKA issuance for exporting certain export merchandize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source of raw material and production process.
- (5) In addition to support documents set forth in paragraph (3) of Article 4 hereof, any request for SKA for certain export merchandizes shall be accompanied by support data of raw material in the form of:
 - a. Data of the company's production;
 - b. Data of domestic purchase as follows:
 1. Purchase receipt; and
 2. Invoice;
 - c. Data of import purchase as follows:
 1. Bill of lading; and
 2. Invoice.

Article 10

SKA Issuing Agency within one (1) day as of the date the request is received is required to:

- a. issue SKA when such request is complete and correct; or
- b. inform in writing about the rejection to issue SKA, along with the reasons for such rejection.

Article 11

- (1) SKA Issuing Agency is required to respond and settle any demand for SKA verification from any government/formal agency of the country of export destination regarding validity and correctness of SKA data/information.
- (2) Exporters related to such verific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are required to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validity and correctness of SKA data/information to SKA Issuing Agency.
- (3) SKA Issuing Agency shall respond any demand for SKA verification from any government/formal agency of the country of export destin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in 30 (thirty) working days as of the date of receiving such demand, with copies delivered to the Director of Export and Import Facilitation of the Ministry for Trade.
- (4) When required, SKA Issuing Agency and relevant exporters may carry out coordination with Directorate of Export and Import Facilitation of the Ministry for Trade in implementing provision set forth in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12

Appendix I, Appendix II, Appendix III, Appendix IVa, Appendix IVb, Appendix V, Appendix Va, Appendix Vb, Appendix VI, and Appendix VII shall become integral part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Article 13

This Ministerial Regulation shall apply as of January 1, 2011.
To be known by all men, instruct the enactment of this Regulation of the Minister with its placement in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 59/M-DAG/PER/12/2010

Stipulated in Jakarta
On December 30 2010

**for on behalf of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cting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signed

DEDDY SALEH

Copy according to original

Secretariat General

Ministry of Trade

Head of Legal Bureau,

signed

WIDODO

I, **Anang Fahkerudin**, a sworn and authorized translator, practicing in Jakarta, do solemnly and sincerely declare that the foregoing document is a true and faithful translation from Indonesian into English of the original version.

Jakarta, October 13, 2011

ANANG FAHKCRUDIN
SWORN & AUTHORIZED
TRANSLATOR
SK. GUB. DKI JAL. NO. 2218/5081

4) 일본-인도네시아 FTA 원산지 증명서(Form JI-EPA)

Appendix 1-A (Indonesia)				
1.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Certification no.	Number of page /		
2. Im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 CERTIFICATE OF ORIGIN FORM WIPA Issued in Indonesi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Item number (as necessary),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5. Preference criterion	6. Quantity or weight	7. Invoice number(s) and date(s)	
8. Remarks:				
9.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true and accurate. - the good(s) described above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described above is _____. Place and date: _____ Signature: _____ Name (printed): _____ Company: _____		10.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y or designee office: _____ Stamp: _____ Place and date: _____ Signature: _____		

<부표 6> 베트남 이행관련 개정법

MINISTRY OF FINANCE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Freedom-Happiness -----
No. 77/2010/TT-BTC	Hanoi, May 18, 2010
CIRCULAR PROMULGATING VIETNAM'S SPECIAL PREFERENTIAL IMPORT TARIFF TO IMPLEMENT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DURING 2010-2011 Pursuant to June 14, 2005 Law No. 45/2005/ QH11 on Export Duty and Import Duty Pursuant to the Government's Decree No. 149/2005/ND-CP of December8, 2005, detailing June 14, 2005 Law No. 45/2005/QHII on Export Duty and Import Duty; Pursuant to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ed in Malaysia on December 13, 2005,which was ratifi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n April12,2006; Pursuant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ed in Malaysia on December13,2005,signed in August 24,2006,in the Philippines; Pursuant to the Protocolon the Access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Finance promulgates the Circular on Vietnam's Special Preferential Import Tariff to implement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To promulgate together with this Circular Vietnam's Special Preferential Import Tariff to implement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during 2010-2011 (below referred to as AKFTA tax rate)

In which:

+ Column "Goods code" and column "Goods description" are developed based on II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007 and 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2007 and classified by the 10-digit level.

+ Column "AKFTA tax rate": Tax rate applicable to each year, from January 1 through December 31 of the year;

+ Column "Ineligible countries": Goods imported from countries with country signs (specified at Point b. Article 2 of this Circular) ineligible for AKFTA tax rate.

+ Column "GIC"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oods produced at Kaeso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eligible for AKFTA tax rate undei Article 3 of this Circular.

Article 2. To be eligible for AKFTA tax rate, imports must fully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Country	Country sign
Brunei Darussalam	BN
Kingdom of Cambodia	KH
Republic of Indonesia	ID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
Malaysia	MY
Union of Myanmar	MM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H
Republic of Singapore	SG
Kingdom of Thailand	TH
Republic of Korea	KR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Brunei Darussalam;
- The Ministry of Commer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 The Ministry of Trade,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in Malaysia;
- The Ministry of Commerce, in the Union of Myanmar;
- The Department of Finance,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Singapore Customs, in the Republic of Singapore;
- The Ministry of Commerce, in the Kingdom of Thailand; and.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r Korea Customs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be eligible for AKFTA tax rate, goods produced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GIC goods) must fully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d/ Satisfying the conditions on origin of ASEAN-Korea goods, for goods subject to Rule 6 - AKFTA defined in Appendix IV to the Regulation on AKFTA origin, to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er's Circular No. 17/2009AT-BCT of June 29. 2009.

This Circular takes effect 45 days from the date of its signing.

FOR THE MINISTER OF FINANCE

DEPUTY MINISTER

TranXuan Ha

<부표 7>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___/____/____ To: ____/____/____ (부터) (까지)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4. 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 원 산 지 증 명 대 상 물 품 내 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당해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____/____/____/	Telephone : Fax: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표 8> NA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CBP Form 44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AFTA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19 CFR 181.72)

This questionnaire is sent to you pursuant to 19 CFR 181.72. The questionnaire will be used in

determining if the

described on the NAFTA Certificate of Origin (CO) dated and signed by

originates under the NAFTA.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 EXPORTER If this box is checked, you are being sent this questionnaire as the exporter of the imported good. If you relied upon a Certificate of Origin or written representation from the Producer to prepare your Certificate of Origin, provide a copy of what it was that you relied upon, and then go directly to Section V and complete it. If you relied upon your knowledge of the good, complete the questionnaire.	☐ PRODUCER OF GOOD If this box is checked, you are being sent this questionnaire as the producer of the imported good. The good was exported by Complete the questionnaire.
☐ EXPORTER/PRODUCER If this box is checked, you are being sent this questionnaire as the exporter and also the producer of the imported good. Complete the questionnaire.	☐ PRODUCER OF MATERIAL If this box is checked, you are being sent this questionnaire because identified you as the produce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described above. Complete the questionnaire.

You have until to return the completed and signed questionnaire to the requesting CBP office. You may fax your response. If a reply cannot be made by this date, please contact the CBP office by mail, telephone, or fax.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attach additional pages as needed. When the verification is completed, the exporter/producer will receive a written determination of the findings. The producer of a verified material will also be notified of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material.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ollected on the questionnaire may only be disclosed to thos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determinations of origin, and of customs and revenue matters.

The questionnaire must be signed and dated by an individual who can certify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questionnaire. Failure to complete and return this questionnaire may result i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NAFTA.

SECTION I **PRODUCTION PROCESS**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for the good/material being verified.

SECTION II **NON-ORIGINATING/UNKNOWN MATERIALS OR COMPONENT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non-originating material or component and for each material or component whose origin is unknown, used to produce the good being verified. If none were used, state "NONE".

Description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HS#

HS#—Provide the six digit Harmonized System number or if the rule of origin of the good requires eight digits, supply eight.

CBP Form 446 (04/97)

<부표 9> 태국 수입 통관에 관한 원문

Importation

When a shipment arrives in Thailand, importers are required to file a Goods Declar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for the imports with a Customs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Imported cargo are not legally entered Thailand until after the shipment has arrived within the port of entry, delivery of the merchandise has been authorized by Customs, and applicable taxes and duties have been pai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n importer to arrange for examination and release of the imported cargo.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mports, and regardless of value, the importers may need to obtain a permit to facilitate clearance of the imports. Some, not all, of the goods requiring permit, and the relevant permit issuing agencies, should be contacted prior to the importation.

DOCUMENTS

The minimum documents required for the clearance of imports consists of:

- (1) Import Declaration (Electronic Document)
- (2) Bill of Lading (B/L) or Air Waybill
- (3) Invoice (Electronic Document)
- (4) Packing List
- (5) Import License (if applicable)
- (6) Certificates of Origin (if applicable)
- (7) Other relevant documents such as catalogue, product ingredients, etc.

DECLARATION & CLEARANCE PROCESS

Under the e-Import system, there is no need for relevant parties to submit paper documents as all data is transmitted electronically from an importer computer system to a Customs computer system via a Gateway Provider.

6,5—. Generally, declaration and clearance process include 4 stages:

1. Transmission and/or Submission of a Declaration: The first stage of import clearance process is to complete an Import Declaration and transmit it to Customs. Prior to the arrival of cargo or upon the arrival of cargo, a shipping company/agent forwards a ship arrival report, and manifest to the Customs' computer system. If there is no error, the ship arrival report number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system and the response message is forwarded to the shipping company/agent. When the cargo arrives at the port or place of entry, an importer or a Customs broker forwards an Import Declaration to the Customs computer system.

2. Check and Verification of the Declaration: The second stage is the check and verification of the Declaration and all supporting documents made by an importer. Again, the Customs computer system validates the given data and issues a Declaration and Payment Numbers within a minute in conjunction with the e-payment. In addition, the selectivity profile system will validate the transmitted data and classify the Goods Declaration into two categories: Green and Red Lines.

3.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The third stage is payment of applicable duties and taxes and/or guarantee. There are currently 2 options for the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1 / 2 Importation taxes: payment at the Customs Department, and payment via e-Payment system.

4. Inspection and Release of Cargo: The last stage is to inspect and finally

release cargo from Customs custody. An importer submits the verified Declaration together with the payment receipt at appropriate warehouses for the release of goods. At this stage, cargo data is screened against predetermined selectivity criteria in order to indicate whether the Declaration is under a Red Line (requiring thorough physical checking) or a Green Line (permission of release). A Green Line Declaration is cleared within a minute. Then, the cargo status is electronically forwarded to both the Port Authority and the importer/Customs broker. However, in cases where the predetermined selectivity criteria indicates that the cargo is subject to the Red Line, the Port Authority removes the cargo container for physical inspection by Customs before the release of the cargo.

CONTACT

For further inquiry and information, you may contact the Customs Call Center at Tel. 1164 or the Customs Clinic at Tel. 02-667-7880-4, Fax. 02-667-7885, e-mail: customs_clinic@customs.go.th. Additional information may also be obtained from Customs ports of entry/exit. Please consult our telephone directory for a Customs office near you. The listing can be found under the “CONTACT US” section.

<부표 10>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처리 기한 15일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 관세사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회사(업체)명			
	담당자성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수출입자등	수출입업체명	대표자성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홈페이지			
	외국거래상대방	업체명		
	홈페이지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기 타	신청사유	☐ 세율·세액 확인 ☐ 감면대상여부 확인 ☐ 수출입요건 확인 ☐ 원산지 결정 ☐ 기타()		
	건본제출여부	☐ 유 ☐ 무	건본반환	☐ 반환필요 ☐ 반환불필요
	결과공개	☐ 공개희망 ☐ 비공개희망		
	수수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건본 1점(건본 미제출 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 서식 을지				

※ 유의사항

1. 세관조사, 쟁송절차(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절한 품목분류를 위해 정확·상세한 물품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상세물품정보 등 내용의 보완을 구하는 자료보정요청과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지연통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기일까지 자료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부표 11> 원산지 소명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2.31>

(국문 앞쪽)

원 산 지 소 명 서						
1. 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2.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4. HS No.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 원산지 결정기준		
	금 액					
7. 주요생산공정						
원 재 료 명 세 서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3. 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 산 지 인 정 요 건 검 토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 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0.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2.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 기 타		예 ☐ 아니오 ☐
24. 원산지 결정		충 족 ()		불 충 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 김한성 외 4인,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안병수 외 4인, 『각국의 FTA 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의 비교연구』, 한국관세사회, 2004
- 기획재정부,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상·하원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1
- 관세청·한국무역협회·한국관세사회,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2011
- 관세청, 『FTA 원산지 검증 매뉴얼』, 2010
- 성운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
- 이제현,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 조미진 외 1인,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정재호 외 2인,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베트남 수출입통관 및 FTA 활용 가이드』, 2011
- 대한민국관세청·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한태상공회의소, 『태국 관세제도 및 무역정책』, 2009
- 코트라,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1
- 코트라,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
- GAO, 『Intensifying Free Trade Negotiating Agenda Calls for Better Allocation of Staff and Resources』, 2004
- Bill Text Versions 112th Congress,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1
- 한-미 FTA 협정문
- 한-ASEAN FTA 협정문

[웹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2:H.R.3080:](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2:H.R.3080)

http://www.fmm.org.my/p_ne_it.asp?NewsID=663&ThemeID=302&From=Theme

http://www.depkeu.go.id/Ind/Read/?type=ixReg&id=621&thn=2009&name=PMK_Nomor_200_PMK_11_2009.htm

http://rulebook-jica.ekon.go.id/rb_keyword_result_1.php

http://www.mof.gov.vn/portal/page/portal/mof_en

<http://www.fta.go.kr/new/index.asp>

<http://www.emerics.org/mains/main/1.do>

http://www.customsclinic.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5&Itemid=184&lang=en

<http://tariff.customs.gov.m>

[법 령]

1. 미국 이행법 한-미 FTA 원산지 증명관련 규정¹²¹⁾

영문	국문
SEC. 204. DISCLOSURE OF INCORRECT INFORMATION FALSE CERTIFICATIONS OF ORIGIN;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j) FALSE CERTIFICATIONS OF ORIGIN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 ‘(1) IN GENERAL.—Subject to paragraph (2), it is unlawful for any person to certify falsely, by fraud, gross negligence, or negligence, in a KFTA certification of origin (as defined in section 508 of this Act) that a good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under the rules of origin provided for in section 202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The procedures and penalties of this section that	204절(허위정보의 공개, 허위 원산지 증명서, 특혜관세의 미허용) (j) 한-미 FTA 하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 (1) 일반적으로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서에 관해 허위, 중과실, 과실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한-미 FTA 이행법 202절에서 해당되는 원산지 규정하에서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이다.

영문	국문
apply to a violation of subsection (a) also apply to a violation of this subsection. SEC.206.RECORDKEEPING REQUIREMENTS. Section 508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508) is amended— (1) by redesignating subsection (i) as subsection (j); (2)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h) the following new subsection: (i) CERTIFICATIONS OF ORIGIN FOR GOODS EXPORTED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S.—In this subsection: (A) RECORDS AND SUPPORTING DOCUMENTS.—The term ‘records and supporting documents’ means, with respect to an exported good under paragraph (2), record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origin of the good, including— (i) the purchase, cost, and value of,	206절(요구사항의 서류보존) 204절에서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서에 관해 허위,중과실,과실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6절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수출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기록 및 보충서류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관련서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①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에 관한 지불서류 ②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간접 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격에 관한 지불 서류 ③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서류는 수출된 것을 의미함 또한 KFTA(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란 한-미 FTA 협정문 제 6.15조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로 해당 제품은 이 협정하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KFTA 원산

영문	국문
and payment for, the good; (ii) the purchase, cost, and value of, and payment for, all materials, including indirect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iii)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form in which it was exported. (B) KFTA CERTIFICATION OF ORIGIN.— The term ‘KFTA certification of origin’ means the certific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6.15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at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under such Agreement. (2) EXPORTS TO KOREA.—Any person who completes and issues a KFTA certification of origin for a good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shall make, keep, and, pursuant to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render for examination and inspection all records and supporting documents related to the origin of	지 증명서를 발행 및 완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복사본을 포함하여 제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보충서류 및 모든 기록에 관해 검사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무장관이 규정한 법과 규정사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후 적어도 5년동안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서류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영문	국문
the good (including the certification or copies there of). (3) RETENTION PERIOD.—The person who issues a KFTA certification of origin shall keep the records and supporting documents relating to that certification of origin for a period of at least 5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ion is issued.’ ’ ; and (3) in subsection (j), as so redesignated, by striking ‘ ‘(g), or (h)’ ’ and inserting ‘ ‘(g), (h), or (i)’ ’ .	

121) 본 법령은 저자가 번역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2.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Regulation on the issuance of C.O)¹²²⁾

영문	국문
REGULATIONS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 FORM AK (attached to the Decision No. 02/2007/QĐ-BTM dated January 08, 2007 of the Minister of Trade on Regulations on the issuance of a C/O - Form AK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the	1장 일반 조항 1조 정의 1.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의(여기서는 “AKFTA 협정”으로 명시함)에 관해 말레이시아는 2006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122) 본 법령은 저자가 번역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영문	국문
Southeast Asian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KFTA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in Kuala Lumpur, Malaysia on 24th August, 2006. 2. A Vietnamese Certificate of Origin Form AK(hereinafter referred as “C/O Form AK”)is a Certificate issued by C/O Form AK issuing authorities. 3. C/O Form AK issuing authorities (hereinafter referred as “C/O IAs”) are organisations mandated by the Ministry of Trade to issue C/O Form AK for Vietnamese commoditie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AKFTA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Appendix VII. The list of such organisations may be periodically adjusted and added. 4. Applicants of C/O Form AK(hereinafter referred as “C/Oapplicant”)include exporters, producers, attorneys by exporters or producers. In case of a back-to-back C/O Form AK application,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2.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여기서는 원산지 증명서 Form AK로 명시함)는 원산지 증명서 Form AK를 발행하는 당국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이다. 3. 원산지 증명서 AK 발행 당국(여기서는 “C/O IAs” 로 명시함)은 AKFTA협약하에서 특혜 무역 대우를 위한 베트남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Form AK를 발행하기 위해 무역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4.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신청자 (여기서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로 명시함)은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을 포함한다.

영문	국문
5. eCOsys network is a system to manage and issue Vietnam' selectronic-C/Oaddressedat:http://ecosys.mot.gov.vn. Article 2. Goods conferred C/O Form AK Goods conferred C/O Form AK should be appropriate for originating criterion as provided for in Appendix I and in the goods list under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f the AKFTA Agreement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C/O applicants A C/O applicant has responsibility as follows: 1. To set up and submit an entrepreneur file to C/O IAs for businesspeople who make the first C/O application; 2. To set up and submit a document file of C/O application to C/O IA ; 3. To prove that export goods meet originating criterion and support C/O IAs in dertermining origin of goods; 4. To be responsible before the law as to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5. eCOsys network은 베트남의 전자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관리 및 발행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¹²³⁾ 2조 인정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재무부에 의해 규정된 AKFTA 협약의 특혜 관세 대우하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조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의 책임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는 다음의 책임이 따른다. 1. 원산지 증명 신청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원산지 증명 신청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를 제출한다. 3.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합당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련서류,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류,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서류의 진위성에 관한 책임이 있다.

영문	국문
or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regarding entrepreneur file, C/O Form AK application file, and the true origin of the export good, including the event of being attorneyed by exporter; 5. To be responsible before the law as to the authenticity and the accuracy of all documents of C/O electronic file in case of submitting the file via eCOsys network; 6. To report in time to C/O IA where businesspeople submitted the C/O application form on batchs of goods which suffer from importing country' s denial of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KFTA agreement although they were conferred Vietnam' s C/O(if any); 7. To archive C/O application fil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C/O Issuing Authorities A C/O issuing authority has responsibility as follows: 1. To instruct C/O applicants if required;	5. eCOsys network으로 파일을 제출할 경우 전자 원산지 증명서 파일의 모든 서류의 정확성 및 진위성에 관한 책임이 있다. 6.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AKFTA하에서 수입국가로부터 특혜 원산지 대우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한 원산지 증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보관한다. 4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의 책임을 따른다. 1.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영문	국문
2. To receive, check entrepreneur files and C/O FormAKapplicationfiles; 3. To dertermine the true origin of goods if necessary; 4. To issue C/O Form AK if goods meet regulations asset out in Article2; 5. To archive C/O application files; 6. To send the Ministry of Trade (Import - Export Department) specimen signatures of officials authorised to sign AKFTA Form and official seals of C/O IAs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Trade’ s regulations; 7. To deal with C/O complaints within the jurisdiction; 8. To keep in secret files and documents regarding origin examination and origin dertermination; 9. To report and meet other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Trade’ s regulations.	2.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검토한다. 3. 필요한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4. 2조의 규정사항을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5. 원산지 증명서 서류를 보관한다. 6. 무역부(수입-수출부)로 AKFTA 양식에 공인된 서명을 한 견본 서명을 보내고 무역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발급기관에서 공인된 봉인을 한다. 7. 사법권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8. 원산지 검사와 원산지 결정에 관한 서류와 기밀문서를 보관한다. 9. 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사항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한다.

영문	국문
Chapter II OPERATIONAL PROCEDURES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 FORM AK Article 5.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file 1. When an applicant submits a C/O application for the first time to a C/O IA, the following documents are required: a) Registration form for specimen signatures of officials authorised to sign application for C/O Form AK and business seals (Appendix VIII); b)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kinh doanh (the certified true copy, bearing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c) Certificate of tax code registration (the certified true copy, bearing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d) List of production factories of businesspeople (Appendix IX).	2장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절차(Form AK) 5조 기업 파일의 등록 1. 신청인이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서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명견본 등록양식 및 사업자용 직인¹²⁴⁾ - 사업 등록증 신청서(인증된 원본 서류로 “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포함하는 것) - 세금 코드 등록 신청서(인증된 원본 서류로 “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포함하는 것) - 사업자의 생산공장 명단¹²⁵⁾

영문	국문
2. All changes of entrepreneur file should be informed to the C/O IA where registered before any requirements for the issuance of C/O Form AK. In case of no change, entrepreneur file must be updated every two year. 3. C/O applicant can only apply for C/O Form AK at organisation where they did the registration for entrepreneur file. Article 6. A document file of C/O application 1. This includes: a) Application for C/O Form AK which is appropriately completed (Appendix VI); b) A set of C/O Form AK which is completed, including one original and two carbon copies; c) Pre-paid Customs declaration; d) Commercial invoice; e) Bill of Lading. 2. If necessary, C/O IAs can require applicants for more relevant documents to export goods such as:	2. 원산지 증명서 발행시 필수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관련 서류(entrepreneur file)의 모든 변화를 알려야 함. 변경이 없을 시에도 격년마다 해당서류를 갱신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은 관련서류의 등록을 위해 해당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6조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서류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신청서¹²⁶⁾ - 원본과 두 개의 카본 복사본을 포함한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세트 -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Pre-paid Customs declaration)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2.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수입재료의 수출신고서, 수

영문	국문
Customs Declaration for Import Materials; export licence; trade contract; VAT Invoice showing value of domestic materials; sample of materials and export goods and other documents to verify the origin of export goods. 3. In case of the issuance of back - to - back C/O, the document file includes: a) Application for C/O Form AK; b) The original or the notarised copy of C/O Form AK provided by back - to - back C/O applicant; c) Pre-paid Customs declaration; d) Transition pre-paid Customs declaration; e) Commercial invoice; f) Bill of Lading. 4. The documents as set out in sub - paragraphs (c), (d), (e) of paragraph 1, paragraph 2 and sub - paragraphs (c), (d), (e) and (f)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re copies which have either stamp “certified true copy” and signature of leader or authorised official of an agent or stamp of notary	출 허가증, 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국내재료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 수출품 및 재료의 샘플 및 기타 수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back - to - back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의 경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다.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및 공증본 -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 전환 선불된 세관 신고서(Transition pre-paid Customs declaration) - 상업송장 - 선하증권 4. 1항의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Pre-paid Customs declaration), 상업송장, 선하증권과 2항의 서류, 3항의 기 지불된 세관 신고서, 전환 선불된 세관 신고서(Transition pre-paid Customs declaration), 상업송장, 선하증권의 복사본에는 “certified true

영문	국문
public' s office, enclosing the original to compare. Article 7. Acceptance of a document file of C/O Form AK application As C/O applicant submit a file, a C/O receiver is responsible for accepting the file. The receiver has to inform full requirements in writing, making file quittance and giving the applicant one copy if C/O IA requires more documents as set out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r if the applicant requests. For C/O cases which need more verification, deadline to verify should be indicat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9. Article 8. Issuance period of C/O Form AK 1. Within 3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roperly filled out application from the applicant, the IA has to approve the application. 2. The IA may conduct a retroative check at random in the production	copy”와 기관의 권한있는 책임자 또는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원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동봉되어야 한다. 7조 원산지 증명서 AK 신청서의 서류를 적용하는 것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 수령인은 관련서류를 수락하는 책임을 가짐. 원산지 증명서 수령인은 모든 요구사항을 서면, 수령증을 만들어 보고해야 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6조 2항에 나타난 추가적인 서류에 관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에서 요구한다면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 마감기간은 9조에 나타난대로 수행해야 한다. 8조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생 기간 1.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날로부터 3일내 가능하다. 2. 만일 서류검사로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전에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생산 공

영문	국문
factory if it is supposed that the file checking is not basic enough to issue a C/O Form AK or those previously issued were ever illegal. The results of origin check have to be recorded. The applicant and a surveyor have to sign in the record. In case of no signature of the applicant, the surveyor will sign to certify after giving clear reasons. In such case, the application will be approved but no later than 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roperly filled out application from the applicant. 3. In all cases, verification process is disallowed to prevent goods delivery or payment of the exporter, unless this prevention is done by the exporter. Article 9. Late issuance of C/O Form AK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장에 관한 무작위 소급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는 기록될 것이며 신청자와 조사자는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신청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 검사자는 명백한 이유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후에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신청서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령한 날로부터 적어도 5일 이내에 승인될 것이다. 3. 모든 경우에, 수출자의 지불 또는 상품의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과정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9조 원산지 증명서의 늦은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비자 발적 실수, 누락이 발생하여 수출시 발행되지 못한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는 “ISSUED RETROACTIVELY”의 문구를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영문	국문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 Article 10. Re-issuance of C/O Form AK In the event of theft, loss or destruction of a C/O Form AK, the producer and/or exporter may apply to the issuing authority for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and the Duplicate enclosing the Triplicate of the first issuance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re-application, bearing the endorsement of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in box 12 of a Certificate of Origin. Article 11. Denial of issuance of C/O Form AK 1. C/O IAs have rights to deny the issuance of C/O Form AK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applicant of C/O Form AK has not registered entrepreneur file as set out in Article 5; b) The document file of C/O Form AK is untrue and insufficient as set	10조 원산지 증명서의 재발행 원산지증명서의 파괴, 분실 등의 경우에 생산자/수출자는 발행 재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원본과 부분을 발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공란 12에는 “CERTIFIED TRUE COPY”로 배서되어야 한다. 11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의 부인 1.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5조에 관한 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증명서 서류가 6조에 따라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경우

영문	국문
out in Article 6; c) The file content is in contradiction; d)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file of C/O Form AK does not take place at the organisation where the entrepreneur file was registered; e) C/O Form AK is declared by hand-writing, or erased, or unreadable, or printed by different ink colours; f) Goods do not meet origin criterion or are not truly origin –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origin as set out in Appendix I; g) There is legal evidence to prove the goods are non – originating from ASEAN Korea FTA or the applicant has fraudulent acts to verify the origin of the goods. 2. In case of denial of the issuance of C/O Form AK, the C/O IA has to clearly inform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applicant within 3 days from the date of denial.	- 서류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 관련 서류가 등록된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서류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 원산지 증명서가 수기로 작성되었거나 지워졌거나, 읽을 수 없거나 다른 잉크 색으로 프린트된 경우 -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경우 - 상품이 한-ASEAN FTA하에서 비원산지 물품이 법적으로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무효화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명확하게 근거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무효화된 날로부터 3일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문	국문
Article 12. Other matters Matters which are not mentioned from Article 5 to 11 will be set out in Appendix V. Chapter III MANAGEMENT OF ISSUANCE OF C/O FORM AK Article 13. Archives/Filling The copies of C/O Form AK issued by the C/O IA and the application file of C/O Form AK have to be filed by the C/O IA, the exporter and the applicant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issuance of C/O. In special case of C/O Form AK, the exporter, the applicant have to file the true copy issued by the C/O IA. The copy certified true copy of C/O Form AK is only for reference. Article 14. Authority to sign C/O Form AK 1. Only individuals indicated by the Minister of Trade whose specimen signatures and seals were submitted to the ASEAN Secretariat by the	12조 기타 문제 5조에서 11조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사항들은 부속서 5에 명시될 것이다. 3장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발행의 관리 13조 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수출자, 신청인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한날로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특수한 경우에 수출자와 신청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복사본은 참조로만 사용한다. 14조 원산지 증명서 AK에 서명하는 당국 1. 무역부가 지정한 개인만이 서명 견본과 직인을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하여 권한을 부여한 무역부에 의

영문	국문
Ministry of Trade are authorised to sign C/O Form AK. 2. The C/O Form AK signed by the individual who does not meet paragraph 1 will suffer from the denial of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s Customs Office. 3. In case of discovering fraudulent acts of IAs, the Ministry of Trade will suspend the issuance competence of C/O of that organisation. Article 15. Contact point The Import – Export Department is a contact point to implement jobs as follows: 1. To guide, examine the issuance of C/O to ensure the C/O Form AK is issued legally; 2. To be a contact point to do registration procedures of Vietnam’ s specimen signatures and seals of C/O IAs, then submitting to the ASEAN Secretariat; and to provide signatures and seals of IAs of member countries for Vietnam’ s Customs Office. 3. To support the Minister of Trade	해 ASEAN Secretariat에 제출한다. 2. 개개인에 의해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가 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세당국의 수출부의 특혜관세 대우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무역부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해 유예할 수 있다. 15조 연락처 수입-수출부는 아래에 이행을 위해 연락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법적으로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검사 및 설명 2. 베트남의 서명 견본 및 원산지 증명서의 봉인에 관한 등록절차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한 후, ASEAN Secretariat에 제출할 수 있다. 3. 무역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이행규정에 관한 문제사항을 다룰 수 있다.

영문	국문
to deal with matter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the issuance of C/O Form AK. Article 16. Update on information and report on issuance of C/O 1. C/O IAs have to make daily report on the issuance of C/O, including no issuance of C/O and send to the Ministry of Trade. The report-making is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Trade. 2. The Ministry of Trade will firstly remind in writing after 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one in case of no receipt of the report, and secondly within 5 following days. After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one, in case of no report yet, the Ministry of Trade will make a decision on suspension of C/O issuance' s competence of that IA and publicise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Trade. Article 17. Edition of C/O FormAK 1. The Ministerial Office is responsible to co-operate with the	16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보고에 대한 갱신 1.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무역부에 원산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관해 무역부에 매일 보고하며 보고는 무역부에 의해 규정된다. 2. 무역부는 보고서의 수령이 없는 경우, 첫 번째는 보고를 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5일후에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다음날로부터 5일 안에 보고해야 함. 수령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5일후에 더 이상 보고가 없을 시에는 무역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해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사항은 무역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다. 17조 원산지 증명서의 편집 1. 장관은 수입 및 수출부와 협조하

영문	국문
Import - Export Department to print C/O Form AK and give them to C/O IAs. 2. C/O IAs directly sell C/O Form AK to the applicant and strike a balance according to regulations. Article 18. Issuance fees of C/O Form AK The C/O applicant has to pay issuance fees of C/O to C/O IA according to regulations. The Ministry of Finance will regulate fees level and implementation period in detail. Chapter IV SETTLEMENT OF DISPUTE AND REMEDIES FOR VIOLATION Article 19. Dispute settlement body The C/O Form AK applicant have rights to make claim to the IA who issued the C/O. That C/O IA shall be responsible to settle claim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laim. In case the claim settlement is not accepted,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make claim to the Minister of Trade or sue to the administrative court	여 원산지증명서를 인쇄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 주어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팔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18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원산지 증명 발행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이다. 재무부는 이행 기간과 비용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4장 위반시 분쟁해결 처리방안 19조 분쟁 해결 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인 원산지 증명발행기관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이의제기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고발 및 고소법에 따라 행정적인 소송 또는 무역부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영문	국문
according to the law in complaint and accusation. Article 20. Remedies for violation All fraudulent acts regarding C/O Form AK, subject to the extent of which, shall be administratively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Decree on the remedies for violation in the field of trade or prosecuted by law in case such acts damage benefits of the State or of office, organization, individual. Article 21. Revocation of issued C/O Form AK C/O IA will revoke issued C/O Form AK in case: 1. The C/O Form AK applicant forges any documents of the issued file/ In addition, C/O IA will put name of that applicant in a black list including those who must be seriously examined before C/O issuance. That applicant will be also punished by authorised organisations; 2. C/O Form AK issued does not	20조 위반시 처리방안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모든 허위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21조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발행의 폐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어떤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를 폐기할 수 있다. 1.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이 발행된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전에 이러한 사항을 검사하여 블랙리스트란에 신청인을 기재할 것이다.) 2. 원산지 증명서가 원산지결정기

영문	국문
meet origin criterion. Chapter V IMPLEMENTATION Article 22. Implementation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if difficulties or obstacles arise, individuals, organisations should report these as soon as possible for solutions to the Ministry of Trade, addressed at: Ministry of Trade, Import - Export Department 21 Ngo Quyen St., Hà Nội Tel: 04-8262538 Fax: 04-8264696 Email: co@mot.gov.vn FOR MINISTER OF TRADE DEPUTY MINISTER (signed and sealed) Phan The Rue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장 이행 22조 이행 이행과정에서 만약 문제사항이 발생한다면 무역부에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

123) <http://ecosys.mot.gov.vn>

124) 부표 참조

125) 부표 참조

126) 부표 참조

3.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

영문	국문
CIRCULAR OF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922/DAGLU/10/2006 PROCEDURE OF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SKA) To: 1. Heads of Provincial/Regental/Municipal Industry and Trade Agencies across Indonesia; 2. President Director of PT (Persero) Kawasan Berikat Nusantara; 3. Head of Batam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4. Head of Tobacco Agency of Surakarta and Medan branches; 5. Heads of Quality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gency (BPSMB) and Tobacco Agencies of Surabaya and Jember. In a bid to prevent misuse of Certificate of Origin (SKA) and to increase trust of Indonesia's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SKA) 1. 인도네시아의 주/지방자치제 산업 및 무역부 2. PT (Persero) Kawasan Berikat Nusantara의 장 3. 개발 바탐 산업당국의 장 4. Surakarta and Medan 지사의 담배 기관의 장 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품질 검사 기관의 장 및 Surabaya and Jember의 담배사업소의 장 원산지증명서의 오용을 방지하고 인도네시아의 수출국에 관한 신뢰를 증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

영문	국문
1.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refers to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17/M-DAG/PER/2005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Commodities; Circular of the Minister of Trade No. 315/M-DAG/4/dated April 18, 2006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Regulat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 03/DAGLU/PER/10/ 2005 dated October 7, 2005 on Rules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Indonesia's Export Commodities; 2.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manually shall observe the following procedure: a. A company that arranges Certificate of Origin must deliver list of names of persons authorized to arrange Certificate of Origin (a duly-stamped statement); b. The person authorized, as mentioned above, shall bear an identity made by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1.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Minister of Trade No. 17/M-DAG/PER/2005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을 참조한다. 2. 원산지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처리하는 권한있는 자에 관한 명단을 동봉해야 한다. (우표를 붙인 진술서 포함) b. 승인받은 자는 원산지 증명서발행인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문	국문
c. Every purchas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completed with photocopy of Export Manifest (PEB/PE) and Letter of Application; d. An applicant who is non producer exporter must be able to prove that the commodities to be exported are manufactured in Indonesia by conveying a statement from the producer stating that the commodities are manufactured by the producer; e. For export commodities from bonded zone and other customs areas, exporter must be able to prove sufficient processes or works performed in Indonesia; f. Each company must report the number of Certificate of Origin forms used every month to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g. If there are doubts about applic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th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may perform verification;	c. 각각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Export Manifest (PEB/PE)의 복사본과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d. 신청인이 생산자나 수출자가 아닌 경우 상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고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본 서류는 생산자에 상품이 제조되었다는 생산자의 진술서이다. e. 보세구역 및 기타 관세지역에서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충분한 가공이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f. 각각의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달에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g.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행자는 원산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영문	국문
h. Each company is obliged to deliver specimen of signature of the person authorized to sign Certificate of Origin and a power of attorney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i. Th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must report the use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export realization every month to the Directorate for Export and Import Facilities (form attached) in form of soft copy; j. In selling Certificate of Origin form, the technical protection should be delegated to the respective issuer of Certificate of Origi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signature) DIAH MAULIDA	h. 각 기업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한 서명권자의 서명견본을 동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i. 수출 및 수입부서에 매달 소프트웨어 카피본을 원산지 증명서 발행권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용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j.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판매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인에게 위임될 것이다.

[별 첨]

**ASEAN 4개국
통관제도 및 심사 매뉴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목 차 〉

I. 공통사항(원산지증명)	299
II. 원산지 검증	311
III. 베트남	318
IV. 태 국	321
V. 인도네시아	326
VI. 말레이시아	334

I . 공통사항(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빙서류

□ 원산지 증명 제도

-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신청
-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
-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됨.
-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급기관의 의무

-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함.

<발급기관의 보장사항>

- ✧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 물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 ✧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 ✧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

2 원산지 증명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A4 용지의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됨.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분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해야 함.
-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야 함.
-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부분을 보관해야 하고 생산자와 수출자는 제3부분을 보관해야 함.
-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려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 표기,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해야 함.

<양식 1>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ASEAN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ASEAN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수출국을 기재합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기재합니다.

나. 품목번호(HS Number)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생산 또는 제조 형태	기재방법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합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기재한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명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의

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3

원산지 증명서 신청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내에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신청하여야 함.

<선적전 신청시 준비서류>

- ✧ 수출신고필증 사본
- ✧ 송품장 또는 계약서
- ✧ 원산지 소명서
- ✧ 원산지소명서 내용입증에 필요한 서류(발급기관 요청시)

세번변경기준
품목의 경우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메뉴얼, 홍보책자 등

부가가치기준
품목의 경우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선적후 신청시 준비서류>

- ✧ 수출신고필증 사본
- ✧ 원산지 소명서
- ✧ 원산지소명서 내용입증에 필요한 서류(발급기관 요청시)
- ✧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 ✧ 선적사실 확인서류(B/L, AWB)
- ✧ 사유서(선적 후 30일 이후 신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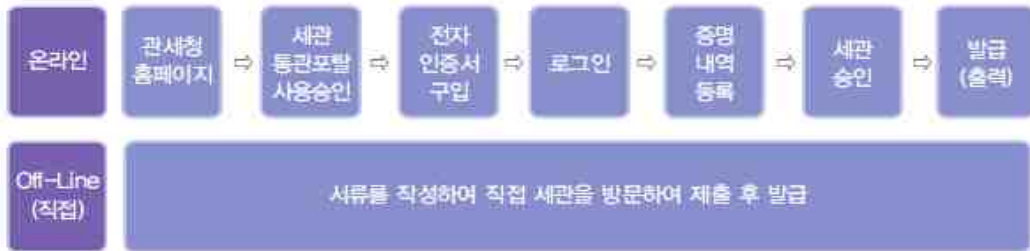
4

원산지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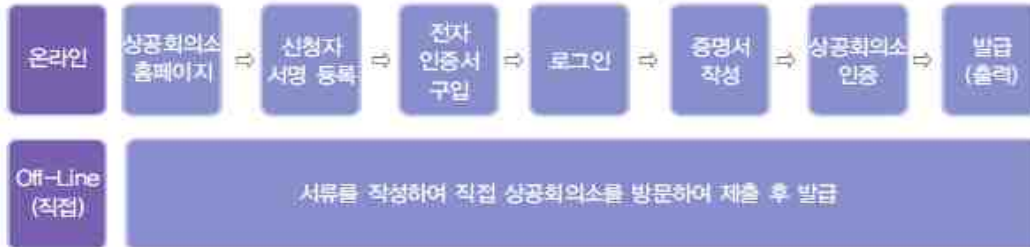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방법으로 나뉘는데 한-ASEAN FTA의 경우 기관발급의 방식을 취함.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 발급기관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도>

세관 발급 과정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과정



5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 한-ASEAN FTA는 원산지 증명방법을 기관발급 방식을 따르므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함.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이고, ASEAN의 경우 각 국가별로 발급기관이 달라 주의를 요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증명서만 유효함.

<ASEAN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국가	발급주체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Bureau of Customs)
베트남	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 Trade)
태국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인장만 유효한 인장으로 인정되고 인장을 위조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가 될 수 없음.

<ASEAN의 국가별 인장>



6

원산지 증명서 제출기한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음.

7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

-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 훼손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
-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 신청이 가능함.
-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 신청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사유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II.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

□ 원산지 검증의 개념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
- 또한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거래당사자 · 세율 · 운송경로 ·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원산지 사후 검증 요청

-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 일¹²⁷⁾을 전후한 6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

2 원산지 검증 방법

□ 수입 검증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관이 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원산지 검증 업무 수행

* 정보분석(세관) → 대상업체 선정(세관)→ 검증착수(간접, 직접, 해외-본청) →검증종결

127) 6월 이내의 기간과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일 전후 또는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 사이의 6월의 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 수출 검증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그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상대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검증

* 검증요청접수(본청) → 수출물품검증(본부) → 검증결과 회신(본청) → 위반자 처벌(세관)

3 원산지 검증 절차

□ 수입당사국의 사후 검증 요청

- 수입당사국은 사후검증 요청시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음.

- 그러나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부정행위에 관한 의심이 없는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과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요청이 가능함.

□ 수출당사국의 사후 검증 대응

-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수입당사국의 현지조사 요청

-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입 당사국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함.

<현지조사 서면통보 대상자>

- ✧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
- ✧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 ✧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 ✧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자

-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현지조사 서면통보 사항>

- ✧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 ✧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이름
- ✧ 현지조사 방문예정일
- ✧ 현지조사 대상물품을 포함한 방문예정 현지조사의 범위
- ✧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현지조사 대상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

□ 현지조사 기한

-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음.
- 현지조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함.
-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해야 함.

□ 현지조사시 특혜관세 대우

-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재개됨.

-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물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물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현지조사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현지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최장 6월내에 완료되어야 함.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 제1항 다호가 적용됨.

III. 베트남

1

일반사항

- 수입통관 절차는 전산으로 세관신고하는 방식과 종이 서류로 세관신고하는 방식이 있음.
- 세관에 의한 화물검사 비율이 높은 편이며, 기계설비와 원자재는 물품반출 후 관세 납부가 가능함.
- 원자재는 재수출시까지 최장 275일까지 관세징수유예가 가능함.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식품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검사를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

2

수입통관 필요서류

- 수입통관시 수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수입 신고서
- ✧ 상품송장(Invoice)
- ✧ 선하증권(B/L, AWB)
- ✧ 포장명세서
- ✧ 수입계약서
- ✧ 기타 허가서, 확인서 등

3 **물품 검사**

- 물품검사와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
- 물품 검사는 보통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함.
-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됨.

- ✧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음.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함.

4

수입통관 절차도

-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는 전자통관 시스템에 의하므로 종이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수입통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IV. 태 국

1

일반사항

- 태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세관에 상품 신고서류(Goods Declaration)와 수입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함.
- 선박이 입국항에 도착하여 세관으로부터 화물인도 승인허가를 받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적법하게 반입이 불가능함.
- 수입자는 수입품의 검사 및 인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수집하여야 함
-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수입의 성격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수입승인을 요하는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입전에 관련 승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입통관 필요서류

- ☐ 수입통관시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령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수입 신고서(전자 문서)
- ✧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 ✧ 송장(전자 문서)
- ✧ 포장명세서
- ✧ 수입승인서(적용가능한 경우)
- ✧ 원산지 증명서(적용가능한 경우)
- ✧ 제품 성분, 카탈로그같은 기타 관련 서류 등

3

수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 전자통관 시스템

- 태국의 수입통관은 모든 데이터가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Gateway Provider를 경유해서 수입자의 컴퓨터에서 세관의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전송됨.

□ 수입신고서 제출 및 전송

- 화물의 도착시 또는 화물의 도착 이전에, 선박회사 또는 대리인은 선박입항보고서 및 적하목록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오류사항이 없으면 선박입항보고번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선사에 발송됨.
- 화물이 통관지에 도착했을 때,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수입신고서를 제시함.

□ 수입신고서의 검사

- 두 번째 단계는 수입자가 제시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의 검사임.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제공된 자료를 체크하고 수분내에 수입신고번호와 제세공과금 납부용 계좌번호를 발행해 줌.
- 또한, 선별시스템은 전송된 자료를 체크하고 수입신고서를 Green Line과 Red Line의 두 영역으로 분류함.

□ 관세납부

- 세 번째 단계는 수입관세의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임.
수입관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음.
세관방문을 통한 납부/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

□ 검사 및 화물의 반출

- 마지막 단계는 화물을 검사한 후 인출하는 것임.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화물이 보관된 창고에 관세납부증과 신고수리된 수입신고서를 제시해야 함.
- 수입신고서를 Red Line(화물검사)과 Green Line(화물반출)중 어느 곳으로 분류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화물 관련 정보를 사전설정된 선별기준과 대조하여 점검함.
- Green Line에 분류된 수입신고서는 수분내에 수입신고수리됨. 그 후, 화물상태는 전자적으로 세관 및 수입자/관세사에게 전달될 것임.
- 그러나, 사전결정된 선별기준에 따라 Red Line에 분류된 경우, 세관은 화물반출 전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게 됨.

4

수입통관 절차도

- 태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전자통관 시스템에 의하므로 종이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수입통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V. 인도네시아

1

일반사항

- 인도네시아는 1994년 말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이 출발지에서 SGS 검사, 즉 선적 전 화물 검사를 받았음.
- 1994년 말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선적 전 검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제도는 **선 통관 후 검사 제도로 전환**되었음.
-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서 수입 화물 통관이 종료되어 수입 화물의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화물 수입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을 거칠 때 세관에서 수입 화물의 수입가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수입 통관 시점에 조정관세 혹은 벌금이 부과되고 수입 화물의 실질심사가 완전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는 항만 혹은 공항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된 개별 수입자의 수입신고서는 재심사 부서로 이관되어 수입 통관시 신고된 수입가액과 관세율 적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됨.
- 인도네시아 관세청 규정에 의하면 수입 통관이 완료된 수입신고서의 검증 유효 기간은 수입 통관 종료일로부터 2년임.
- 수입이 완료된 수입 통관에 대하여 관할 세관이 검증하는 과정 중, 수입가액의 하양 신고 혹은 관세율 적용이 부정적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조정관세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또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업체의 수입 실적 감사를 실시하기도 함.

2

수입통관 필요서류

-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령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선하증권 원본
- ✧ 송장
- ✧ 포장 리스트
- ✧ 보험 증권
- ✧ 매매 계약서
- ✧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물품 대금 송금 자료)

3

수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 선적 서류 준비 및 HS 코드 확인

- 수입 통관용 서류 준비(반드시 원본 필요)

- ✧ 선하증권 원본
- ✧ 송장
- ✧ 포장 리스트
- ✧ 보험 증권

-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수입자가 수입화물 통관 진행시 세관에 제출하는 선적 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예외적으로 보세 법인에 한해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개별 보세에서 작성한 SURAT PERYATAAN을 첨부하여 사본으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최근에는 무역 업무를 진행할 때 선하증권을 발급자에게 양도한 후, 선적 서류 사본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송수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
-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이를 불인정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업무 진행 시 원본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음.
- 선적과 관련된 원본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날조한 것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대상이 됨은 물론 과도한 벌금이 부과됨.

○ 기타 구비서류

- ✧ 매매 계약서
- ✧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물품 대금 송금 자료)

- 수입 화물 통관 중, 화물검사(Physical Inspection)를 실시하는 경우는 화물 검사이후 세관에서 수입가 증빙 자료 요청시 이에 대한 증빙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서류가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임.

○ 관세율 확인(수입제세 확인)

-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의 품목을 인도네시아 관세율 목록(HS Code Book)에서 확인하여 표시된 세율대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인도네시아 관세율은 매년 개정되면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
- 관세율 적용이 다소 애매한 품목은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관세율 2차 조정기간으로 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허가 사항(비관세 장벽)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수입신고서 작성(P.I.B: Pemberitahuan Impor Barang)

- 선적 서류에 준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수입 시 납부하는 수입세는 다음과 같음.

- ✧ BEA MASUK: 수입 관세(Import Duty)
- ✧ PPN: 부가가치세(VAT)
- ✧ PPH22: 선납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 수입세 납부

- 수입세 납부 기준 환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경 관세청에서 고지하며 이에 준하여 수입세를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 화로 환산함.
- 수입신고서에 준하여 세금 계산이 완료되면 수입세납부서(SSPCP)를 준비함.
- 수입세납부서를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입업체 거래 은행에 제출한 후 지불 요청을 하면, 수입세는 은행에서 국고로 납입됨.
- 수입세 납부 처리는 매일 오전 11시에 마감되므로 최소 매일 오전 10시 30분까지는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당일 처리가 가능함.

□ 수입신고서의 전송

- 수입세 납부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하게 됨. 세관에서는 전송받은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 은행과 수입세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함.
- 확인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 접수 완료를 통보함. 세관의 수입신고서 접수 완료통지가 오면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수입세납부증명서, 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의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함.
- 세관에서는 원본 서류가 접수된 이후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 결과와 수입업체의 기존 수입 실적을 참고하여 화물 통관 승인 혹은 화물 검사 실시를 통지함.

□ 화물 검사

- 화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화물검사 순번 대기를 하게 되고 (보통 1~2일 대기), 대기 완료 후 검사를 실시함.
- 화물 검사는 사안에 따라 내품 100%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컨테이너에 불필요한 자재, 샘플, 개인 용품, 기타 소모품 등 선적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절대 선적이 불가함.

- 만일, 선적 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 적발될 시에는 조정 관세는 물론 과중한 벌금, 물품 압수 등의 결과가 초래되며, 위법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세관의 최종 통관 승인이 나면 세관에서 SPPB를 발급하며 Lift On& Storage 등의 비용을 납부한 이후 화물 출고가 가능함.

4

수입통관 절차도

- ☐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수입자가 수입화물 통관 진행시 세관에 제출하는 선적 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입통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VI. 말레이시아

1

일반사항

-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음.
-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적 물품이 도착하고 난 후 또는 도착 이전에 선적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정밀 검사 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함.
-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하여야 함.

2

수입통관 필요서류

- 수입통관시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령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통관 필수 구비서류>

- ✧ 선하증권 또는 출하통지서
- ✧ 상품에 관한 상업 송장
- ✧ 수입신고서(C1)

-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수 서류외에 다음과 같은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수입통관 기타구비 서류>

-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 Packing List (상업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 C1A Value Declaration Form

- 국제공항은 1998 년 6 월 말 개장된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Senai(Johor Bahru), 동 말레이시아에 Kuching, Kota Kinabalu 등이 있음.
- **Kuching** 공항은 동 말레이시아의 Sarawak 주에 위치해 있으며 Kuala Lumpur를 출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수도권의 新공항인 KLIA 가 기존 수방 공항을 대체, **모든 항공 운행은 신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수방공항은 일부 특수 노선 공항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되고 있음.
- 연 이용객 수가 2,500 만 명에 육박하여 10 억 달러를 들여 제 2 청사도 완공하였음. KLIA근처에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LCCT)도 건설되었음.
- 말레이시아에는 **총 11 개의 주요 Container Port** 가 있으며 그 중 4 개 Port 는 말레이반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음.



- Bulk 화물의 경우 상기 11 개 Port 외에 Terengganu 에 Kemaman Port 가 있어 Liquid Bulk 화물은 경우 Kemaman Port 이용율도 상당함.
-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Port Kelang 항은 제 1 항구로 콰라룸푸르로부터 약 1 시간 30 분 거리 에 위치 해 있으며 North Port 와 West Port 로 구성되어 있음.
- KELANG 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46%를 차지하 며 1999 년 10 월부터 오픈한 조호주의 Tanjung Pelepas 가 2 대 항구로 전체 물동량의 37%를 점유하 고 있음.